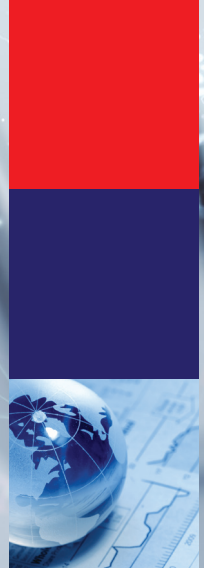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22-29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권현호  
이주형  
김민정  
곽동철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권현호 · 이주형 · 김민정 · 곽동철

연구보고서 22-29

##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인 쇄 2023년 5월 22일  
발 행 2023년 5월 26일  
발행인 김흥중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861-8 94320  
978-89-322-1072-8(세트)



### 1장 서론

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세기 말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지역무역협정(RTA), 소수의 국가들에 의한 규제 블록화 현상 등으로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WTO는 무역관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다루는 통상 규범을 준비할 때 과거 미해결 쟁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전통적 쟁점을 비롯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컴퓨터설비(서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의 상황과 통상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WTO 규범을 새롭게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이해하고, 통상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의 기본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제시한다.

## **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2장에서 다루고자 한 핵심 주제는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형식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구조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지금까지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자 논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이나 구조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보다 현실적인 표준모델 형성의 과정에서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나 현재 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양자 및 지역협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의 규율 방법으로는 다시 FTA/RTA의 일부로서 부속되는 방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과 같이 FTA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통상협정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의미와 특징, 협정 자체의 규범적 성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통상법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델규범을 설정하는 데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다루었다. 우선 미국과 EU가 추진한 디지털통

상협정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을 논의하는 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EU 모두 FTA, EPA 등 전통적인 지역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두거나 서비스투자 장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둘째, 무역협정에서 발전하고 디지털통상 규범에 특화된 협정 형식으로 최근 체결되는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안을 다루고 실제적·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협정에는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최신화하는 형식과 기존 협정과는 독립된 형식이 있다. 셋째, 통상규범을 직접 포함하지 않지만 무역·투자 관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제도가 들어간 협정이 있다. 기본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 미국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경우 제반의 통상 문제를 다루고 운영 방식이 신축적이다. 그리고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양한 국가들에 무역투자 환경의 기본을 조성하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유사한 협력 협정으로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협정을 참고할 수 있는데, EU식 모델은 인도-태평양협력 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전략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양자적 디지털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EU는 전략적 대화 회의를 추진하거나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개선하고 기술 협력, 규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양자적 틀에서 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 외에, 미국은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통상규범의 개선 및 최신화를 추진하거나 동맹국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CPTPP이고, 후자의 예는 IPEF이다. 또한 디지털경제 관련 독립협정인 DEPA도 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WTO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보완과 강화된 규범과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2장에서는 다자무역 체제와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WTO 복수국간 협정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 형식의 대표적 예로 과거 GATT 체제에서 비관세조치를 규율하던 규약(code), WTO 정부조달협정, WTO 발효 후 협상되어 채택된 정보기술협정이나 무역원활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WTO 관행상 총의(consensus)에 의한 다자협정 채택이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복수국간 협정 형식의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은 크게 FTA에 포함된 조항이나 장 형식, FTA의 장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 형식, 연계된 무역 협정이 없는 독립협정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은 FTA 등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식이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및 최신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FTA 전자상거래 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FTA에 부속된 협정 형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독립협정 형식으로는 DEPA를 들 수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통상 규범을 채택할 때 기존 통상규범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다. FTA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부 정보가 제외되고 디지털제품에 관한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방송서비스, 정부보조금이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범위 설정 방식은 디지털통상협정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 협정이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채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디지털통상 규범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과 전자적 전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규범이 강화되는 최근 추세 때문이다. 셋째,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을 도입할 때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데이터 규범의 적용 범위나 분야에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주요 '데이터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 국경 간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 분야의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을 고려할 수 있고, 대부분의 협정이 서비스·투자 유보 조치에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인지는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이 참여한 USMCA, USJDTA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데이터규범 적용 측면에서 여타 협정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해야 할 셋째와 넷째 사항은 형식이 FTA에 포함된 규범이든 부속된 협정이든 독립협정이든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디지털통상 규범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디지털통상 규범이 FTA 내 전자상거래 장의 형식으로 논의되던 과거 협상에서는 대체로 관세, 무역원활화,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되었던 반면, 데이터 자유 이전에 관한 규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



다. 그러므로 FTA에 포함되는 형식에서는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제도적 설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은 FTA에 부속된 형식이나 단독 협정 형식 모두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 **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3장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디지털통상협정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적 측면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즉 협정 조문의 구성과 대상 규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 자유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상규범 체결에서 대상에 대한 자유화의 정도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3장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 이를 자유화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통상 분야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양자 및 지역 차원의 디지털통상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의 결과물이 내포하는 의미와 한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로 3장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선정하고 동 협정들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대거 추가된 CPTPP

이전에 체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고, CPTPP 이후의 디지털통상협정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완전한 독자적 형태의 협정으로는 DEPA, USJDTA 및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중 DEPA, USJDTA를 선정하였고, 기존 FTA를 개정한 개정의정서 형태의 협정에서는 KSDPA,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및 싱가포르-영국 디지털경제협정 중 KSDPA를 선정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도한 CPTPP 및 USMCA, EU가 포함된 EUKTCA 및 EJEP, 중국이 포함된 RCEP을 추가해 총 8개 협정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이후에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8개 분석대상 협정의 조항들을 공통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에 나타난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동협상용 통합문서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조항 중 중요도가 높은 조항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분석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하여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와 관련

해서는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와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DEPA상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첫째,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 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둘째,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셋째, 디지털 포용 조항이다. 또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에는 다른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제권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서문 등에 언급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므로 이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조항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어느 정도 조항들이 통일되고 있다. 다만 ‘전자지급 서비스’ 조항의 경우 KSDPA에서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상 필수서비스 및 기반시설 접근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차별금지 조항까지도 추가하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선진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CPTPP 이전부터 포함되어 온 규정으로 개도국부터 디지털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이 규정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EUKTC A 및 DEPA는 온라인소비자보호 법령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는 등 향후에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역시 총 8개 협정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기본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호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과 같이 그 구조는 비교적 통일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위치’,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조항들은 분석대상 협정별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RCEP은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소스코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U 역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의 경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만 포함하는지, 최혜국대우까지 포함하는지, 디지털제품을 복수로 규정하는지 등 협정별로 미묘하게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은 필요성의 판단 주체, 분쟁해결절차 유무 등 조문의 차이로 인해 실제 운영상 다양한 격차와 문제점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동 규정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규정 역시 분석대상 협정별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정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적 전송의 상호주체에 대해 차이가 있고, 무관세의 대상이 ‘디지털제품’, ‘전자적 전송’,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관세’ 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까지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관세만 명기하는 협정도 있다.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까지도 규정하는 협정이 있고 침묵하는 협정도 있다는 점들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DEPA 이후로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디지털 포용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대부분 도입 자체에 의의를 두고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쟁 관련 협력 조항이다. 인공지능(AI)에 관한 조항 역시 AI 기술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함을 언급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틀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 디지털 포용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 및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경제적 하위집단의 접근성 향상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협력 또는 정보 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4장은 앞서 검토한 형식적 결과와 내용적 결과를 기초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유지

해야 할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특징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고려할 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을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개방형 복수공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형식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식적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과, 소위 ‘신(新)기준’에 따른 모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우선 전통적 기준에 의한 모델을 CPTPP 수준의 모델, CPTPP와 한-싱 DPA 사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델, 한-싱 DPA 플러스 수준의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경우 CPTPP가 가져온 변화가 극명하고, CPTPP로 성취된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CPTPP 이후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기준에서 CPTPP 수준의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표준 모델의 수준으로 정한 뒤, CPTPP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 그리고 한-싱 DPA 플러스 수준으로 무역자유화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기본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신기준’에 따른 모델은 전통적인 기준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한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국형 표준 디지털통상협정

모델의 수립 기준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모델 설정의 '신기준'으로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식적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모델에 대한 구분을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단계 형식모델은 정치적이거나 도의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특정한 형식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이나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이 있다. 그리고 2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으로 구분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1단계 모델과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좀 더 조약의 모습을 띠는 점에서 1단계와 차별화된다. 한편 3단계 형식모델부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의미하는 조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조약 중에서도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조약을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하고자 한다.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다. 4단계 형식모델 역시 3단계 형식모델과 마찬가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3단계 형식모델 및 5단계 형식모델과 달리 4단계 형식모델은 조약의 규정들을 모듈별로 구조화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직접 모듈별로 선택하여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해 모듈의 구속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재량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 DEPA는 모듈 접근법(modular approach)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형식모델은 완전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 개념의 조

약 형식으로,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식 절차를 내포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5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정식 조약이므로 체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즉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을 조약이 따라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디지털기술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개도국은 가입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선진국 간에만 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디지털통상 규범 저변 확대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셋째, 현재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상 분쟁해결 조항은 과거 WTO 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상 분쟁해결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분쟁해결체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 따른 모델은 1단계 협력사항이 중심이 되는 모델에서부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가치’ 규범이 적극 수용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합의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우선 1단계 내용모델의 특징은 ‘디지털 신원’, ‘AI’, ‘핀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와 같은 핵심 조항의 삽입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



계 내용모델은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2단계 내용모델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소위 핵심 조항들을 구체화한다. 구체화하는 방법에는 조항 자체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당해 조항에 대한 이행위원회의 공동해석을 통해 이행의 편의를 돕는 것 등이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싱 DPA 중 핵심 조항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마지막 3단계 내용모델은 ‘디지털 포용’과 같이 ‘가치’ 기반의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기반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추가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은 우리나라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업과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동 규정은 국내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5장에서는 디지털무역과 산업에 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전체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안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법체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 국내법제도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한다. 먼저 현재까지 혹은 문제가 되는 국내법령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디지털무역의 정의

또는 범위와 연결하여 디지털무역협정이 디지털동반자협정으로, 나아가서 디지털경제협정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으로 이미 디지털화된 산업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 위주로 다루며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장부터 최근에 발효된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통상협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된 전례는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추세에 맞춰 끊임없이 국내법령을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될 수 있는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법률의 제·개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을 신청한 DEPA는 광범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다루고 있어 사전에 국내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요구와 이에 대한 반영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거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디지털제품의 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규모 차이가 큰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디지털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통상협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셋째, 과거 통상협정이 상품 간 교역을 다루다 서비스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다시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듯이, 디지털통상협정이 다루게 될 영역도 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국내 관할권의 집행이 주었던 조세, 표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 협력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위한 일정 수준의 의무를 담은 규정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는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디지털통상협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디지털산업과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이 모색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진 디지털공업국 중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부 국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통상정책과 협상 추진 과정에서 경제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통상환경에서의 복잡다단한 변수를 고려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약어표

[주요 약어]	[영어 표기]	[한글 표기]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SDEA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TA	Comprehensive Economic Trade Agreement	포괄적경제무역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DDE	Dialogue on Digital Economy	디지털경제에 관한 대화회의
DEPA	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디지털동반자협정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EJEPA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EUKTCA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EU-영국 무역협력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일반데이터보호규칙
GIA	Geographical Indication Agreement	지리적표시협정
IPEF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정보기술장비
KSDPA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주요 약어]	[영어 표기]	[한글 표기]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전략적경제협력협정
SPA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전략적동반자협정
STEP	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지속가능무역 및 경제동반자협정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무역원활화협정
TIDCA	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ve Agreement	무역투자개발협정
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무역투자기본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무역기술이사회
UKSDEA	UK-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UNCUECI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Contracts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
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JDTA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 · 멕시코 · 캐나다 무역협정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일러두기

1.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각종 협정이나 국제기구, 정부기관 등의 명칭은 본문에서 처음 나올 때는 한글(영어 명칭: 약어)의 형태로 작성하였으며, 이후에는 통상적 명칭과 약어를 병용하였습니다. [예: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 이후 ‘한-싱 DPA’, ‘KSDPA’ 병용]
3. 비록 엄격한 의미에서 각 용어가 갖는 범주체와 범위 차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무역’과 ‘디지털통상’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4. 본 연구에서 각주는 가독성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장마다 1)로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 차례

국문요약 .....	3
약어표 .....	19
일러두기 .....	21
<b>제1장 서론 .....</b>	<b>27</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	31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	34
가. 연구내용 .....	34
나. 연구방법 및 한계 .....	36
<b>제2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b>	<b>39</b>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	40
가. 미국이 체결한 협정 현황과 논의 형식 .....	40
나. EU가 체결한 협정 현황과 논의 형식 .....	48
다.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특징과 예시 .....	60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	63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	64
가.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 구분 .....	64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 .....	67
다.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규범의 설정 .....	73
라. 데이터 규범에 대한 제한 .....	74

**제3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 77**

- 1. 개관 ..... 78
  - 가. 디지털통상 규범의 탄생 ..... 78
  -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 79
-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 83
  - 가. 분석대상 협정 ..... 83
  - 나. 분석대상 조항 ..... 85
-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 88
  - 가. 전자상거래 원활화 ..... 88
  - 나. 개방과 전자상거래 ..... 95
  - 다. 신뢰와 전자상거래 ..... 116
  - 라. 공통이슈 ..... 125
  - 마. 기타 규정 ..... 127
  - 바. 기타 ..... 130
- 4. 결론 ..... 133

**제4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 137**

-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 138
-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 143
  - 가.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 143
  - 나.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 145
  - 다.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 형식 ..... 148
-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 150
  - 가. 전통적 기준과 모델 구분 ..... 150
  - 나. '신(新)기준'과 모델 구분 ..... 157



<b>제5장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b> .....	<b>177</b>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	178
가. 디지털통상 규범과 국내법의 연결 .....	178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과 국내법의 대응 .....	180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	182
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	182
나.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	186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	189
가. 디지털세 .....	190
나. 디지털 표준 .....	191
다. 망중립성 .....	193
라. 디지털 가치동맹화 .....	194
 <b>참고문헌</b> .....	 <b>197</b>
 <b>Executive Summary</b> .....	 <b>205</b>



## 표 차례

표 2-1.	미국의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 현황	41
표 2-2.	EU의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 현황	49
표 2-3.	EU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추진된 디지털파트너십 현황	56
표 2-4.	EU-일본 전략적동반자협정(SPA)하의 논의 추진 예시	58
표 2-5.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특징과 예시	62
표 2-6.	형식적 측면에서의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 구분	66
표 2-7.	디지털통상 규범 대상에서의 제외 사항	69
표 2-8.	디지털통상협정의 디지털제품과 전자적 전송 관련 조항	71
표 2-9.	디지털통상협정의 정의 조항	72
표 2-10.	디지털통상협정의 디지털서비스 조치에 관한 조항의 유형	74
표 2-11.	데이터 규범에 대한 제한 조항의 유형	75
표 3-1.	분석대상 협정 구분	85
표 3-2.	WTO 전자상거래협정 협상을 위한 통합문서의 구조	86
표 3-3.	EJEPa 및 EUKTCa 조항 비교	87
표 4-1.	한국이 체결한 FTA와 디지털무역협정 현황(2022년 12월)	138
표 4-2.	한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통상 규범 현황	142
표 4-3.	CPTPP 이후 KSDPA까지의 주요 조항 비교	155
표 4-4.	목적의 변화 추이	158
표 4-5.	호주-싱가포르 간 협력 관련 구조도	171
표 4-6.	호주-싱가포르 간 표준 협력 우선순위 분야	172
표 5-1.	디지털통상 주요 이슈와 규정 및 관련 국내법령	181
표 5-2.	디지털 전환의 진화 단계	183
표 5-3.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사례	184
표 5-4.	서비스 분야별 디지털무역 가능성 및 사례	188
표 5-5.	호주-싱가포르 디지털무역 확대를 위한 표준협력 분야 권고안	192



## 그림 차례

그림 1-1. 디지털무역의 영역 .....	33
그림 1-2. 연구방법론 .....	37
그림 5-1. 디지털커머스 이용 기업의 분야별 비율(2021년) .....	185
그림 5-2. 빅데이터/비즈니스 분석 매출 비율(2018년) .....	185

# 제1장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의 생활에서 이젠 너무나 익숙해진 디지털(digital)은 일련의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기술적인 개념이다. 원래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했던 소리, 문서, 영상 등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이를 통한 정보의 전달과 처리, 활용 등이 용이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를 구현하는 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다. 이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과 같은 학자들은 이미 제3차 산업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를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sup> 한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이러한 비즈니스의 영역이 단일 국가나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거대시장(Super Markets)’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거대시장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연결성의 확보가 글로벌화의 관건이라고 지적하였다.<sup>2)</sup> 즉 지난 20세기 말에 급격히 발전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터넷 네트워크를 매개로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을 넘어, 국가와 국가 그리고 산업과 산업의 연결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성(connectivity)은 국제통상 관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끌어내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 출범하여 다자무역 체제를 주도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역시 20세기 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규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으로 규범 제정뿐만 아니라 실제 거대한 디지털경제를 이루어 냈다.<sup>3)</sup> 또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보호무역 및 지역

---

1)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2012. 4.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 4).

2)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한영(2007), pp. 73~77; Friedman(1999), p. 388, pp. 109-110, p. 199 참고.

3) 2022년 5월 현재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이전 페이스북) 등이 있다. 이는 2008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단 2개 기업이 목록에 올라온 것에 비하면 이미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Statista, “The 100 Largest Companies in the World by Market Capitalization in 2022,”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3. 1. 4) 참고.

주의의 심화 등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sup>4)</sup> 특히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단순한 통상 분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기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sup>5)</sup> 이러한 움직임으로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통해 이루어지는 블록화 현상과 함께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호무역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무역 관계에서 디지털 분야를 다루는 통상규범을 준비하는 작업에 과거 미해결 쟁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 무역의 자유화를 이끌던 WTO에서는 무역자유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어떻게든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성과,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무역의 시스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국가들의 요구가 충돌하고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무역의 확대는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기회와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우선 디지털무역의 확대로 인프라 및 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화는 그 자체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sup>6)</sup> 한편 디지털무역의 플랫폼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나 온라인소비자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관련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쟁점들을 규율

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20), pp. 18~63 참고.

5) 특히 미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글로벌 가치사슬 및 디지털규범에 있어 소위 '민주주의 가치 동맹국'과 함께 규범의 제도화를 통해 새로운 판을 구상하고 있다. 미-중 분쟁의 통상관계 측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신원규(2021), pp. 59~60 참고.

6) 예를 들어 교육·회계·원격진료 등 기존에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국경 간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무역을 통한 미래 먹거리의 다양화가 가능해지고, 또한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조성하여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박영훈(2000), p. 6 참고.

하는 규범이 제한적이고 미완성이라는 점은 새로운 도전과제이다.<sup>7)</sup>

결국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변화는 ‘무역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교역 대상의 디지털화에 따른 실제 변화, 즉 상품과 서비스라는 전통적 교역의 대상이 ‘데이터’로 전환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sup>8)</sup>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통상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이미 다루고 있었던 전통적 쟁점들에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컴퓨터설비의 국내유지 요구 금지’ 등 새로운 도전에 응답하는 국가들의 협상과 그 결과가 더해져 정해진다. 다만 현재의 상황과 통상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적용되는 WTO 규범을 새롭게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sup>9)</sup>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이해하고, 통상규범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게 될 디지털통상협정의 기본 모델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하게 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범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제시한다.

---

7) 박영훈(2000), p. 6.

8) 위의 자료, p. 7 참고.

9) 예를 들어,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의 분류(classification) 문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moratorium),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회원국의 양허 여부 등 기존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제기된 오래된 논쟁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나 데이터 저장시설(서버) 국내유지 요구 금지 문제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에서는 이를 규제할 WTO 규정을 찾기 어렵고 이에 대한 협상도 미진한 상황이다.

## 2. 연구의 전제: 개념과 범위

국제사회는 ‘디지털통상’ 또는 ‘디지털무역’의 개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나 범위를 아직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5월에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채택한 ‘세계전자상거래선언’<sup>10)</sup>과 같은 해 9월에 이어진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은 전자상거래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전달”이라고 표현하여,<sup>11)</sup> 디지털통상 또는 디지털무역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동 작업프로그램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매개체로서의 성격에 집중하여, 오프라인에서 교역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거나 이와 동종인 어떤 대상이 전자적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디지털무역’ 또는 ‘디지털통상’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개념이나 범위 역시 바뀌고 있다.<sup>12)</sup> 예를 들어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디지털무역을 “인터넷, 즉 고정된 유선 네트워크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정의한다.<sup>13)</sup> 다만 USITC는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등 CD나 DVD에 담겨 판매되는 물리적 상품들과,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였지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들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디지털 무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sup>14)</sup> 앞서 WTO에서 제시하였던 전자상거래의 범위와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USITC는 디지털무역

---

10) WTO(1998a).

11) WTO(1998b), para. 1.3.

12) 이러한 변화는 WTO에서 전자상거래 논의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이 전자상거래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통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박영훈(2000), p. 3.

13) USITC(2013), p. xii, pp. 1-2.

14) USITC(2013). 다만 이러한 USITC의 디지털무역에 대한 개념 정의는 동 보고서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의 개념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전송, 그리고 스마트폰 등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기와 관련된 상품의 전송”이라고 명시하여 디지털무역의 개념과 범위에서 앞서 2013년에 제출된 보고서와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sup>15)</sup> 한편 미국이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해 2018년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디지털무역을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의 모든 무역 관련 측면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16)</sup>

결국 현재까지 디지털무역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다. 이는 디지털무역을 실현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교역의 양태나 행위주체들의 범위가 다양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 속에서도 디지털무역의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디지털무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교역 또는 데이터 자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디지털무역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교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무역 또는 디지털통상은 결국 전통적으로는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나타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으로 파악되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 확대하여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의 교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개념은 [그림 1-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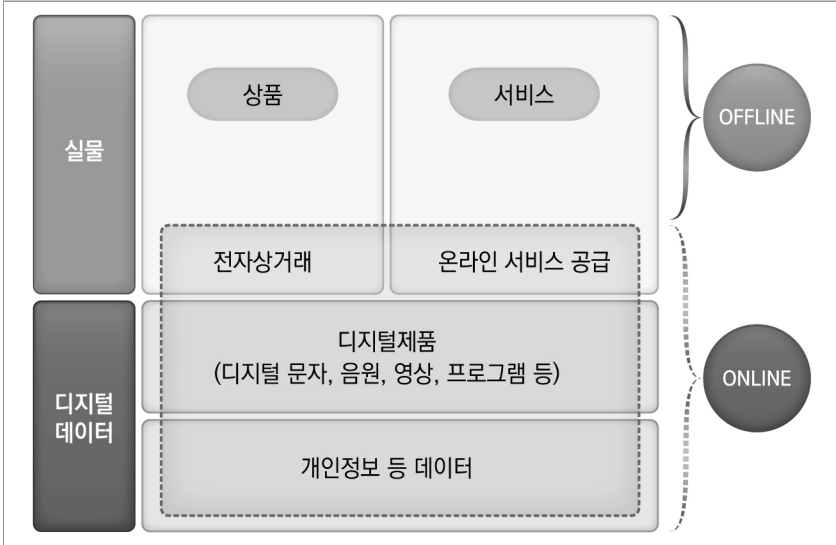
---

15) USITC(2017), p. 33. 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은 디지털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2013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과 CD나 DVD에 제화될 수 있는 디지털제품은 디지털무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6) WTO(2018), footnote 1.

17) 박영훈(2000), p. 4.

그림 1-1. 디지털무역의 영역



자료: 한국국제경제법학회(2022), p. 543.

마지막으로 디지털무역과 디지털통상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trade’라는 용어의 번역 문제에서 비롯된다. 비록 엄격한 의미에서 해당 용어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면 법의 주체 또는 교역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디지털무역 또는 디지털통상은 범위에서 양자의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통상’ 또는 ‘디지털무역’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디지털통상’이라는 표현은 전자상거래, 디지털무역, 디지털경제, 디지털 이슈 등 모든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통상을 넘어서 관련 쟁점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디지털통상 규범은 하나의 협정, 협정의 장내지 협정의 조항으로 채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통상을 다루는 협정, 장을 포함한 협정, 조항을 포함한 협정을 모두 편의상 ‘디지털통상 협정’으로 지칭한다.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

####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 중 본문에 해당하는 2~4장은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검토하고 제시한다.

본 연구의 첫째 검토 주제는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형식적 또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모델 설정을 위해 형식적·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우선 지금까지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자 논의 자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 또는 구조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더 현실적인 표준모델 형성의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는 양자 및 지역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나 현재 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가 대부분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양자 및 지역 협정을 통한 디지털통상의 규율방법에는 다시 FTA나 RTA의 일부로서 부속되는 방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DEPA)이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USJDTA)과 같이 FTA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통상협정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렇게 서로 다른 형식으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의미와 특징, 협정 자체에 있는 규범적 성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통상법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델규범 설정에 지침을 마

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둘째 연구주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내용적 측면이라고 함은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 즉 협정 조문의 구성과 대상 규범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자유화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통상규범 체결에서 대상에 대한 자유화의 정도 문제와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내용적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이고 수용가능한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며, 이를 자유화의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둘째 연구주제를 통해 기본적으로 디지털통상 분야의 현 상황과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한 결과와 한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체결된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디지털통상협정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의 결과물이 내포하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셋째 연구주제는 앞서 두 가지 큰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을 마련할 때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형식적 및 내용적 사안들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을 평가하고, 우리나라가 유지해야 할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을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에서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특징을 마찬가지로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디지털무역협정의 이행과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전체 보고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에 따른 국내법제도 정비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한다. 또한 디지털무역의 정의 또는 범위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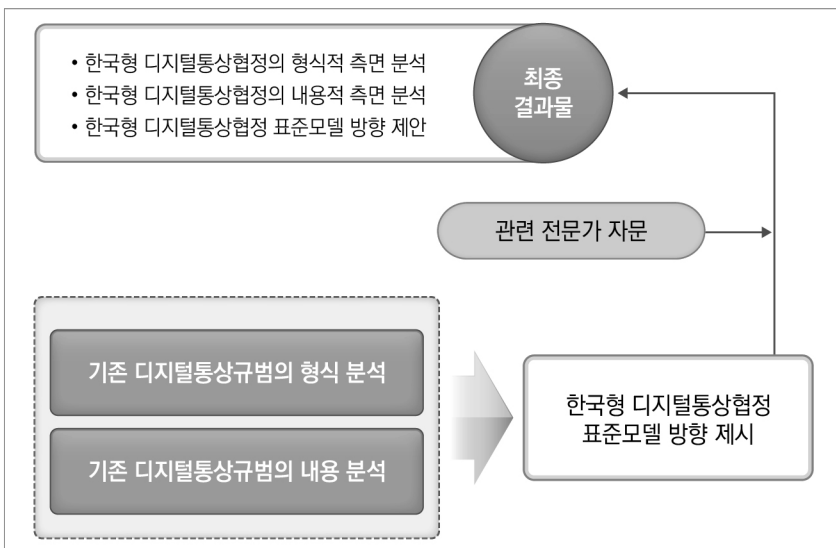
결하여 디지털무역협정이 디지털동반자협정, 나아가서 디지털경제협정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특징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제기될 수 있는 디지털경제의 확대 문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이 주로 이미 디지털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산업적 접근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동시에 비록 현재는 일반적인 제조업에 속하지만 향후 디지털화가 가능한 산업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즉 디지털 전환의 문제 역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비록 본 연구의 범위가 디지털통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디지털통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디지털경제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 나.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디지털통상 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정, 양자 및 지역 협정 또는 복수 국가 협정의 1차 분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DEPA 등과 같이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양자 및 지역 협정을 직접 검토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현존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이 이른바 미국을 중심으로 입장을 같이하는 일부 국가들에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이러한 디지털통상협정이 보편성과 일반성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디지털통상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은 유용한 검토대상이자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다자간 디지털무역협정에 적용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협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자간 디지털무역협정에 적용가능한 형식과 내용을 추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방법이다.

한편 본 연구는 1차 자료에 의한 직접 분석 이외에 관련 쟁점들에 대한 국내외 논문이나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자료 등을 토대로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단일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자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점이다. 즉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 관계에서 국제규범의 제정과 관련하여 능동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법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서 실제 모델법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2. 연구방법론



자료: 저자 작성.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현실과 향후 미래의 대응요소를 반영하려면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자유화 요소의 정도와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기간 등의 제한으로 사전적인 의견청취는 생략하고 이론적 분석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새로운 표준모델규범을 연구하는 데 구체적인 협정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모델 설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시나리오 작업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규범 및 정책에 바탕을 두고 분석을 하였고, 한국형 디지털 통상협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 제2장



#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형식적 측면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 1.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과 논의 형식

이 장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의 글로벌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식 협정과 EU식 협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식 협정 유형은 참여국 규모에 따라 양자협정과 복수국간 협정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협정은 무역개방과 시장접근을 다루는 FTA 형식과 무역과 투자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 형식으로 세분된다. 미국 복수국간 협정은 CPTPP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가 대표적이고, 다자무역 체제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제무역 제도를 계속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규범을 도입하는 데 역할을 한 협정으로 주목된다. 최근 디지털통상 의제만을 다루는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단독협정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협정 형식을 보여준다.

한편 EU식 협정은 정치적 연대 강화, 무역투자 관계 강화, 투자,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등 경제 관계나 무역, 투자 관련 다양한 특정 이슈에 특화된 협정이 많고, 주로 EU와 당사국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현안에 맞춰 의제를 정하고 규범 수준을 채택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디지털통상협정 관련 EU식 무역협정은 보통 서비스무역과 전자상거래를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최근 EU의 디지털통상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국가 파트너십하에서 디지털통상 전략을 추진하는 체계로 이뤄진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국식, 그리고 EU식 협정의 유형별 특징과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형식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 가. 미국이 체결한 협정 현황과 논의 형식

미국이 체결한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은 전통적인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여러 FTA 외에도, 다수 국가들과 체결한 TIFA,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USJDTA), IPEF 등 여러 형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유형을 참여국가 수에 따라 양자협정과 복수국간 협정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협정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무역개방과 시장접근을 다루는 전통적인 무역협정 형식과 무역과 투자 확대 방향과 협력을 모색하는 기본협정 형식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대표 협정과 디지털통상 규범과의 관련성을 [표 2-1]에 정리하였다.

표 2-1. 미국의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 현황

형식적 유형	협정의 예	당사국	디지털통상 관련성	비고(연관 협정)
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양자	전자상거래 장	20개 협정(USMCA 포함)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북미 3국	제19장 디지털무역	NAFTA 최신화 협상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복수국 (12개국)	제14장 전자상거래	미국 탈퇴 후 11개국이 CPTPP 발효
무역투자 기본협정	Trade &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	양자	전자상거래, 과학기술, ICT 협력	TIFA 이사회 운영, 무역원활화, 투명성 관련 후속 협정
디지털 무역협정	미-일 Digital Trade Agreement (USJDTA)	미국, 일본	디지털무역에 관한 단독 협정	미-일 FTA와 같이 체결됨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복수국 (14개국)	필러 1 무역: 디지털무역	필러 1 무역 협상에는 인도가 참여하지 않고 13개국 참여

자료: 저자 작성.

### 1) 미국 무역협정의 주요 유형

형식적인 측면에서 미국 무역협정은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무역과 투자 관련 기본협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무역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전형적이고 미국은 최근까지 20개국과 다수의 양자 FTA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과의 FTA를 제외한 모든 FTA가 전자상거래 장을 포함한다.

미국식 FTA의 전자상거래 장은 모두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비차별대우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 FTA 내 다른 해당 장, 즉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장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다. 이처럼 미국은 디지털제품 규범을 디지털통상 기본 규범으로 채택하고 FTA를 통해 미국 디지털통상 정책의 기본 입장을 확산시키면서 개방적인 디지털무역 환경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체결한 일부 FTA는 온라인소비자 보호,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투명성, 협력에 관한 조항도 포함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한-미 FTA의 국경 간 정보 흐름에 관한 조항은 데이터보호를 언급하는데, 이는 비교적 초기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디지털통상 규범이어서 주지할 만하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무역협정 형식과 다른 TIFA 형식이 있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TIFA는 무역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무역·투자 관계의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협정이다. 주로 실체적인 무역 규범을 포함하기보다는 양국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한 절차적 요건을 내용으로 한다. 명칭은 다르지만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는 TIFA 형식의 무역협정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협정들이 있다. 가령, 미국은 남아프리카 관세영역과 ‘무역투자개발협정(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ve Agreement: TIDCA)’을, 브라질과 ‘무역경제협력협정(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TEC)’을, 그리고 스위스, 아이슬란드와 각각 무역투자협력포럼(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Forum: TICF)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12개국, 미주 6개국, 유럽 및 중동 19개, 중앙 및 서남아시아 8개국, 동남아 12개국과 TIFA를 체결해 총 57개의 TIFA를 두고 있다. TIFA 대상이 국가이거나 여러 국가를 포괄하는 지역, 또는 관세영역이고,

주로 개도국에 해당한다. ASEAN의 경우 미국-ASEAN TIFA가 있으면서 동시에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TIFA가 있다. 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 TIFA 대상이지만, 바레인과 오만과는 FTA와 TIFA를 모두 체결했다. 미국과 양자 무역, 투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국가들과 이러한 기본협정 형식을 추진하고 양자적 통상 문제에 대응하는 채널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TIFA가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동 협정 체결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역 개방과 시장접근을 다루는 양허나 통상규범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TIFA 형식의 주요 목적과 내용은 포괄적인 무역과 투자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이사회(Council) 절차를 두고 당사국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당면 과제를 시의적절하게 협의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FTA 형식하에서도 공동위원회나 협정상 설립된 이행위원회 절차를 바탕으로 무역규범 이행을 강화하고 당사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는 TIFA 절차를 바탕으로 통상대응에 필요한 논의와 협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IFA 의제 선정과 논의 및 협의 방식은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이익에 맞춰 해당 시기와 의제를 정하고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미국이 TIFA 이사회에서 논의한 의제들을 보면 개도국의 무역구제 관행, 비관세장벽, 무역원활화, 투자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 무역규범 이행과 시장접근 관련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뤘고,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논의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WTO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추진되던 당시에는 TIFA 이사회에서 DDA 의제를 다뤘고 동남아 국가들과는 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도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보호, 금융서비스 개방 문제를 중점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

1) 신원규 외(2018), pp. 68~77.

TIFA에서 논의된 다양한 협력 의제 중에서 디지털통상과 관련 있는 분야로 과학기술,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된다. 가령 미국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우루과이와 체결한 TIFA에 이러한 협력 의제가 포함되고, 무역과 투자 확대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특정 이슈가 TIFA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부속 의정서(protocol)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례로 미국과 우루과이의 '무역과 환경 TIFA 의정서'와 '무역원활화 TIFA 의정서'가 있고 미국과 브라질의 '무역규범과 투명성 의정서'가 있다.

요컨대 민감하고 복잡한 무역개방 협상을 중심에 놓는 FTA와는 달리, TIFA 형식은 실제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열어 두는 제도가 핵심이고 상황에 따라 '의정서'를 채택해서 양자적 기본 규범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통상의 구체적 사안에 맞춰 회합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제도로써 TIFA 형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특정 디지털통상 문제를 다루는 기본 규범을 양자 의정서 형식으로 채택하고 이를 점차 강화하는 응용된 형식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추진한 복수국간 협정: CPTPP

다음으로, 미국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한 복수국간 협정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협정'이 있다. 한편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IPEF 협정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복수국간 협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역개방과 시장접근을 추구하는 전통적 의미의 무역협정이 아니고, 미국이 관심있는 무역의 제를 다루는 동시에 공급망,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반부패 문제와 같이 기존 통

상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신통상 의제를 다룬다는 점이 형식면에서 새롭다. TPP와 IPEF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가 상당히 겹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두 협정의 의제 또한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둘을 다르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궁극적으로 미국과 아시아 지역 동맹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교류를 활성화 할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목표도 암묵적으로 포함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두 협정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각 협상에 중국과 대만이 참여하지 않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을 채택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국가들 즉,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TPP는 태평양 4개국(Pacific-4, 즉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로 구성)이 주도하던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미국이 지지할 뿐 아니라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추진되었다. TPP 협상은 12개국 사이에서 시작되었으나 2017년 1월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TPP 탈퇴를 결정하자 나머지 11개국이 CPTPP를 발효하였다. 동 협정은 FTA 형식의 무역협정이고 거의 모든 이슈에서 기존 통상규범을 확대,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노동, 환경, 국영기업, 투명성과 반부패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며 새로운 통상제도 모델을 제시하는 협정이다.

CPTPP ‘전자상거래 장’ 역시 기존 FTA 조항과 비교할 때 제도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CPTPP 전자상거래 장은 그동안 양자 FTA 규범상 다루던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와 비차별대우 의무, 전자인증과 서명, 온라인 소비자보호, 서류 없는 무역 조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존 통상규범이 다루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스팸메시지, 소스코드, 사이버보안 협력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CPTPP 규범은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디지털통상협정의 새로운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CPTPP 협정 구조를 보면, FTA 전자상거래 장에 디지털통상 규범을 두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CPTPP 전자상거래 장에 디지털통상 규범을 두는 구조고, 이 장과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즉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장’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는데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 문제를 서비스무역 규범이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디지털제품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sup>

또한 CPTPP는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해당한다. CPTPP 가입 절차를 통해 원칙적으로 동 협정 참여국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대만이 동 협정 가입 의사를 발표했고 영국의 가입협상은 2023년 2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CPTPP 참여국 확대는 곧 CPTPP 통상규범이 확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디지털통상의 새로운 기본 질서가 공고해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TPP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개정 협상을 추진했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포함한 USMCA가 발효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USMCA도 전통적인 무역협정이고 FTA 내에 디지털통상 규범이 ‘장’에 포함되는 유형에 속한다. USMCA에는 ‘전자상거래 장’이 아닌 ‘디지털 무역 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디지털무역’이 표제에 사용된 것은 최초이다. 이 장은 기본적으로 CPTPP ‘전자상거래 장’과 매우 유사하고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가 거의 같다. 그러나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강화되었고 양방향컴퓨터서비스, 개방형 정부 데이터 조항이 추가되었다. 한편 CPTPP TBT 분야별 부속에 포함된 암호화기술을 사용한 ICT 제품 조항과 유사한 규범이 USMCA TBT 분야별 부속 조항에 포함된다.

---

2) 다음 절에서 FTA 장으로 규정되는 형식과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조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 3)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다른 주요 디지털통상협정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USJDTA)이다. USJDTA는 디지털통상에 관한 최초의 단독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형식적인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통상 규범이 FTA 내에 '장'으로 포함되거나 FTA의 부속서 형식으로 포함되지 않고 FTA와는 별개의 독립된 디지털통상협정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USJDTA에 포함된 주요 조항은 디지털제품 관련 무관세와 비차별 의무,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 보장, 데이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및 강제 이전 금지 등을 규율하는 조항이고, 이 조항은 내용적으로 CPTPP 규범과 유사하다. USJDTA에 포함된 알고리즘, 금융데이터, 조세, 암호화기술, 온라인 플랫폼, 공공데이터에 관한 규범은 CPTPP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에 해당한다.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방향 측면에서 볼 때, 이 협정은 독립협정 형식이라는 점 외에도 새로운 이슈를 포괄하고 기본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협정이다.

### 4)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끝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PEF는 기본적으로 무역 의제, 공급망, 청정경제 및 에너지, 반부패에 관한 4개의 필러 협상으로 구성되고, 무역의제 협상에서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통상 이슈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형식에는 기본적으로 무역개방과 시장접근 협상이 포함되지 않는다.<sup>3)</sup> IPEF는 형식적,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 무역협정과 다르고 디지털통상 문제뿐 아니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수의 참여국이 신통상 의제를 논의하고 있고, 복수국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무역체제 모델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

3) White House(2022b), "Statement 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1. 16).



## 나. EU가 체결한 협정 현황과 논의 형식

EU의 대외 경제협정을 형식적 유형별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통적 무역협정인 FTA와 경제동반자협정이 주요 형식이지만 이 외에도 정치협정, 투자협정과 같이 다양한 표제를 사용하고 경제 관계를 강화하거나 특정 문제를 다루는 형식도 있다.

EU의 주요 협정 형식은 전통적인 무역협정이다. EU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과 전통적인 무역협정인 FTA,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또는 이와 유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베트남과는 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고 중국과는 무역협정은 없으나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처럼 상대국 내 EU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투자협정을 둔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

EU의 다른 주요 형식으로 정치협정과 연합협정을 살펴볼 수 있다. EU가 멕시코, MERCOSUR, 칠레와 체결한 연합협정 또는 정치협정은, 상대국을 무역협상 대상국으로 고려하기 전 단계에서 양국의 정치적 연대를 공고하게 하고 경제 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끝으로 EU의 전략적 동반자 추진을 주목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형식은, 무역과 투자 규범을 다루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구분된다. 대표적인 예는 EU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이고, 그 일환으로 2022년에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각각 추진한 디지털동반자(Digital Partnership)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EU의 디지털통상협정 추진 현황과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표 2-2. EU의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 현황

형식적 유형	협정	당사국	디지털통상 관련성	비고(연관 협정)
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FTA)	EU-한국*	제7장 서비스무역, 설립, 전자상거래	-
		EU-싱가포르*	제8장 서비스, 설립, 전자상거래	투자보호협정 (2019년 2월 EU 승인)
		EU-인도 (협상 재개 시)	-	개시(2007년), 중단(2013년) 후 재개 시 투자보호 협정, GI 협정도 추진 중
		EU-뉴질랜드 (체결)	제12장 디지털무역	-
	Comprehensive Economic Trade Agreement (CETA)	EU-캐나다 (잠정 발효)	제16장 전자상거래	Free Trade Agreement (FTA) (2016년)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EPA)	EU-일본*	제8장 서비스, 설립, 전자상거래	Trade Agreement (2017년), GDPR 적정성 결정(2019년 1월 23일)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TCA)	EU-영국	제3부 디지털무역	브렉시트 이후 관계 지속
	Trade Agreement (TA)	EU-베트남	제8장 투자,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
		EU-호주 (협상 개시)	-	-
	정치 및 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AA)	EU-멕시코 (체결)	제16장 디지털무역
Political Agreement (PA)		EU-MERCOSUR (체결)	서비스무역과 설립 장의 6절 전자상거래	-
Advanced Framework Agreement(AFA)		EU-칠레 (체결)	잠정무역협정 제19장 디지털무역	EU-칠레 연합협정(AA)(2003년), 최신화 협상개시(2017년), 정치·협력, 무역·투자 필러로 구성되고 잠정무역협정 적용 중

주: \* 디지털전략동반자협정 추진.  
자료: 저자 작성.

## 1) EU 무역협정의 주요 유형

EU는 다양한 유형의 협정을 체결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또는 FTA이고 EU와 역외 상대국인 우리나라,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가 이 전통적인 형식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무역관계를 설정한 ‘무역과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이 있다.

둘째, EU는 EPA 또는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Trade Agreement: CETA)을 체결했는데, 일본, 캐나다와 각각 이 협정을 두고 있다.

셋째, EU는 앞서 언급한 형식인 ‘투자에대한포괄적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을 중국과 원칙적으로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중국 시장에서 EU 기업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동일한 경쟁 조건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의 국유기업, 보조금의 투명성, 강제적 기술 이전을 방지하는 규범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베트남, 싱가포르와 각각 ‘투자보호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을 체결했고, 인도와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1월에 EU와 앙골라가 ‘지속가능한투자활성화협정(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EU가 체결한 협정 중 최초의 투자활성화 협정에 해당한다. 천연자원과 에너지가 풍부한 앙골라가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다양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의 동 협정을 추진했고, EU는 앙골라 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환경과 노동 보호를 강화하며 기술 지원과 무역정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 협정을 추진했다.

넷째, EU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 ‘지리적 표시협정(Geographical Indication Agreement: GIA)’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중단했던 인도와의 FTA 협상을 최근 재개하는 동시에 투자보호 협상, 지리적 표시 협상도 함께 시작한 것이다. GIA는 지리적 표시라는 특정 사안을 다루는 무역 관련 협정이면서 전통적인 무역협정 또는 투자협정과는 별개의 독립협정이라는 점에서 이 형식적 측면을 참고할 만하다.

다섯째, EU는 기존 협정을 개선·보완해서 새로운 협정으로 최신화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와의 ‘글로벌협정(Global Agreement)’을 개선한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살펴볼 수 있다. 기존 글로벌협정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다양한 협력 사항들, 특히 그중에서도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통신·정보기술 협력,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상호연결과 상호운영성 강화, 규제 협력, 데이터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표준 사용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협력 사항들은 디지털통상과 관련 있는데 양자 협력의 방향을 언급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글로벌 협정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나 전자인증 관련 조항과 같이 전형적인 디지털통상 규범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 발효한 개선 협정은 제16장 디지털무역 조항을 두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EU와 칠레는 2003년에 발효한 연합협정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2022년 12월에 ‘선진기본협정(Advanced Framework Agreement)’을 타결했다. 기존 연합협정에는 전자상거래가 무역 기회를 증진한다는 인식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합의한다는 원칙적 선언이 담긴 조항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었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전자적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는 합의 사항이 포함된다. 이 협정을 개선한 ‘선진기본협정’은 제한적이거나 전자상거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EU는 개선협정 또는 최신화 협정을 추진하고 기존 협정상 양자 디지털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형식적 측면이 주목된다.

## 2) EU 무역협정 내 디지털통상 조항

EU는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및 경제동반자협정을 활발하게 추진했고 이 협정 대부분이 디지털무역규범을 포함한다. 협정마다 디지털통상 규범이 포함된 장이 다른데, 디지털통상 규범을 포함한 장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디지털통상 규범이 ‘서비스

무역, 투자 및 전자상거래 장'에 포함되는 경우로, EU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과 체결한 협정이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유형은 협정 내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장과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장' 또는 '디지털무역 장'을 두는 경우고, EU가 멕시코, 뉴질랜드, 캐나다와 추진한 협정이 해당한다.

디지털통상 규범을 '서비스무역과 투자' 장과 구분되는 단독 장으로 채택하는 방식과 '서비스무역과 투자' 장 내에 하위 절(sub-section)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형식적인 차이에 따른 구분이고 디지털통상 규범의 실제적 범위와 수준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무역, 투자 및 전자상거래 장' 내에 디지털통상 규범을 포함하는 방식일 때가 전자의 방식일 때보다 실제적 규범이 더 간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U가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과 추진한 협정의 '서비스무역, 투자 및 전자상거래 장'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디지털무역 관련 규제 협력 등 2~3개 기본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EU가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과 각각 체결한 협정의 '디지털무역 장'은 다양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규범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러나 협정 내에 장으로 구성 방식과 디지털통상 규범의 수준이 일관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협정 내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최근에 체결된 협정일수록 디지털통상 규범 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구성 방식과 의무 수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EU가 일본, MERCOSUR와 추진한 각각의 협정은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장'을 두고 있으면서도 사전승인 요구 금지, 전자계약, 전자서명과 인증, 스팸메시지, 소비자보호 등 여러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반면 EU-캐나다 협정은 '전자상거래 장'을 두고 있지만 무관세 적용, 데이터보호에 관한 국제표준 고려, 협력 조항만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무역협정 내에 전자상거래 혹은 디지털통상규범을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장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하는지와 같은 형식과 상

관없이, 협정 내 다른 조항, 특히 서비스무역 조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조항을 두는데, 이 방식 또한 협정마다 다르다. 첫째 유형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와 중첩되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EU-싱가포르 협정은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서비스무역 규범과 개방 약속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EU-멕시코 협정은 또한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분야를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박서비스, 방송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공중서비스, 법적 대리인 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명시된 서비스 분야에는 디지털통상 규범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둘째 유형은, 협정 내 디지털통상 규범과 다른 조항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EU-캐나다 협정은 ‘다른 장과의 관계’ 조항(제16.7조)을 두고, 다른 장과 디지털무역 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다른 장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만일 디지털통상 규범과 서비스무역 규범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면서 두 규범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무역 규범을 우선 적용한다는 기준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두 가지 유형 외에 EU 협정 대부분이 채택한 방식은 당사국의 규제 권한(right to regulate)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즉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디지털통상 규범의 자유화 효과를 일정 수준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EU가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영국 등과 추진한 협정에 포함된 ‘규제 권한’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협정마다 열거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의 예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EU-영국 협정은 공중보건, 사회서비스, 공공교육, 안전, 기후변화 같은 환경, 공중도덕,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문화다양성 증진과 보호 등 다양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 3) EU ‘인도-태평양 협력전략’과 디지털 파트너십

EU 파트너십 형식의 첫째 유형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디지털 파트너십이다. 이 파트너십은 EU와 무역·투자 규모가 크고 국제적 개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EU 전략상 우선순위에 두고 장기적으로 포용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sup>4)</sup> 이 전략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법치를 포함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방어하고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8대 비전을 추구한다. 8대 비전은 (1) 무역과 투자에서 공정 경쟁 (2) 개방적이고 공평한 환경 증진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 (4) 기후변화 파리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목표를 위한 양자협력 및 다자간 협력 강화 (5) UN과 브레턴우즈 제도 유지 (6) 포용 정책지지 (7) 상호 증진적인 무역과 경제 관계 확립 (8) 인구변화 대응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우선순위 분야로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 (2) 녹색전환 (3) 해양 거버넌스 (4) 디지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5) 연결성 (6) 안보와 국방 (7) 인류 안보를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무역협정, 경제적동반자협정, 투자협정은 첫 번째 우선순위인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 목적에 해당하고 가치사슬의 회복탄력성과 다변화, 블록화를 추구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4) 디지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전략은 EU 디지털 대전환을 향한 2030 목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 정책을 일관되게 반영한 것이다. ‘2030 디지털 나침반: 디지털 시대를 향한 유럽의 길 (203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은 기술과 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4대 축을 포함하고, EU 역내 원칙과 규범 마련, 모니터링 제도와 지표 구축,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제적인 파트너십 강화 등 대내외 포괄적인 정책과제를 포함한다.<sup>5)</sup>

4) European Commission(2021c),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3. 1. 16).

실제로 이 ‘2030 디지털 나침반’ 정책을 추진하면서 EU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EU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like-minded) 국가들과 ‘디지털파트너십(Digital Partnership)’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는 2022년 5월에 일본과 디지털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에 우리나라와 디지털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2022년 1월 현재 싱가포르와의 디지털파트너십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관한 표준 협력과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고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협력 과제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기본권에 기초하고 회복탄력성이 있는 기술 공급망을 구축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과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들로 이루어진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이전, 데이터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보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둘째 유형으로 EU의 첨단 디지털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주목할 수 있다. 상술한 디지털파트너십만큼 포괄적이거나 디지털통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EU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 예로 ‘EU-인도 연결성 파트너십(EU-India Connectivity Partnership)’이 있다.<sup>5)</sup> 이 파트너십은 2020년 제15차 양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EU-인도 2025 로드맵(EU-India 2025 Roadmap)을 배경으로 하고 실행하는 로드맵에 해당한다. 이 로드맵은 (1) 외교·안보 (2) 무역·투자·비즈니스·경제 (3) 지속가능한 최신 파트너십(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환경, ICT 등) (4) 글로벌 거버넌스(다자 체제, G20 질적 인프라 투자 원칙, 해양 개발, 지속가능성기금플랫폼 등) (5) People-to-People 차원의 포괄적인 틀에서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sup>7)</sup>

5) European Commission(2021), “203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6) European Commission(2021. 5. 11), “EU and India to Work Together for a Stronger Digital Cooperation and to Tackle the Pandemic,”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7) European Commission(2020), “EU-India Strategic Partnership: A Roadman to 2025,”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2021년 5월에 열린 제16차 EU-인도 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연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목표를 확인하고, 코로나19의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한 디지털기술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성 원칙에 기반한 '연결성' 증진을 기본 협력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당사국들은 디지털, 에너지, 교통, 연구개발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슈퍼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 관련 AI, 고성능컴퓨팅(HPC), 양자기술, 안전한 5G 기술,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EU의 아세안 전략이다. EU의 대아세안 전략에는 '2025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ASEAN Digital Masterplan 2025)' 목표를 달성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 EU가 아세안 국가들과 디지털 연결과 과학기술, 혁신 연구개발과 투자를 도모한다는 계획이 포함된다.<sup>8)</sup> 이러한 협력 유형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 체제의 디지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면서 각국 목표와 계획과 일관된 방향으로 양자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국의 디지털 계획을 지지하고 도모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국 이익을 찾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디지털통상 전략 차원에서 하나의 형식적 예로서 참고할 수 있다.

표 2-3. EU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추진된 디지털파트너십 현황

형식적 유형	파트너십(체결 연도)	당사국	디지털통상 관련성	연관 협정
디지털 파트너십	Digital Partnership (2022년 5월 12일)	EU-일본	디지털무역	EU-일본 전략적 동반자협정 (2018년 7월)
	Digital Partnership (2022년 11월 28일)	EU-한국	디지털무역	-
	Digital Partnership (협상 중)	EU-싱가포르	디지털무역	-
연결 파트너십	Connectivity Partnership (2021)	EU-인도	디지털, 에너지, 교통, R&D 협력	-

자료: 저자 작성.

8) ASEAN(2021), *ASEAN Digital Masterplan 2025*,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 4) EU-일본 전략적동반자협정과 디지털파트너십

EU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간 규제 수렴과 국제표준 확산을 중요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이동과 관련하여 EU는 역내 데이터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는 EU의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를 판단하는 '적정성 결정(adequacy finding)'을 핵심 제도로 두고 대외 디지털무역 환경을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 환경으로 만들고자 한다. 2022년 12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2019년)과 한국(2021년)이 적정성 결정을 받았고 뉴질랜드의 적정성 결정 유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EU는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대만, 태국의 데이터보호 제도 도입과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일반데이터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준하는 국제적 데이터보호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EU와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디지털통상 관련 추진 사항들이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EU는 2022년 5월에 일본과 '디지털파트너십'을 맺고 고위급 회담 개최와 함께 EU-일본 EPA의 데이터 조항을 개선하는 협상을 시작하였다. 두 국가의 디지털파트너십과 EPA 데이터 조항 개선 협상 추진의 배경에는 2018년 7월에 개최된 제25차 EU-일본 정상회담과 당시 양국이 채택한 EU-일본 전략적 동반자협정(SPA)이 있다.

SPA는 두 국가의 외교관계를 강화한다는 큰 틀에서 분야별 양자 협력과 글로벌 이슈에의 공동 대응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다. 동 협정의 글로벌 이슈로 UN의제 최신화, 기후변화 파리협약, WTO 개혁, UN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포함되지만 디지털통상 이슈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의 협력(제14조)과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모범관행 교환과 규제 협력(제21조) 조항을 채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이 추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sup>9)</sup> 동 협정에 따라 설립된 SPA 공동위원회가 2019년부터 매년 회의

를 개최하고 있고 이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결과 질적 인프라’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sup>10)</sup>

2018년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산업통상경제대화(EU-Japan High-level Industrial, Trade and Economic Dialogue)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2018년 10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다양한 통상 현안이 다뤄졌는데, WTO 개혁 방안, 통보 및 위원회 활동 강화, 규범 최신화 등 다자 무역체제 강화를 논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과 EU-유라시아 연결, 질적 인프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AI, 사이버보안, 디지털통상, 보건 기술 등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11)</sup>

표 2-4. EU-일본 전략적동반자협정(SPA)하의 논의 추진 예시

추진 일정	회의 및 주요 내용
2018년 7월	제25회 EU-일본 정상회담에서 EU-일본 전략적동반자협정(SPA) 서명
2018년 10월	제1차 EU-일본 고위급 산업통상경제대화(HLED) 회의 개최
2019년 2월 1일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
2019년 3월	제1차 SPA 공동위원회 회의
2020년 2월	제2차 SPA 공동위원회 회의
2021년 3월	제3차 SPA 공동위원회 회의
2022년 4월	SPA 공동위원회 비공식 회의
2022년 10월	제2차 고위급 산업통상경제 대화(HLED) 회의 개최, EU-일본 EPA 데이터이전 조항에 대한 협상 개시

자료: 저자 작성.

9) European Commission,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Japan, of the Other Part,"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10) EU-일본 전략적동반자협정(SPA)의 공동위원회 개최 현황은 일본 외교부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EU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SPA),"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11) 2018년 제1차 고위급 산업, 통상, 경제 대화 회의에서 다룬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의 EU 보도자료를 참고한다: European Commission(2018. 10. 22), "EU and Japan Discuss Economic Cooperation at the 1<sup>st</sup> High-Level Industrial, Trade and Economic Dialogue," 온라인 보도 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2022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제2차 고위급 회의에서도 양측은 WTO 이슈, G7 차기 의장국인 일본의 통상의제, 경제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데이터 관련 조항을 개선하는 협상을 개시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을 추진하였다.<sup>12)</sup> 이 개선 협상은 2019년 2월에 발효한 EU-일본 EPA에 데이터 규범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최신 논의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sup>13)</sup> EU-일본 EPA 내 데이터 규범을 EU-뉴질랜드 무역 협정이나 EU-영국 무역협력협정에 포함된 데이터 규범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EU-일본 EPA는 협정의 데이터 자유이전 조항을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재평가하도록 규정(제8.81조)하고 있어, 이에 따라 양측의 검토가 진행되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22년 10월 24일에 공식 개선 협상이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고 향후 그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5) 기타 협력 회의: EU-대만 디지털경제대화,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EU와 대만은 디지털경제에 관한 대화(Dialogue on Digital Economy: DDE)를 개최하고 디지털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2019년 6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AI, 블록체인, 디지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과 사회·경제가 접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회와 도전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디지털경제 관련 협력할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된다.<sup>14)</sup> 2020년 12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양측은 AI, 5G/6G, 초소형 전자 스마트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블록체인, AI, 사이버보안 인증, 데이터 경

12) 2022년 제2차 고위급 산업, 통상, 경제 대화 회의에서 다룬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의 EU 보도자료를 참고한다: European Commission(2022b. 10. 15), "EU and Japan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High Level Dialogue," 온라인 보도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13) EU-Japan EPA 데이터규범 최신화 협상 개시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EU 보도자료를 참고한다: European Commission(2022a. 10. 7), "EU and Japan Start Negotiations to Include Rules on Cross-Border Data Flows in Thei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온라인 보도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14) Taiwan(2019), "EU-Taiwan 'Dialogue on Digital Economy' (DDE) Ushers in New Era of Cooperation,"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제, 디지털 연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sup>15)</sup>

이처럼 미국과 EU의 디지털통상협정과 협력 추진 모델을 보면,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대화 회의, 협의체 또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술협력 논의에서 공통의 기술 및 표준 개발과 상호호환성이 강조된다. 또한 디지털 연결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동맹 강화와 경제적 네트워크 확대로도 이해되며 신속하고 실리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디지털전환 시대에서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EU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기술이사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고 정책적으로 참고할 중요한 사례가 된다.

## 다.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특징과 예시

앞서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형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형식상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무역협정은 비록 까다롭고 어려운 개방 협상을 거치지만 협상이 완료되면 협정상 정해진 기준과 규범을 바탕으로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통상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형식적 측면에서의 단점은 급변하는 현실 상황에 대처하거나 새로운 규범을 신속히 채택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디지털경제 전환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전통적인 무역협정 형식으로 채택해서 안정된 통상환경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을 채택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 역시 유용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미국과 EU의 다양한 협정 형식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디지털통상협정 형식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협정의 형식적 유형은 (1) 규범과 협상에 기초한 전

---

15) National Development Council(2020. 12. 9), "The 2nd Taiwan-EU Dialogue on Digital Economy (DDE) Successfully Concluded; Taiwan-EU Cooperation Moving Forward toward a New Frontier," 온라인 보도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통적인 무역협정 (2)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기본협정 또는 동반자협정 (3) 무역협정과 기본협정의 기능을 모두 갖춘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통상협정에 참여하는 국가 수에 따라 (1) 양자 협정 (2) 복수국간 협정 (3)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협정의 목적에 따라 형식적 측면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디지털통상협정의 목적이 (1) 통상 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것인지 (2) 무역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인지에 따라 협정 형식이 달라지고, 디지털통상협정을 (3) 국가 전략 혹은 지역 전략과 같이 상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인지 (4) 구체적인 특정 사항을 다루기 위해 체결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협정의 형식적 측면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EU 협정을 이러한 형식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이 [표 2-5]에 나와 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일반적으로 양자협정의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고 전통적인 무역협정 형식인 다수의 FTA, EPA가 이 유형에 속한다. CPTPP도 전통적인 무역협정이지만 11개국이 참여하고 신규 가입이 가능한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공급망,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반부패와 함께 신통상 의제를 다루는 IPEF 역시 미국이 주도한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도 새로운 회원국 가입이 가능한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이다.

한편 양자적 틀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제도를 제공하는 협정 형식으로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TIFA와 EU가 체결한 연합협정이 있다. 이 유형의 협정은 위원회 운영이 바탕이 되고 참여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형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양국이 원하는 현안과 협력 사항을 정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디지털통상협정이 없는 경우 또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보완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표 2-5.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적 특징과 예시

대분류	세부 분류	예시	참여 규모		상위 또는 연계 협정	의제 범위
			양자	복수국(3)		
지역무역협정	양자 무역협정	한-미 FTA, 한-EU FTA USMCA	양자	복수국(3)	통상 규범(WTO), 투자 규범(BIT) 등	상품·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노동, 환경, (경제)협력 등
	복수국간무역협정	CPTPP, RCEP	복수국(11), 개방형	복수국(11), 개방형		
	경제동반자협정	EU-캐나다 CETA EU-일본 EPA	양자 또는 복수국	복수국		
기본협정	무역·투자 기본협정	미국 TIFA	양자	양자	미국 국가 전략	TIFA 위원회가 정하는 의제 (무역, 투자, 개발 협력)
	경제동반자기본협정	IPEF	복수국(14), 개방형	복수국(14), 개방형	미국 아시아-태평양 전략	IPEF는 4개 필리피로 구성 (무역, 공공영, 청정에너지, 반부패)
	전략적동반자(협정)	EU-일본 디지털동반자 EU-한국 디지털동반자	양자	양자	EU 인도-태평양 전략, EU-일본 전략적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가 정하는 의제
	정치협정, 연합협정	EU-MERCOSURE 정치 협정 EU-멕시코 연합협정 EU-칠레 선진기본협정(AFA)	양자	양자	EU-칠레 연합협정을 AFA로 최신화	EU-칠레 AFA는 2개 필리피로 구성(정치협력, 무역투자)
	디지털무역협정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양자	양자	독립협정 (미-일 FTA와 별도)	디지털통상
디지털경제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복수국(3), 개방형	복수국(3), 개방형	독립협정	디지털통상
	디지털경제협정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양자	양자	FTA 전자상거래 개정	디지털통상
	디지털동반자협정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양자	양자	FTA 전자상거래 개정	디지털통상

자료: 저자 작성

## 2.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디지털통상 규범은 WTO 전자상거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1998년 WTO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프로그램하에서 WTO 협정과 전자상거래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당시 관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관세 유예(moratorium) 결정은 차기 각료회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이후 매 각료회의에서 이 결정이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 유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매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기초하여 관세부과 유예를 연장하는 방식 때문에 디지털통상 환경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점차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관세 유예로 인한 세수 손실이 문제가 되고 개도국 회원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도 관세 유예 제도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다른 원인이 된다.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은 관세 유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2022년 6월에 개최된 제12차 각료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고된다. 차기 각료회의에서 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유예에 대한 현 관행을 2024년 3월에 중단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한편 WTO 전자상거래 다자규범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결과 도출에 있어 오랜 기간 난항을 겪고 있다. 제11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WTO 복수국간협정 형식으로 전환하여 협상의 진전을 도모하였고, 최근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국내 전자계약 제도, 온라인소비자보호, 스팸메시지 등 일부 조항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된다.

복수국간 협정 형식은 다자무역 체제의 기본적인 논의 방식에 속한다. GATT 체제에서 비관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채택한 여러 규약(Code)도 다자체제의 복수국간 협정 형식이었다. WTO 체제는 이러한 GATT 규약 대부분



을 하나의 다자협정으로 채택하였고, 정부조달협정과 민간항공기협정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복수국간 협정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정 또한 복수국간 협정 형식으로 논의되고 있고, 최근 새로운 통상이슈를 규율하기 위해 다자체제의 복수국간 협정 형식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비스국내규정협정, 환경상품협정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복수국간 협정은 WTO 회원국 중에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가가 참여하고 해당 협정을 이행하는 방식에 기반한다. 참여국들 간에 협정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형식이지만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협정 참여국이 아니더라도 협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 역시 복수국간 협정이고,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처럼 WTO 회원국 중 일정 비율이 수락하면 협정이 발효하는 형식도 있다.

### 3. 지역무역 체제에서의 논의 형식

#### 가.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 구분

지역무역 체제의 디지털통상협정이 FTA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FTA 전자상거래 조항인지, FTA와 연결된 디지털통상협정인지, 혹은 연결된 기존 협정이 없는 독립된 디지털통상협정인지로 나눌 수 있고 이 형식적인 측면을 (1) FTA 조항으로 채택된 경우 (2) FTA에 부속된 협정으로 채택된 경우 (3) FTA와 별도인 독립협정으로 채택된 경우로 정리한 내용이 [표 2-6]에 나와 있다.

WTO 협정 발효 후 채택된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조항을 포함하고 본 연구의 형식적 구분에 따르면 형식 (1)에 속한다. CPTPP 전

자상거래 조항과 USMCA 디지털무역 조항이 형식 (1)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최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채택된 디지털통상협정과 디지털경제협정은 대부분이 기존 FTA 조항을 개정하고 대체하며 본 연구의 구분에 따르면 형식 (2)에 속한다. 기존 FTA와 연결되지 않았거나 연결된 FTA가 없는 경우를 형식 (3)으로 구분했고 USJDTA와 DEPA가 이 형식 유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FTA 구조상 상품무역 개방과 서비스무역 개방 관련 양허와 규범이 구분되고 전자상거래 규범은 이와는 별도의 장 또는 조항으로 포함된다.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디지털서비스가 확대하는 최근 상황에서 디지털통상 이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형식(1)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쟁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협정 내 전자상거래 장의 적용 범위, 다른 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다.

특히 전자상거래 규범상 '디지털제품'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디지털제품에 대한 의무가 점차 강화하면서 디지털제품과 디지털서비스를 법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범이 서비스무역 규범으로 규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형식 (1) 중에서 최근 채택된 협정일수록 디지털서비스 관련 규정을 채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형식 (2)는 형식 (1)의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협정이고 최근에 발효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대부분이 이 형식을 따른다.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AUSDEA)과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UK-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UKSDEA)이 대표적이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KSDPA도 이 형식에 속한다. KSDPA의 경우 한-싱 FTA 전자상거래 장을 대체하는 협정을 먼저 발효하고 개정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앞의 두 협정과 형식상 구분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진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국내법 개정 등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을 계속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을 하나의 형식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6. 형식적 측면에서의 디지털통상협정의 유형 구분

형식 구분		FTA 조항과의 관계	예시	
FTA/RTA에 부속된 경우	FTA/RTA의 조항(장)으로 채택	FTA 조항으로 채택	CPTPP 제14장 전자상거래	
			USMCA 제19장 디지털무역	
	FTA/RTA와 별도의 협정으로 채택	FTA 조항을 대체(replace)하고 개정(amend)하는 협정	AUSDEA	[대체] FTA 전자상거래 장을 ASDEA 부속서A로 대체함 <sup>1)</sup> [개정] FTA 일부를 ASDEA 부속서B의 내용으로 개정함 <sup>2)</sup>
			UKSDEA <sup>3)</sup>	[대체] 통합협정 <sup>4)</sup> 전자상거래 조항을 UKSDEA 부속서로 대체함 <sup>5)</sup> [개정] 통합협정의 일부를 UKSDEA 부속서 내용으로 개정함 <sup>6)</sup>
	FTA 조항을 대체하고 개정하는 협정이고, 단계적으로 추진	KSDPA	[대체] FTA 전자상거래 장을 KSDPA 부속서로 대체함 <sup>7)</sup> [개정] KSDPA 발효 1년 안에 협의 개시 <sup>8)</sup>	
독립협정을 체결한 경우			USJDTA DEPA	

- 주: 1) 호주-싱가포르 FTA '제14장 전자상거래'를 AUSDEA Annex A '제14장 디지털경제'로 대체함.  
 2) 호주-싱가포르 FTA 전문과 제9.21조 금융서비스 장의 분쟁해결 조항을 AUSDEA Annex B의 새로운 조항으로 개정함.  
 3) UKSDEA는 동 협정의 모든 조항, 부속서, 각주가 영국-싱가포르 FTA의 불기분의 일부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두었음.  
 4) 통합협정(Incorporated Agreement 또는 IA)은 영국-싱가포르 FTA에 정의되고, 영국-싱가포르 FTA로 통합되고 변경된 EU-싱가포르 FTA를 지칭함.  
 5) 통합협정(IA) '제8장 서비스, 설립, 전자상거래' 장의 'Section F 전자상거래' 조항을 UKSDEA Annex A '디지털무역과 디지털경제 부속서'로 대체함.  
 6) 통합협정(IA)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서비스, 설립과 전자상거래' 장의 일부 조항을 UKSDEA Annex B의 새로운 조항으로 개정함.  
 7) 한국-싱가포르 FTA '제14장 전자상거래'를 KSDPA Annex A '제14장 디지털경제'로 대체하고, 동 FTA '제12장 금융서비스' 장의 6조 예외 조항과 제21.1조 일반적 예외를 Annex B로 대체함.  
 8) KSDPA 제3조는 동 협정 발효 1년 안에 한국-싱가포르 FTA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제10장(투자)을 개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함. KSDPA는 2023년 1월 14일 발효함.

자료: 저자 작성.

형식 (3)인 USJDTA의 경우 미국과 일본 사이에 관세를 인화하는 무역협정 (Trade Agreement)은 있지만 FTA가 없는 상황에서 채택된 독립협정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양자 전자상거래규범이 부재하므로 USJDTA가 귀속되거나 관련성을 유지할 지역무역 협정이 없다. 한편 DEPA의 경우 DEPA 참여국인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이의 양자 FTA가 있고 세 국가가 참여한 다른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있지만<sup>16)</sup> 기존 무역협정 유무와 상관없이 혹은 그러한 협정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디지털경제협정이라는 점에서 DEPA의 형식을 중요하게 참고할 만하다.

##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

### 1) 디지털통상 규범에서 제외되는 대상 조치

다음으로 디지털통상협정이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문 조항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협정마다 다르고 제도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아 무역환경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정별 제외되는 대상 조치를 정리한 내용이 [표 2-7]에 나와 있다. 이 현황은 명시적인 조항을 둔 제외 사항을 파악한 것이며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해서 협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협정이 금융서비스와 시청각서비스를 제외하는 명문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통상협정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전형적인 서비스이므로 서비스무역 규범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이를 굳이 디지털통상협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것으로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면, 형식(1)의 CPTPP, USMCA부터 (2), (3) 형식의 다른 모든 협정까지 정부조달과 정부

---

16) 칠레-싱가포르 FTA(2003), 뉴질랜드-싱가포르 ANZCEP(2001)의 개선협정(2019)이 있고 이 외에도 CPTPP, RCEP 등 세 국가 모두 또는 일부가 참여한 복수국간 협정이 다수 있다.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입찰에서 전자적 조달시스템 사용을 증진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도모하는 협력 사항이 언급되고, 정부 정보지만 개방형 정부데이터에 대해서는 원활한 접근과 사용을 위한 협력이 강조된다.

한편 디지털제품 관련 조항을 채택한 협정들의 경우 대부분이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범의 적용 범위에서 방송서비스를 제외하고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제외하며 동 규범이 지식재산권 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UKSDEA의 경우 디지털제품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며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시청각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표 2-7. 디지털통상 규범 대상에서의 제외 사항

구분	한상FTA 제14장	한미FTA 제15장	CPTPP 제14장	USMCA 제19장	KSDPA	AUSDEA	UKSDEA	USJDTA	DEPA
1 정부조달 제외 - 협정상 정부조달 관련 협력 조항을 둠 - 전자계약 관련 국내체계, 전자인증, 중소기업 조항에 협력 등 규정 -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	X	X	O	O	O	O	O	O	O
2 정부 정보 제외 - 개방형 정부데이터(open government data)를 별도로 다룸	X	X	O	O	O	O	O	O	O
3 금융서비스 제외 - 단, 전자결제에는 합정 적용함	X	X	X	X	X	X	X	X	O
4 시정각서비스 제외	X	X	X	X	X	X	O	X	X
5 방송서비스 제외 정부지원 용자, 보증, 보함을 포함하여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무상교부에 적용하지 않음	O	●	X	●	●	●	X	●	●
7 지식재산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적용 금지	X	X	●	X	●	●	X	●	●
8 디지털제품 조항 포함 여부	X	-	-	-	-	-	X	-	-

주: - 조항 있음 X 조항 없음 O 디지털통상 규범을 적용하지 않음 ● 디지털제품 조항 또는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 2) 디지털제품과 전자적 전송

디지털통상협정에는 ‘디지털제품’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와 ‘전자적 전송’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통상협정 대부분이 디지털제품에 비차별의무를 적용하고, 전자적전송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이를 정리한 내용이 [표 2-8]에 나와 있다. USMCA는 무관세 대상을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수출입으로 규정했지만 최근 많은 협정들이 전자적 전송을 대상으로 하고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가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 경우도 디지털제품의 수출입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sup>17)</sup>

디지털통상협정 대부분이 ‘디지털제품’과 ‘전자적 전송’을 정의하는데,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과 전자적 전송에 대한 협정 정의상 차이는 크다. 디지털 전송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한 전송을 의미한다. 디지털 제품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정의된다. 한-미 FTA는 디지털 제품이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상관없다고 명시했으나, CPTPP 정의부터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여부와 상관없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또한 CPTPP 정의부터 디지털제품이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석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 보면 ‘디지털제품’은 거래의 내용 측면을 보는 것이고 ‘전자적 전송’은 거래의 수단적 측면을 보는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이 서비스인지 상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협정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각주가 있어, 협정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만약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분쟁해결절차의 판정을 따르도록 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

17) 한국의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분석하면 디지털제품에 무관세 의무를 적용하는 협정과 전자적 전송에 무관세 의무를 적용하는 협정이 둘 다 있다. 디지털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은 한-싱가포르 FTA, 한-중미 FTA, 한-페루 FTA, 한-캐나다 FTA, 한-콜롬비아 FTA이다.

표 2-8. 디지털통상협정의 디지털제품과 전자적 전송 관련 조항

구분	무관세 의무	비차별의무
한-미 FTA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의 수출입	디지털제품
CPTPP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디지털제품
USMCA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의 수출입	디지털제품
KSDPA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디지털제품
AUSDEA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디지털제품
UKDEA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
USJDTA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디지털제품
DEPA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	디지털제품

자료: 저자 작성.

### 3) 디지털통상협정의 정의 현황

디지털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이 다루는 사안이 계속 확장하고 무역협정에 쓰이지 않은 새로운 용어와 개념이 다양하게 포함된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이러한 용어와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는 조항을 포함하는데 [표 2-9]에 정리된 바와 같이 FTA 조항인 형식 (1)보다 FTA 부속협정이거나 단독협정인 형식 (2)와 (3)에서 더 많은 용어 정의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식 (2)와 (3)의 협정들이 디지털통상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비교적 최근에 체결되었으며 미국, 싱가포르 등 참여국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협정상 용어와 정의는 규범의 적용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사용되는 개념이 명확할수록 협정 이행에 도움이 되고 모호성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개념을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효과가 있고 협정상 용어가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미래의 디지털무역 상황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2-9. 디지털통상협정의 정의 조항

정의 조항	한-미 FTA	CPTPP	USMCA	AUSDEA	USJDTA	DEPA
전달매체(medium carrier)	○	×	×	×	×	×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	○	○	○	○	○	○
- 상품·서비스 무역과의 구분	○	○	○	○	×	○
- 디지털 화폐 제외	×	○	○	○	○	○
전자인증(electronic authorisation)	○	○	○	○	○	×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	○	○	× <sup>1)</sup>	○	× <sup>1)</sup>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	○	×	○	○	○
무역행정 문서(trade administration document)	○	○	○	○	×	○
금융·투자·금융서비스 제외	○	○	○	×	×	×
컴퓨터 설비(computing facility)	×	○	○	○	○	○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	○	○	○	○	○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메시지, 스팸메시지 (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message)	×	○	○ <sup>2)</sup>	○	○	○
알고리즘(algorithm)	×	×	○	×	○	× <sup>1)</sup>
정부정보(government information)	×	×	○	× <sup>1)</sup>	○	× <sup>1)</sup>
정보 콘텐츠 제공자(information content provider)	×	×	○	×	○	×
상호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	×	×	○	×	○	×
금융기관, 금융제도, 금융시장 인프라, 금융서비스, 금융컴퓨팅 설비, 금융서비스 공급자 등의 정의	×	×	×	○	○	○
사기 및 기만적 상업행위	×	×	×	× <sup>1)</sup>	○	× <sup>1)</sup>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	×	×	×	○	×	○
전자송장(electronic invoicing or e-invoicing)	×	×	×	○	×	○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	×	×	×	○	×	○
개방형 표준(open standard)	×	×	×	×	×	× <sup>1)</sup>
핀테크(FinTech)	×	×	×	○	×	× <sup>1)</sup>
규제테크(RegTech)	×	×	×	○	×	×
암호화기술(cryptography), 암호화(encryption), 암호화 알고리즘(cryptographic algorithm), 키(key)	×	×	×	× <sup>1)</sup>	×	○

주: 1) 정의는 없으나 본문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

2) 상업 또는 마케팅 이외 목적의 전자메시지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 다.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규범의 설정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즉 디지털서비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서비스를 ‘서비스’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기존 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규범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기술 기반 서비스를 디지털통상 사안으로 보고 디지털통상 규범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구분할 법적 기준도 부재한 현실이다.

디지털서비스를 정의하는 까다로운 일을 차치하더라도, 디지털통상협정 대부분이 ‘전자적으로 전달 또는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조치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formed electronically)’ 즉 디지털서비스에 기존 무역협정의 서비스무역·투자 규범을 적용하고 기존 무역협정에서 정한 어떠한 예외와 유보조치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식(1)인 FTA, CPTPP, USMCA는 협정상 서비스무역·투자 규범을 디지털서비스에 적용하고 어떠한 예외와 유보조치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식(2)에 속하는 KSDPA, UKSDEA도 디지털서비스에 기존 서비스무역·투자규범을 적용하고 예외와 유보사항을 유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형식(3)에 속하는 USJDTA는 기존 양자 무역협정이 없는 동시에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동 협정상 특정 디지털서비스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WTO 양허에 따라 무역개방과 예외사항이 검토되고 동 협정상 의무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EPA는 동 협정이 기존 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의무와 공존(coexist)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DEPA 참여국간 WTO 협정은 물론이고 여러 양자협정과 복수국간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이러한 무역 협정상 권리·의무가 침해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DEPA는 모듈14 분쟁해결제도를 두었는데, 만일 DEPA와 여타 협정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거나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표 2-10. 디지털통상협정의 디지털서비스 조치에 관한 조항의 유형

	디지털서비스 조치	한-싱 FTA 제14장	한-미 FTA 제15장	CPTPP 제14장	USMCA 제19장	KSDPA	AS DEA	UK SDEA	USJDTA	DEPA
1	디지털서비스 조치에 FTA의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장을 적용함	○	○	○	○	○	×	○	×	×
	FTA의 투자,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장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예외 혹은 불합치조치를 포함함	×	○	○	○	○	×	○	×	×
2	다른 협정상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경우 상호 협의 또는 분쟁해결 절차를 따름	×	×	×	×	×	×	×	×	○

자료: 저자 작성.

## 라. 데이터 규범에 대한 제한

디지털통상협정의 핵심 규범은 소위 데이터 규범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 조항에는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 분야의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이 포함된다. 디지털통상협정 대부분은 이들 조항의 법적 효과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2-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11. 데이터 규범에 대한 제한 조항의 유형

	CPTPP 제14장	USMCA 제19장	KSDPA	AUSDEA	UKSDEA	USJDTA	DEPA
1 투자 및 서비스, (금융서비스) 유보 조치에 다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의무	○	×	○	○	×	×	×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	×	○	○	×	×	×
- 컴퓨터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	×	○	○	×	×	×
- 금융서비스 컴퓨터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	-	○	○	-	×	-
2 다음 조항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조항의 적용 대상임:							
-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의무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	×	×	×	×	×	×
- 컴퓨터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 소스코드 요구 금지							
3 이 협정은 다음 조항의 권리, 의무를 새롭게 창설하지 않음							
-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의무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	×	×	×	×	×	○
- 컴퓨팅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ICT 제품 조항							

자료: 저자 작성.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이들 조항을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관련 유보 조치와 예외사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CPTPP, KSDPA, AUSDEA가 이 방식을 채택한 협정들이다.

CPTPP의 경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의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팅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을 서비스, 투자, 금융서비스 유보 조치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들 조항을 제한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상기 조항과 소스코드 조항을 포함한 4개의 데이터 조항이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규범의 대상이 된다(subject to)고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규범의 효과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규범을 제한한 DEPA 조항을 주목할 수 있다. DEPA는 상기 조항과 암호화기술을 사용한 ICT 제품 조항을 포함한 4개의 데이터 조항이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는 양해부속서를 두고 있어,

데이터 규범의 효과를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이 참여한 협정인 USMCA와 USJDTA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규범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지 않아 다른 협정들과 대조된다. USMCA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서비스, 투자, 금융서비스 조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주요 데이터 조항을 서비스무역·투자 규범상의 유보조치와 예외사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두지 않았다. USJDTA의 경우 당사국이 체결한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규범과 유보 조치, 예외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협정상 주요 데이터 규범을 다른 협정들과 같은 방식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제3장



#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내용적 측면

1. 개관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4. 결론

# 1. 개관

## 가. 디지털통상 규범의 탄생

디지털무역 통상규범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논의와 FTA 또는 RTA를 통한 양자 및 지역 차원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WTO의 전자상거래 협상은 대표적인 다자간 디지털무역 통상규범 포럼인데, 각국의 현저한 의견 차이로 아직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생기는 디지털무역 규율체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은 FTA나 RTA에 디지털통상 규범을 포함하거나 독립된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자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 이루어 낸 디지털통상 규범들은 과거 주로 다루어지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쟁점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나 컴퓨터 서버 현지화 문제 등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sup>1)</sup> 다만 이는 협정 가입국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통상 규범이 발칸화(Balkanization)되거나 블록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국가마다 각자의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소위 '경쟁적 자유화'의 입장에서 디지털통상규범을 형성하고자 한다.<sup>2)</sup> 이에 따라 미국은 WTO에서 자국의 협상력이 제한받는 상황보다는, 자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양자 또는 지역 협정을 우선시하며 이러한 협정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른바 '제한적 자유화'의 관점에서 디지털통상 규

---

1) 전자상거래와 디지털무역을 규율하는 미국 주도의 대표적 협정들로는 한-미 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등이 있으며, 동 협정들은 다른 디지털무역 관련 FTA/RTA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2) 2019년 미무역대표는 "미국은 디지털 교역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의 무역정책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USTR(2019), p. 13.

범을 만든다. 즉 EU는 대내적으로는 디지털시장을 단일화하고 육성하여 협소한 시장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에 따라 EU는 역내 시장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외적인 부분에서 EU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져서 개방에 소극적이다.<sup>3)</sup>

또한 EU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이슈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콘텐츠 부문에서는 문화 및 서비스로서의 예외를 주장한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실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지지하고, 소비자 및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서도 자유화를 찬성하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통상 규범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sup>5)</sup>

한편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해 중국은 시장과 규제체제의 독자성을 우선시한다. 또한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 컴퓨터설비의 현지화 등 디지털무역 전반에 제한적 입장을 보인다.<sup>6)</sup> 이처럼 디지털무역 전반에 대한 중국의 제한적 입장은 통상관계를 넘어 정치와 안보에까지 확대되어 국제적인 디지털통상 규범을 마련하는 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국제경제와 무역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WTO를 통한 다자 차원에서 디지털통상 규범 제정을 위한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자 일부 국가들은 이를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통상 규범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FTA 및 RTA를 출현시켰고, 다자무

---

3) 예를 들어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 규칙은 원래 역내 단일시장 육성을 위한 장치였으나 회원국과 교역하는 외국 기업에도 동 규칙이 적용되어 대외적으로는 디지털무역의 규제적 요소로서의 성격도 갖게 되었다.

4) 권현호(2011), pp. 73~75 참고.

5) 박영훈(2000), p. 10.

6) 중국을 포함하여 앞서 미국과 EU 등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노형, 정명현(2018), pp. 200~205 참고.



역 시스템에서는 해결되지 못하였던 일부 디지털무역 쟁점을 실제로 해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WTO를 통한 다자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디지털기술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디지털 분야의 지배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이루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무역을 규율하는 실질적 규범으로서 체결된 FTA 중 의미 있는 첫 사례가 바로 한-미 FTA이다.<sup>7)</sup> 즉 한-미 FTA는 독립된 전자상거래 장(chapter)을 통해 디지털무역을 규율하였으며, 특히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s)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비차별대우(non-discriminatory principles)를 규정하고, 온라인소비자보호, 인터넷 접근 및 이용의 자유화, 국경 간 정보 이전 등 현재 디지털무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sup>8)</sup> 이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무역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들을 검토하였고,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은 이후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제14장 전자상거래 규범의 기초가 되었다.<sup>9)</sup>

CPTPP는 제14장(전자상거래)에서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들어간 디지털무역과 관련된 통상규범들을 그대로 포함하였다. 즉 CPTPP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차별대우 금지, 전자인증과 서명, 온라인소비자보호, 종이 없는 무역,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속 및 이용 원칙 등 기존에 논의된 디지털무역 관련 기본적인 규범들을 명시적으로 강화하였다.<sup>10)</sup> 그러나 디지털통상 규범으로서 CPTPP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자상거래 규범 강화에 더하여 CPTPP는 개인정보의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정당한 공공정책목적 예외, 컴퓨터설비 현지화 문제, 스팸메일, 사이버 보안 문

7) 한-미 FTA는 2007년 6월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서명되었으며, 국내 비준절차 등을 거쳐 2012년 3월 발효되었다. 이후 2018년 개정협상을 통해 2019년 1월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발효되었다.

8) 한-미 FTA 제15장, 제15.3조, 제15.5조, 제15.7조 및 제15.8조 등 참고.

9)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 ·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추가로 참여한 경제동맹체로,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발효되었다.

10) CPTPP,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및 제14.10조 등 참고.

제, 소스코드 개방 요구 등 최근 디지털무역에서 제기되는 디지털무역 자유화 관련 요소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둬으로써 기존 FTA들과 달리 디지털통상의 범위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sup>11)</sup> 이러한 CPTPP의 디지털무역 관련 내용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대부분 수용되었으며,<sup>12)</sup> 이후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들에서 핵심 조항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sup>13)</sup>

한편 USMCA는 제19장 제목을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으로 하여 기존 FTA/RTA에서 사용하던 전자상거래의 틀을 벗어나 본격적인 디지털통상 규범의 강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USMCA의 제19장 디지털무역에서는 앞서 CPTPP의 전자상거래 조항들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일부 내용만 추가되거나 삭제되었다. 특히 컴퓨터설비 현지화 조항에서 기존에 명시되었던 ‘정당한 공공정책목적 예외’ 규정이 삭제된 점이 눈에 띈다.<sup>15)</sup> 또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해당 플랫폼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하였다.<sup>16)</sup>

이처럼 미국의 디지털무역에 대한 통상규범화 노력은 양자관계에서 독립적인 디지털무역협정을 마련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즉 2019년에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미-일 디지털무역협정(USJDTA)<sup>17)</sup>는 앞서 미국이 다루었던 CPTPP와 USMCA에서의 디지털무역 관련 규범들을 포함하여 한층 포괄적인 쟁점들을 다루면서, 이를 FTA가 아닌 독립된 협정으로 다룬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8)</sup> 특히 동 협정은 USMCA 수준의 규범을 서비스 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11) CPTPP, 제14.8조, 제14.11조, 제14.13조, 제14.14조, 제14.16조 및 제14.17조 등 참고.

12)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1994년에 발효되어 적용되었던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대체하여 2018년 9월에 체결된 협정으로 2020년 7월에 발효하였다.

13) 김민정(2021), pp. 63~64 참고.

14) Burri(2020), p. 16.

15) USMCA, 제19.12조 참고.

16) USMCA, 제19.17조 참고.

17)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은 2019년에 10월 서명되었으며, 2020년 1월에 발효되었다.

18) 김민정, 양인창(2021), p. 23.

하며, 금융서비스 관련 컴퓨터설비 현지화 의무를 금지하고, 알고리즘 공개 및 강제이전·특정 암호화 기술 강제 금지 등 금융서비스 관련 내용을 특화하였다.<sup>19)</sup>

실질적인 디지털무역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고, 2020년 6월에 새로운 디지털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 체결되었다.<sup>20)</sup> 동 협정은 디지털규범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존 CPTPP의 전자상거래 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디지털무역에 대한 규범형성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들을 몇 가지 모듈(module)로 구분하고,<sup>21)</sup> 모듈별로 세부 조항들을 두는 방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DEPA는 기존 통상규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에 더하여 새로운 디지털기술 문제와, 원활한 디지털무역을 위한 국가간 협력 부분에도 많은 규정을 두었다.<sup>22)</sup>

또한 호주와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된 디지털경제협정(AUSDEA) 역시 앞선 DEPA와 마찬가지로 디지털무역이 포함된 디지털경제 전반에 대한 양자협정으로 체결되었다.<sup>23)</sup> 호주와 싱가포르는 2021년 현재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AUSDEA에서는 디지털무역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CPTPP에서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와 컴퓨터설비 현지화 조항에서 제외되었던 금융서비스 분야를 포함시켰고, 소스코드 관련 내용을 더 강화하였다.<sup>24)</sup>

마지막으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가장 최근의 디지털협정인데, 이는 기존 한-싱 FTA 제14장 전자상거래 규정을 확대·

---

19)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1조 등 참고.

20)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은 디지털무역 규칙에 대한 공통규정, 기준 등에 대하여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3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2020년 6월에 서명되었고, 동년 12월에 발효되었다.

21) 대표적으로 DEPA는 모듈 2 '기업 및 무역 원활화', 모듈 3 '디지털제품의 대우 및 관련 문제', 모듈 4 '데이터 이슈', 모듈 6 '기업 및 소비자 신뢰', 모듈 8 '새로운 트랜즈와 기술' 등 총 16개 모듈로 디지털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22) 예를 들어 DEPA는 디지털 신원(제7.1조), 핀테크(제8.1조), 인공지능(제8.2조) 등 새로운 디지털환경에 따른 문제들과, 전자송장(제2.5조) 및 특수 화물(제2.6조) 등 무역원활화와 협력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

23)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AUSDEA)은 2020년 3월에 체결되었고, 동년 12월에 발효되었다.

24) AUSDEA, 부속서A, 제23조~제25조, 제28조 등 참고.

개편하여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동 협정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의무화,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전통적 쟁점뿐만 아니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 설비의 위치,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제품, 소스코드 문제 등 최근 법적 논의가 활발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경제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아가서 동 협정은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문제나 AI, 핀테크(FinTech) 협력 등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sup>25)</sup>

이처럼 디지털무역에 대한 통상규범은 형식상으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장 또는 조항이었다가 이제는 독립된 디지털무역협정이 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과거에는 전자상거래 협력과 원활화 등 협력 수준에 머무는 것이었다면, 그 후에는 데이터의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 컴퓨터설비의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여부 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필수적 논의 사항이 되었다가, 이제는 AI와 핀테크 등 디지털경제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무역 통상규범은 질적으로도 과거에는 단순한 협력 조항이었다가 이제는 당사국들의 의무를 많이 규정하는 구속력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

## 2.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분석의 틀

### 가. 분석대상 협정

본 연구는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총 8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선정하고 동 협정들에 규정된 주요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관련 조항이 한두 개 정도만 들어가 있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

25)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2022년 11월 21일에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대거 추가된 CPTPP 이전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에 대한 분석은 그 의미가 크지 아니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CPTPP와 그 이후의 디지털통상협정을 검토하였다.

기존 FTA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한 독자적 형태의 협정으로는 DEPA, USJDTA 및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등 총 3개를 들 수 있다. 우선 DEPA는 칠레,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가 체결한 다자협정으로 가입이 자유로우면서도 모듈 형식이라는 독특한 구성의 디지털통상협정이고, USJDTA는 미국이 주도한 독자적인 디지털통상협정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sup>26)</sup>은 조항 대부분이 노력 조항(또는 협력 조항)으로 구속력이 강하지 않다. 따라서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은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할 때 참고로 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기존 FTA를 개정한 개정의정서 형태의 협정으로는 KSDPA,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AUSDEA) 및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UKSDEA)을 들 수 있다. 이 3개의 협정은 모두 싱가포르가 참여한 양자 협정으로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KSDPA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속하는 여러 개의 장 중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장을 두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주요 국가인 미국, EU 및 중국이 각각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협정 중 미국이 주도한 협정으로는 CPTPP<sup>27)</sup> 및 USMCA를, EU가 포함된 협정으로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EU-UKTCA) 및 EU-일본 경제동반자 협정(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JEP)을, 중국이 포함된 협정으로는 가장 최근에 발효된 RCEP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6)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은 2019년 1월 22일에 서명되었고, 2021년 12월 2일에 발효되었다.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규제프레임워크, 이해관계자 참여, 물류, 전자결제, 사이버보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SEAN, "ASEAN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3. 1. 16).

27) 비록 미국이 탈퇴하였지만, 그 내용 합의 시 미국이 주도하였으므로 CPTPP를 포함하였다.

표 3-1. 분석대상 협정 구분

대구분	소구분	대상 협정
디지털통상에 특화된 '협정' 형태	완전한 독자적 협정	DEPA USJDTA
	FTA 개정의정서 형태	KSDPA
지역무역협정 중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Chapter)'의 형태	미국 주도	CPTPP USMCA
	EU 포함	EUKTCA EJEPA
	중국 포함	RCEP

자료: 대상협정을 중심으로 필자가 분류함.

## 나. 분석대상 조항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상기 8개 분석대상 협정의 조항들을 공통 주제별로 분류한 후, 중요도가 높은 조항 위주로 분석한다. DEPA의 경우 모듈별로 구분되어 있어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으나 모듈이 16개라서 분류가 지나치게 많다. 또한 단지 싱가포르, 칠레 및 뉴질랜드 3개국이 합의한 모듈이라서 다양한 선진국 및 개도국의 관점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최근에 진행되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 상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sup>28)</sup> 이에 따라 선정된 분석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 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과 전자상거래 관련,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의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와 전자상거래 관련,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 관련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와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28) 이규엽, 강민지(2021), p. 5 내용 중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을 참고하였다.

표 3-2. WTO 전자상거래협정 협상을 위한 통합문서의 구조

구분	소구분	내용
Section A 전자상거래 기반	전자거래 원활화	-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제 [본문 3-가. 1]) - 전자인증과 및 전자서명 [본문 3-가. 2]) - 전자계약 - 전자송장 [본문 3-가. 3]) - 전자지급서비스 [본문 3-가. 4])
	디지털무역원활화 및 물류	- 종이 없는 무역 - 미소마진 및 세관절차 - 싱글 윈도 정보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 물류 서비스(무역원활화 강화 [본문 3-가. 5]) - 상품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 무역원활화 지원 서비스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비차별 및 책임	-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본문 3-나. 1]) -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책임제한 [본문 3-나. 2]) -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침해
	정보의 이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본문 3-나. 3]) - 컴퓨터설비의 위치 [본문 3-나. 4]) -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본문 3-나. 5])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본문 3-나. 6])	
	인터넷과 정보 접근	- 공공데이터 개방 [본문 3-나. 7]) - 인터넷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본문 3-나. 8]) - 양방향컴퓨터 접근과 사용 - 경쟁 [본문 3-나. 9])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 온라인소비자보호 [본문 3-다. 1]) - 원치 않는 상업 전자메시지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보호 [본문 3-다. 2])
	비즈니스 신뢰	- 소스코드 [본문 3-다. 3]) -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본문 3-다. 4])
Section D 공통이슈	투명성, 국내규제 및 협력	- 투명성 [본문 3-라. 1]) -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적 가용성 - 국내규제 -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본문 3-다. 2])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 역량 강화 - 기술 지원
Section E 통신	통신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 범위, 정의, 경쟁적 세이프가드, 상호연결, 보편적 서비스, 라이선싱과 인증, 통신규제기관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 및 상품
Section F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 접근, 임시 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 부족, 상품 시장 접근	
부속서	서문, 정의,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 의 관계, 일반적 예외, 안보 예외, 건전성 조치, 조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의 무역촉진 위원회 [본문 3-라. 3)-5])	

자료: 이규엽, 강민지(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Vol. 21, No. 3, p. 5,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않은 DEPA상 일부 조항 및 EU 등이 체결한 디지털통상 협정에서 첫째,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조항, 둘째, 혁신 관련 데이터 혁신 조항, 셋째, 디지털 포용 조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통상에 관한 장에는 ‘국가의 규제권한’ 조항이라는 다른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조항이 존재한다. 동 조항은 일반적으로 서문 등에 언급되는 내용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이 역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조항으로 포함한다.

표 3-3. EJEPA 및 EUKTC A 조항 비교

조항	EJEPA	EUKTCA
제목/장	SECTION F (E-Commerce)	Title 3 (Digital Trade)
목적	8.70	196
일반규정	8.70	197
예외	8.3(SECTION A)	199
협력	8.80	
정의	8.71	200
관세	8.72	203
규제권한	8.12	198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8.77	206
국내규제	8.74	
사전허가 불요원칙	8.75	204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8.76	205
소비자보호	8.78	208
개인정보보호		202
스팸메일	8.79	209
다른 장과의 관계	8.76	
국경 간 정보 이전		201
소스코드	8.73	207
개방된 정부데이터		210
컴퓨터 서비스		212

자료: 대상협정을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함.



### 3.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을 위한 내용 분석

#### 가. 전자상거래 원활화

##### 1)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 가) 개요

디지털통상을 촉진하려면 우선 각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국내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전송에 관한 국내법적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는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따르도록 하고,<sup>29)</sup> 동 모델법 이외에도 국제기준이 있으면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2005년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Contracts: UN CUECIC)’<sup>30)</sup>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 및 모델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각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의 회피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적 체계 개발에 이해관계인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협정에 따라 「2017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모델법에 의거하여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5834호, 1999.2.8. 제정)이 제정되었고, 2022년 11월 현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수정된 법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30)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5일 동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2022년 11월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동 협약 내용 중 일부가 전자거래와 관련된 여러 국내법과 상충될 소지가 많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2011).

## 나) 분석 및 결론

KSDPA<sup>31)</sup>의 경우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 또는 2005년에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sup>32)</sup> 전자상거래 규제 부담을 제거하고, 이해관계인의 원활한 참여와 「2017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채택을 위한 노력 의무까지 규정<sup>33)</sup>하고 있어 비교적 구속력이 높다고 평가된다.<sup>34)</sup> 반면 RCEP은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 또는 2005년에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조약 및 모델법’까지 추가하였다. 이로써 회원국들이 국내법 체계를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국제기준 범위가 확대되고 법 수립의 유연성이 높아졌다.<sup>35)</sup> 아울러 각주를 추가하여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등 국내법 정비를 위한 제반 준비 기간을 주며 개도국을 배려하는 융통성을 보인다. 또한 RCEP은 KSDPA와는 달리, 노력 의무의 대상을 ‘모든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 제거’로 한정하여 동 조항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

31) KSDPA 제14.7조.

32) KSDPA의 경우 2005년 11월 23일에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을 추가한 이유는 한국은 동 유엔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2013년 3월 1일에 동 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3) 전자양도성 기록은 양도성 증서,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실현하는 도구 개념으로, 미국 법에는 이미 도입된 개념이지만 국내법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정경영(2017).

34) 동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채택 노력 의무가 포함된 것은 싱가포르가 동 모델법을 채택한 두 번째 국가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동 모델법에 따라 자국의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0)」을 개정하였다. 동 법안은 다음 자료를 참고한다. Singapore Statutes Online(2021),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0”(최종 검색일: 2023. 1. 16).

35) RCEP 제12.10조 제1항.

## 2)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 가) 개요

디지털통상 전자거래 시 명확한 법률관계를 위해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동 조항은 전자서명이라는 점만으로 법적효력이 부인될 수 없고, 거래당사자간 자유롭게 적절한 전자인증 방법 결정이 가능하며, 관련 법적 요건 준수 여부를 사법 및 행정 당국에 입증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 나) 분석

동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DEPA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협정은 내용이 유사하다. KSDPA,<sup>36)</sup> CPTPP,<sup>37)</sup> USMCA<sup>38)</sup> 모두 다음과 같이 조항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우선 제1항에서는 국내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서명이라는 점만으로 법적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적절한 전자인증 방법을 결정하고 전자인증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사법 및 행정 당국에 확인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방법의 기준 또는 입증 방안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는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 이용을 장려한다. 한편 EJEPA 제8.77조는 거래당사자가 적절한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관련 법적요건 준수 여부를 사법 및 행정 당국에 확인할 기회를 보장하는 대상에 ‘전자인증’뿐 아니라 ‘전자서명’까지 추가하는데,<sup>39)</sup> 향후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까지 확대하는 문안을 고려한다면 국내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RCEP의 경우 제12.6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KSDPA, CPTPP, USMCA와 거의 유사하나, 제2항에서는 ‘전자인증에 관한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처리하라는 문항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

36) KSDPA 제14.8조.

37) CPTPP 제14.6조.

38) USMCA 제19.6조.

39) EJEPA 8.77조.

한편 EUKCTA 제206조는 제1항에서 ‘국내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EUKCTA는 전자서명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전자봉인(electronic seal)’, ‘전자타임스탬프(electronic time stamp)’, ‘전자등기우편서비스로 교신되는 데이터(data sent and received using an electronic registered delivery services)’의 경우 법적 절차에서 법적 효력 및 증거능력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규정한다.<sup>40)</sup> 또한 제2항에서는 ‘전자인증’뿐 아니라 ‘전자신탁서비스(electronic trust service)’의 사용이 관련 법적 요건에 맞는지를 사법 및 행정 당국에 입증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sup>41)</sup>

#### 다) 결론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관련 조항은 자국의 법제에 따른 전자신탁서비스 등이 언급되는 EU를 제외하고는 KSDPA, CPTPP, USMCA, RCEP 등 디지털통상협정에서 비교적 표준화가 이루어진 조항이다. 다만 각국의 전자인증 제도 구축 시 RCEP 제12.6조 제2항과 같이 ‘전자인증에 관한 국제규범’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3) 전자송장

#### 가) 개요

전자송장(electronic invoice)이란 ‘인터넷, XML,<sup>42)</sup> EDI<sup>43)</sup>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종이 기반 송장절차를 다루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sup>44)</sup> 이는

---

40) EUKCTA 206조.

41) ‘신탁서비스’는 Regulation (EU) No 910/2014 (eIDAS)에 의거하여 정의되는 전자 서명 생성 및 검증, 서명자 및 웹사이트를 인증하기 위하여 디지털 인증서를 제공 및 보존하는 서비스이다.

42) 인터넷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HTML과 같은 마크업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확장성 마크업 언어인데, 이것으로 웹페이지 추가와 작성이 훨씬 편리해졌다.

43)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즉 전자문서교환을 위한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을 뜻한다.

44) APEC(2008), “APEC e-Invoicing Guideline for Future Development,” p. 10,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3. 1. 16).

‘중이 없는 무역’ 원칙의 일환으로 전자송장이 계약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를 높인다. 따라서 전자송장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향상에 협력하고, 국제기준 또는 권고에 따르거나 연동성을 갖춘 전자송장 시스템 채택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이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된다.

#### 나) 분석 및 결론

전자송장 조항은 검토 대상인 8개 협정 중 KSDPA와 DEPA에 포함되어 있다. 양자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KSDPA에서는 전자송장의 중요성 및 상호 운용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전자송장 관련 조치는 국제체계에 기반하도록 한다. 또한 KSDPA는 전자송장 시스템 채택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전자송장 지원정책 및 기반시설 증진, 전자송장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45)</sup> DEPA 제2.5조도 KSDPA와 거의 유사하나, 전자송장 체계간 상호운용성 지원 보장을 노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여 DEPA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 4) 전자지급 서비스

#### 가) 개요

전자지급(electronic payment)은 서비스나 재화 구매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 대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지불 방법을 의미한다. 전자지급에 관한 조항은 검토 대상 총 8개 협정 중 KSDPA 및 DEPA에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협정에서는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수용 가능한 금전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6)</sup>

---

45) KSDPA 제14.10조.

46) KSDPA 제14.1조.

## 나) 분석 및 결론

우선 DEPA는 전자지급 방식의 폭발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채택, 사용, 전자지급 인프라간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장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경 간 전자지급제도 개발에 합의한다고 규정하고,<sup>47)</sup> KSDPA도 이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다음으로 DEPA 및 KSDPA는 각국의 국내법 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자지급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DEPA는 규제승인, 면허요건, 절차 및 기술표준 등 전자지급 규칙 수립 후 적절한 시기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반면, KSDPA는 공개 의무는 있지만 공개시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sup>48)</sup> 둘째, DEPA는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제표준을 고려하는 반면, KSDPA는 DEPA보다 더 나아가서 금융기관 및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전자지급 메시지 관련 ‘국제표준 채택의무’까지 규정한다. 셋째, DEPA 및 KSDPA는 전자지급 생태계상 상호운용성 및 혁신을 위해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의 사용을 촉진하고 금융기관 및 결제서비스 공급자들이 자국의 금융상품, 서비스 및 거래의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3자가 사용가능하도록 장려한다. 넷째, DEPA는 디지털신원을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의 국경 간 인증 및 전자적 고객 신원확인 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KSDPA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섯째, DEPA 및 KSDPA는 전자지급 시스템상 안전, 효율, 신뢰 및 안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가능한 한 전자지급시스템으로 인한 위협에 비례하도록 한다. 여섯째, DEPA는 혁신 및 경쟁강화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규제 및 산업 관련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전자금융결제 상품 및 서비스 도입의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이는 KSDPA와 유사하다. 다만 DEPA에 없고 KSDPA에만 추가된 것은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상 필수서비스 및

---

47) DEPA 제2.7조.

48) KSDPA 제14.11조.

기반시설 접근과 관련된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간 차별금지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은 전자지급 서비스의 주체가 비금융기관까지 확대되는 만큼, 비차별대우 의무를 확대하여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지원하는 중요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 5) 물류

### 가) 개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디지털통상에 필수적 인프라로 평가되는 물류를 포함한 무역원활화 조항이 디지털통상협정에 대거 포함되고 있다.

### 나) 분석 및 결론

검토 대상인 총 8개 협정 중 DEPA 및 KSDPA가 물류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양 협정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들 협정은 비용 절감, 공급망 속도 및 신뢰성 개선을 지원하는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물류 분야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sup>49)</sup> 특히 유통업체의 화두로 떠오르는 라스트마일 배송<sup>50)</sup>이나 국경 간 상품 배송을 위한 옵션인 통합사물함(federated lockers)과 같은 구체적이면서도 실용성 있는 분야를 사례로 제시하는데, 이로 미루어 향후 협상 시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업체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sup>51)</sup>

---

49) DEPA 제2.4조 및 KSDPA 제14.9조.

50) 주문한 물품이 배송지를 떠나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거리 내지 순간을 위한 배송을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이라고 한다.

51) DEPA 제2.4조 및 KSDPA 제14.9조.

## 나. 개방과 전자상거래

### 1)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 가) 개요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원칙은 WTO에서 전자상거래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통적인 디지털무역 쟁점이다. 국제무역 체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차별대우 원칙은<sup>52)</sup> WTO뿐 아니라 FTA에서도 상품·서비스 무역부터 기술장벽이나 위생검역조치, 지식재산권, 심지어는 디지털교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가장 핵심적인 규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디지털제품에 관한 비차별대우 원칙은 디지털제품을 정의하고, 이 제품들에 대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 등 비차별 대우 의무로 구성된다. 이는 2003년 1월 15일에 타결된 미-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장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주로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통상협정에 포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3월에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에서부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조항이 포함되었고,<sup>53)</sup> 한-미 FTA에서는 당사국에 디지털제품의 교역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54)</sup> 한편 중국 또는 EU의 디지털통상협정에는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조항이 부재하고, CPTPP,<sup>55)</sup> USJDTA,<sup>56)</sup> USMCA,<sup>57)</sup> DEPA,<sup>58)</sup> KSDPA<sup>59)</sup>에 포함되어 있다.

---

52) 최원목(2003), p. 1.

53) 한-싱가포르 FTA 제14.4조 제3항.

54) 한-미 FTA 제15.3조.

55) CPTPP 제14.4조.

56) USJDTA 제8조.

57) USMCA 제19.4조.

58) DEPA 제3.3조.

59) KSDPA 제14.6조.



## 나) 분석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조항이 있는 협정 모두 디지털제품을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디지털제품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모든 협정이 ‘정의’를 통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60)</sup> 또한 디지털제품이 상품과 서비스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될지에 관해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동 협정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제품의 정의가 디지털무역의 분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적용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 모두 정부지원 용자, 보증, 보험 등 정부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 CPTPP, DEPA 및 KSDPA는 방송을 배제하는 반면, USMCA는 방송 배제 문구를 포함하지 않아 방송에도 원칙적으로 비차별대우가 적용된다. USJDTA는 방송기업에 대한 외국자본 제한조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방송 분야에 비차별대우 원칙을 적용하지만 해외투자 부분은 제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USMCA를 제외한 CPTPP, USJDTA, DEPA 및 KSDPA 모두 지식재산권과 불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비차별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를 규율하는 방식에서는 각 협정간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CPTPP는 제18장(지식재산권)상 권리의무와 불일치하는 한도에서, USJDTA 및 KSDPA는 양국이 모두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협정과 불일치하는 한도에서, DEPA는 3개국 중 어느 한 국가가 가입한 협정과 불일치하는 한도에서 비차별대우 원칙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DEPA의 경우 당사국 중 한 국가만 가입한 지식재산권 협정이면 이와 불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비차별 대우가 적용되지 않아 비차별대우 배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0) CPTPP, USJDTA, USMCA, DEPA 및 KSDPA.

CPTPP, USJDTA, USMCA, DEPA, KSDPA 모두 “타방 당사국 내 창작, 발행,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 이용이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 내지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소유자가 타방 당사국의 사람인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다른 동종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sup>61)</sup> 협정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CPTPP, USJDTA, USMCA, DEPA는 내국민대우뿐 아니라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KSDPA는 내국민대우만 규정한다. 둘째, CPTPP 및 DEPA의 경우 비차별대우 부여 대상인 디지털제품을 복수(digital products)로 규정하는 반면, USJDTA, USMCA, KSDPA는 단수(a digital product)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USJDTA 및 USMCA의 경우 협정의 법률검토 과정에서 동 문구가 단수로 수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비차별대우 원칙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 다) 결론

디지털 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에서 디지털제품 관련 조항은 더 적극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다만 동 조항이 디지털통상협정에서 향후 분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항 중 하나이므로 디지털 산업의 해외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USJDTA, USMCA, KSDPA와 같이 디지털제품을 단수(a digital product)로 규정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조금, 방송, 지식재산권 등 적용 제외를 원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또한 향후 비차별대우 규정시 원산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미래 MFN 조항과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61) 일례로 CPTPP 제14.4조를 들 수 있다.

## 2) 양방향컴퓨터서비스

### 가) 개요

디지털통상협정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을 직접 규율하는 규범은 아직 부족하다. ‘양방향컴퓨터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규정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직접 관련되는데, 이는 미국 「통신품위법」상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sup>62)</sup> 이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전달되거나 공유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지 콘텐츠 제공자인지 논란이 되어 왔다. 이 경우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조항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면책을 가능하게 하므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영입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뿐 아니라,<sup>63)</sup>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도 동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비록 CPTPP에는 해당 내용이 없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USJDTA 및 USMCA에 동 조항이 마련되었다.

### 나) 분석

USJDTA 및 USMCA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컴퓨터 서버에 전자적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로 정의되는<sup>64)</sup> 양방향컴퓨터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특정 정보나 콘텐츠를 전부 또는 일부 창작하는데 기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정보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제공자를 콘텐츠 제공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65)</sup> 또한 USJDTA 및 USMCA 관련 조항은 (a)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들이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을 두어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자료를 입수

62)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c)(1).

63) 당시 미국이 TiSA 협상에서 제안하였던 문안이 위키리스크를 통해 공개되었고, 동 문안은 미국 통신품위법을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64)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means a system or service that provides or enables electronic access by multiple users to a computer server.”

65) USJDTA 제18조 및 USMCA 제19.17조.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b) 정보콘텐츠 제공자 또는 다른 사람이 유해하다고 간주하는 특정 자료에 대한 접근제한이 가능하도록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들이 기술적 방법을 제공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sup>66)</sup> 한편 USMCA 부록 19-가 제4항 및 USJDTA 각주 14는 당해 조항이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GATS 제14조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양방향컴퓨터서비스 규정이 이들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면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공중도덕’ 보호 차원에서 유해한 콘텐츠의 규제가 필요한 이상, GATS 제14조 일반적 예외규정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당해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 다) 결론

다국적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포함된 동 조항은 향후 미국의 디지털통상협정에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유해콘텐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결국 국내 법제로 규율되는 점을 고려하여 USMCA 및 USJDTA 각주<sup>67)</sup>와 같이 동 조항이 ‘각국의 법규 또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적용되는 법원칙’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향후 동 조항상 콘텐츠의 ‘유해성’에 대한 해석의 논란 방지를 위해 USMCA 부록 19-가 4항 및 USJDTA 각주 14와 같이 일반적 예외 조항상 ‘공중도덕’과 관련되는 점을 마련한 것 역시 적절해 보인다.

---

66) USJDTA 제18조 및 USMCA 제19.17조.

67) USMCA 각주 15 및 USJDTA 각주 15.

### 3)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 가) 개요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문제는 디지털무역 자유화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디지털무역에서 데이터의 이전, 특히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미국은 2015년 TPA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Digit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Cross-Border Data Flows)’이라는 내용을 도입한 바 있다.<sup>68)</sup> 미국은 TPA에 규정된 통상협상 목표들을 자국이 주도한 CPTPP, USJDTA 및 USMCA에 그대로 반영하여 왔다. 다시 말해 미국은 국경 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조치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편 EU는 원칙적으로는 국경 간 정보의 자유이전에 찬성하지만,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보호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입장이다. 즉 EU는 역내의 자유로운 정보 이전은 보장하지만, 상대국이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추지 못한다면 해당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은 금지된다.<sup>69)</sup> 한편 중국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간주하고

---

68) Sec. 102(b) (6) DIGIT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CROSS-BORDER DATA FLOWS. 2015년에 TPA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라는 목적을 두고 그 내용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Sec. 102(b) (6)에서는 총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WTO 및 RTA/FTA에서 규정하는 현행 의무, 규칙, 원칙, 약속 등이 상품 및 서비스 관련 디지털 무역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적용되도록 할 것, 둘째, 통상규범 및 약속에 의거하여 전자적으로 전송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실제적인 형태로 전송된 동종상품보다 덜 의외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가 있으면 미래의 통상을 모두 포용하면서 가장 자유로운 통상 대우를 받도록 할 것, 셋째, 각국이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무역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들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거나 데이터의 현지 저장 또는 처리(processing)를 요구하는 무역 관련 조치들을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넷째, 상기 조항들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정책 목표에 의거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국내규정이 상품 및 서비스 관련 디지털무역 또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러한 국내 규정들은 적어도 무역에서 가장 덜 제한적이어야 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투명해야 하고, 시장개방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다섯째, WTO 차원에서 합의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계속 연장하도록 할 것 등이다.

69) 박영훈(2000), p. 15 참고.

이에 대한 국외 이전을 강력히 제한한다.<sup>70)</sup> 이처럼 각국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두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디지털통상 규범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지금도 동 쟁점을 양자 및 지역적 디지털 규범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경 간 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한-미 FTA는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정보의 이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여 비록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노력 조항을 두고 있다.<sup>71)</sup> 한-미 FTA 체결 이후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무역의 자유화에 핵심 쟁점이 되었고, 이는 CPTPP에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나) 분석 및 결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조항은 크게 자유로운 정보 이전 허용 의무와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예외적 규제조치 보장 의무로 나누어진다. 각 협정의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외조치 규정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CPTPP,<sup>72)</sup> DEPA,<sup>73)</sup> KSDPA와<sup>74)</sup> 같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라고 규정하는 방식, 둘째, USMCA나<sup>75)</sup> USJDTA와<sup>76)</sup> 같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that i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라고 규정하는 방식, 셋째, RCEP과 같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that it consider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라고 규정하는

---

70) 박영훈(2000), p. 16 참고.

71) 한-미 FTA 제15.8조.

72) CPTPP 제14.11조.

73) DEPA 제4.3조.

74) KSDPA 제14.14조.

75) USMCA 제19.11조.

76) USJDTA 제11조.

방식이다. 이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위해 예외가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첫째 방식과는 달리 둘째 방식의 경우 ‘필요성 테스트’를 추가하여 예외 인정이 좀 더 제한적이다. 한편 RCEP이 채택한 셋째 방식도 둘째 방식과 마찬가지로 ‘필요성 테스트’를 부과하지만, 필요성 가부를 판단하는 주체로 당해 규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규제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필요성 가부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된 협정들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이 다수 포함된 RECP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전면적 허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협정의 대부분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예외 인정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 제한수단을 마련할 의도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목표달성을 현저히 방해하는 제한을 가할 수 없다.<sup>77)</sup>

한편 RCEP은 다른 협정에는 없는 “국가의 필수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any measure that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라는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sup>78)</sup> 동 협정은 국가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당해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로 정보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전 규제에 대한 국가간 법적 구제수단을 차단하고 있다.<sup>79)</sup>

미국과 달리 EU는 그간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규정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EJEPa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보 이전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정보의 자

77) 이 중 첫째 요건은 대부분 협정에서 공통되나, 둘째 요건에 대해서는 협정별로 사용하는 단어가 경미하게 차이를 보인다. 우선 CPTPP, KSDPA는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USMCA, USJDTA의 경우는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제한을 가하지 아니할 것(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78) RCEP 제12.15조 제3항.

79) *Ibid.*

유로운 이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당해 협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일종의 빌트인(built-in) 조항에 불과하였다.<sup>80)</sup> EU는 EUKTC A 제201 조에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동조 제1항은 당사국이 디지털경제 내 무역원활화를 위해 국경 간 정보 이전 확보를 약속하며 각국이 이행해야 할 네 가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당사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컴퓨터설비 및 네트워크 시설의 사용을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의 컴퓨터설비 및 네트워크 시설의 사용을 요구하지 말 것, 둘째, 저장 또는 가공을 위해 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지 말 것, 셋째, 타방 당사국 영역 내의 저장 또는 가공을 금지하지 말 것, 넷째, 당사국의 영역 내 컴퓨터설비 또는 네트워크 시설의 사용 혹은 현지화 요건에 따라 국경 간 정보이전을 허용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의무는 컴퓨터설비의 현지 설치를 강요할 경우 결국 국경 간 정보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는 점에서 서로 연계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EUKTC A 제201조는 금지 의무가 한정적(또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방법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경 간 정보 이전의 전면 자유화 측면에서는 EU의 방식보다 CPTPP, DEPA, KSDPA, USMCA, USJDTA 등과 같이 이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 4) 컴퓨터설비의 위치

##### 가) 개요

컴퓨터설비의 현지화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디지털무역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이는 일종의 ‘국내화 요건(localization requirement)’의 문제이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 정보 데이터화와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업무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본국이나

80) EJETA 제8.81조.



제3국에 설치된 서버로 자유롭게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이 다양한 이유로 특정 데이터를 반드시 자국 내 설비에 저장하고 가공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업 진출 국가 영역 밖으로 관련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고, 서버 설치 위치를 제한받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 나) 분석

컴퓨터설비 위치와 관련된 조항은 특정 국가에 위치한 컴퓨터설비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디지털통상협정에서는 ‘컴퓨터설비’를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sup>81)</sup> 다만 EUKTCA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 내에 ‘컴퓨터설비의 위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컴퓨터설비의 정의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CPTPP,<sup>82)</sup> USMCA,<sup>83)</sup> USJDTA,<sup>84)</sup> DEPA,<sup>85)</sup> KSDPA,<sup>86)</sup> RCEP 모두 컴퓨터설비의 위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중 CPTPP, DEPA, KSDPA, RCEP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 각국의 규제권한을 선언한다. CPTPP, DEPA, KSDPA, RCEP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과 마찬가지로 서두에서 통신보안 및 기밀성 보장 요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관한 규제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컴퓨터설비의 위치 강제를 금지한다. CPTPP, KSDPA, RCEP 모두 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만 컴퓨터설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반면 동 조항은 EUKTCA 제 201조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EUKTCA에서는 컴퓨터설비의 위치 요구 조항에서 ‘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이 부가되지 않는다. 셋째, 예외적으로

81) 예컨대 RCEP 제12.1조를 들 수 있다.

82) CPTPP 제14.13조.

83) USMCA 제19.12조.

84) USJDTA 제12조.

85) DEPA 제4.4조.

86) KSDPA 제14.15조.

현지 서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제권한을 확보한다. 동 규정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즉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금지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주목할 것은 USMCA, USJDTA에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고, USJDTA에는 국가의 규제권한에 대한 선언적 규정마저 부재하다는 점이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경우 USMCA, USJDTA도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컴퓨터설비의 설치 강제 금지 조항은 결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강력한 태도를 대변한다. 물론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USMCA 제32장(예외 및 일반규정), USJDTA의 제3조(일반적 예외)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지 서버 설치의 강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규제조치를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의 WTO 분쟁해결 결과 등에 근거할 때, 필요성 테스트 및 예외 조항의 엄격한 두문(chapeau) 요건 준수 등을 통해 예외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례나 해석이 부재한 컴퓨터설비의 설치 조항에 별도로 있는 예외 규정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한편 USMCA 제19.11조 및 RCEP 제12.14조만이 '필요성 테스트'를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RCEP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과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RCEP 제12.14조에는 각주에 공공정책 이행의 '필요성'은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고, 안보 관련 예외적 조치는 분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칫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 전체가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있다. 아울러 RCEP은 각주를 추가하여 컴퓨터설비 위치 조항에 대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의 경우 협정발효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3년 더 당해 의무로부터 배제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EU-UKTCA 제201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에서 이를 함께 다루고 있다. 즉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각국의

영역 내 컴퓨터설비 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각국의 영역 내에 인증된 컴퓨터설비 또는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즉 강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하여 영역 내 컴퓨터설비의 설치나 사용 요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조항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 아울러 EUKTC 제201조 제2항은 검토 및 평가 규정을 두고, 협정 발효 3년 내 당해 조항의 이행을 검토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 다) 결론

컴퓨터설비의 위치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각국의 규제권한의 선언 조항 및 예외확보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있는 USJDTA가 가장 강력한 협정으로 평가되고, 일부 국가에 대한 기한조건부 의무 배제 규정 및 필요성에 대한 자가판단 문구 등을 추가하고 있는 RCEP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EU의 경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하여 컴퓨터설비의 설치 요구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현지 사업 영위 조건’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과 이러한 구조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이나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에 ‘현지 사업 영위 조건부’를 부가하지 않는다면 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으로 디지털무역이 활발해질 수 있다. 반면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 정보가 의도치 않게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5)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의 위치

#### 가) 개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특정 영역 내에 컴퓨터설비의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대표적 디지털 장벽으로 꼽힌다. 최근 금융서

비스 분야의 클라우드 서버 활용 및 핀테크 발전과 더불어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의 위치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

## 나) 분석

USMCA는 제19장(디지털무역)이 아닌 제17장(금융서비스)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컴퓨터설비 설치 관련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동 협정은 금융서비스 ‘컴퓨터설비’를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인허가나 등록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 정보의 가공 및 저장을 위한 컴퓨터 서버”라고 정의한다. 다만 “금융시장 기반시설, 주식 또는 선물, 옵션 및 스와프 같은 파생상품 거래소나 시장,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또는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조직이 소유하는 컴퓨터 서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sup>87)</sup> 제1항에서는 금융규제 기관이 금융서비스 공급자 관련 정보에 대하여 즉시 직접적으로 완전히 접근할 권한이 금융 규제상 긴요하다고 명시한다. 이는 엄격한 통제와 동시에 신속한 정보 확보가 필수적인 금융 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보에 대한 규제당국의 접근권이 중요함을 선언한 규정이다.<sup>88)</sup> 제2항은 금융규제를 위하여 당사국 영역 밖에 설치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컴퓨터설비에 저장된 정보에 금융규제 기관이 즉시, 직접적이고도 완전히 접근 가능한 한, 당해 당사국 영역 내의 사업유지를 조건으로 영역 내에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한다.<sup>89)</sup> 제3항은 위와 같은 금융규제 기관의 접근이 불가할 경우 당사국 영역 또는 제3국 관할권 내에 관련 컴퓨터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되, 이와 같은 요구를 하기 전에 규제당국의 정보 접근권을 해결할 적절한 기회를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sup>90)</sup> 제4항은 당해 의무를 우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인 기록 및 계좌의 비밀성 보호 조치를

---

87) USMCA 제17.1조.

88) USMCA 제17.18조.

89) USMCA 제17.18조.

90) USMCA 제17.18조.

취할 수 있는 각국의 권한을 보장한다.<sup>91)</sup> 또한 USJDTA는 USMCA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USJDTA에서는 USMCA 제17.18조 제4조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컴퓨터설비의 설치금지 의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sup>92)</sup> 이를 종합하면, ‘금융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은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과는 달리, 규제당국의 접근권이 보장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 후, 후자에만 특정 영역 내에 컴퓨터설비의 설치를 강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합목적적인 정책적 이유를 근거로 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사국 영역 내에 컴퓨터설비의 설치 강제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과 차이가 있다.

한편 KSDPA는 USMCA 및 USJDTA와는 규정 방식이 다르다. 우선 금융규제당국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명시한다는 점에서는 KSDPA, USMCA 및 USJDTA가 동일하지만, 접근권이 보장되는 경우 특정 영역 내에 컴퓨터설비의 설치 강제를 금지하는 USMCA 및 USJDTA와는 달리, KSDPA는 이를 노력해야 할 의무 정도로 규정한다. 즉 KSDPA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국경 간 데이터 집계, 저장, 처리 및 전송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한편 사업 수행의 조건으로 영역 내 컴퓨터설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특정 영역 외부의 컴퓨터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즉각적, 직접적, 지속적 및 완전한 접근을 금융 규제당국에 허용하는 정책 관련 경험 공유, 특정 영역 외부에 설치된 컴퓨터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금융 규제당국이 규제 목적상 즉각적, 직접적, 지속적 및 완전한 접근권을 보유하는 한도에서 오히려 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이 특정 영역 외부의 컴퓨터설비 사용을 촉진하는 공동의 이니셔티브 개발 노력을 규정한다.<sup>93)</sup> KSDPA의 규정 방식은 금융 규제당국의 정보 접근권만 적절히 확보된다면 당사국 영역 외의 서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비록 노력 의무라고 하더라도 다소 진보적인 규정으로 평가된다.

91) USMCA 제17.18조.

92) USJDTA 제13조.

93) KSDPA 제14.16조.

DEPA에는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DEPA는 “당해 협정은 제2.7조(전자지급)를 제외하고는 금융서비스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sup>94)</sup> 일반적인 컴퓨터설비 설치 금지 규정을 근거로 금융 컴퓨터설비 설치 금지까지 확대 해석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RCEP에도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금융 건전성이나 규제 목적으로 금융 기관에 데이터 관리, 보관 및 시스템 유지, 당해 국가 영역 내에 기록사본 보관 등의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sup>95)</sup> 따라서 금융서비스 관련 현지 서버 설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들은 당해 영역 내 금융서비스 관련 컴퓨터 서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USMCA의 경우 금융서비스 장에 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이 일어나면 ‘금융서비스 장 내의 특별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되고,<sup>96)</sup> KSDPA의 경우 전자상거래 장에 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이 일어나면 ‘일반적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sup>97)</sup> 그러나 두 가지 협정 모두 분쟁 시 금융 관련 법령 전문가를 중재재판부로 선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 다) 결론

USMCA 제17.18조는 금융 규제당국의 접근권 보장이 가능할 경우 당사국 영역 내의 사업유지를 조건으로 영역 내에 컴퓨터 시설 설치 또는 사용 강요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협정으로 평가된다. 반면 RCEP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금융 건전성이나 규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데이터 관리, 보관 및 시스템 유지, 당해 국가 영역 내 기록사본 보관 등의 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각국은 보다 강력한 금융 규제권

---

94) DEPA 제1.1조.

95) RCEP 제9.3조.

96) USMCA 제17.21조(분쟁해결).

97) 한-싱 FTA 제20장(분쟁해결).

한을 확보할 수 있다.<sup>98)</sup> 이처럼 ‘금융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은 금융의 경우 규제당국의 접근권 확보가 중요하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과는 구별된다. 한편 KSDPA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접근권만 확보된다면 오히려 당해 영역 외부의 컴퓨터설비 사용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층 미래지향적인 규정으로 평가된다.

## 6) 관세

### 가) 개요

전통적인 실물무역이 감소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가 급증하며, 전자적 전송 관련 무관세 모라토리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우선 다자적 차원에서는 1998년 제2차 WTO 각료회의(MC2)에서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는 ‘무관세 모라토리엄’ 선언에 합의한 후 이러한 관행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는 전자적 전송물 또는 디지털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이 보편적인 의무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다수 국가들의 묵시적 합의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양자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디지털통상협정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를 의무 규정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한-미 FTA에서도 이를 당사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sup>99)</sup>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CPTPP에서도 무관세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USMCA나 USJDTA, DEPA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sup>100)</sup>

### 나) 분석

RCEP은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 관행을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무관세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협정보다 수준이 낮아졌다. 특히

---

98) RCEP 제9.3조.

99) 한-미 FTA 제15.3조 제1항.

100) USMCA 제19.3조, 미일디지털협정 제7조, DEPA 제3.2조, 및 AUSDEA 부속서A 제5조 참고.

RCEP은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관행의 연장에 대한 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수정할 권한까지 명시하여 언제든지 관세부과가 가능하다.<sup>101)</sup> 따라서 전자적 전송에 부과하는 관세 문제에서 RCEP은 다른 협정들에 비해 자유화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협정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EUKTC A 제203조, EJEPA 제8.72조는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뿐 전자적 전송의 상호주체인 ‘한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 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즉 당해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간’에 전송되는 전자적 전송과 관련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른 협정과 달리, 전송의 상호주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전송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국가에서 전송되더라도 EU 역내로 들어오는 모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전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무관세의 대상으로 USMCA 제19.3조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의 수출입’을, EUKTC A 제203조, EJEPA 제8.72조는 단순히 ‘전자적 전송’을, CPTPP USJDTA, DEPA, KSDPA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전자적 전송’을 규정하여 차이를 보인다. 셋째, USMCA는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까지 규정하는 반면, 여타 협정들은 관세만 명기하고 있다. 넷째, CPTPP, USMCA, DEPA, KSDPA, RCEP은 당해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이라면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다른 협정은 내국세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다) 결론

RCEP은 무관세 관행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당해 관행을 수정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반면 EU가 체결한 협정과 같이 협정체결 상대국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에서 전송되어도

---

101) RCEP 제12.11조.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를 규정하는 방식이 가장 폭넓게 무관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국의 주권 내에 속한 내국세 부과조치는 명시적인 허용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디지털통상은 정치한 국제규범과 그 이행 사례가 아직 부족한 분야이므로 CPTPP, USMCA, DEPA, KSDPA, RCEP과 같이 별도의 확인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7) 공개된 정부 데이터

### 가) 개요

최근 들어 각국은 개인의 정치 참여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비단 국내 정책뿐 아니라 최근의 디지털 통상협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 나) 분석

정부 데이터 공개 관련 조항은 USMCA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였다. USMCA 및 USJDTA는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과 이용 원활화가 경제적·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경쟁과 혁신에 기여함을 인정한다.<sup>102)</sup>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의 검색, 이용, 재이용 및 배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생성하기 위해 공개된 정부 데이터의 이용 및 접근 확대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규정한다.<sup>103)</sup> 나아가서 KSDPA는 정부 데이터가 익명이 보장되어 신뢰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까지 추가하고 있다.<sup>104)</sup>

---

102) USMCA 제19.18조 및 USJDTA 제20조.

103) USMCA 제19.18조 및 USJDTA 제20조.

104) KSDPA 제14.26조.

한편 DEPA의 공개된 정부 데이터에 대한 국가간 협력 조항은 더욱 상세하다. 특히 기술이전 및 혁신 촉진을 위해 이용 가능한 영역 개발, 공개된 데이터에 기반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장려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sup>105)</sup> 더욱이 공개된 정부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다루면서, 국내법 허용 한도 내에서 누구든지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공개된 데이터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이용, 수정, 공유를 허용하는 온라인 표준 공공 라이선스 형태로 개방형 데이터 라이선싱 모델을 이용 및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규정한다.

EUKTCA에서도 공개된 정부 데이터 조항을 두고 있다. EUKTCA 제210조는 USMCA 및 USJDTA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하게 당해 데이터 재사용을 제한하는 사용 조건을 부가하지 않아야 하고, 재사용 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한편 RCEP은 공개된 정부 데이터 관련 조항을 다루고 있지 않다.

#### 다) 결론

공개된 정부 데이터에 대하여 향후에는 KSDPA 제14.26조를 기본으로 하되,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DEPA와 같이 상세한 국가간 협력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EUKTCA와 같이 공개된 정부 데이터 재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재사용을 제한하는 사용 조건을 부가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8)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

#### 가) 개요

등 조항은 원활한 디지털 통상을 위해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적인 선택권과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

105) DEPA 제9.5조.

## 나) 분석 및 결론

CPTPP, USMCA, DEPA 및 KSDPA는 동일한 내용으로 각국의 정책, 법규에 따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인터넷상 이용이 가능하며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에의 접근 및 이용,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함이 없이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로의 인터넷 연결,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보유하는 네트워크 관리·관행 정보에 소비자가 접근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sup>106)</sup> 다만 당해 협정은 각주에서 특정 콘텐츠를 구독자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 9) 경쟁

### 가) 개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반경쟁 문제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원래 FTA 경쟁 장에서 일반적인 경쟁 이슈를 다루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상거래 장에서는 별도의 경쟁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RCEP에서 경쟁 이슈가 간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 나) 분석

RCEP은 전자상거래 관련 대화를 다루는데, 이와 같은 대화 주제로 디지털에 특화된 반경쟁 관행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하였다.<sup>107)</sup> 이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RCEP의 가입국인 중국 및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들 역시 ‘디지털 통상 관련 반경쟁 행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화의 한 주제로 경쟁이슈가 간접적으로 언급되던 RCEP과는 달리, DEPA 및 KSDPA는 ‘디지털경제에 관련된 경쟁’을 별도의 독자적인 조항으로 두었

---

106) CPTPP 제14.10조, USMCA 제19.10조, DEPA 제6.4조 및 KSDPA 제14.24조.

107) RCEP 제12.16조.

다. 이들 협정은 디지털경제 관련 경쟁법 집행, 정책개발 및 이행경험 공유를 규정하는 한편, 특히 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 및 보호 관련 정책, 경쟁법 집행에 대한 정보교환 및 우수관행 공유, 상호 연수를 통한 협력강화 등을 포함한다.<sup>108)</sup> 또한 개방적, 경쟁적, 효율적인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들은 비록 노력 규정에 불과하지만, 디지털경제에서도 경쟁 촉진을 비롯한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서 동 협정들은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도전과제 해결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정책을 통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대한 협력을 규정한다.

한-싱가포르 FTA 제15장(경쟁) 제15.5조는 경쟁법 사안과 관련된 당사국의 요청이 있다면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KSDPA 제14.27조 제2항은 '적절한 경우'에만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 또한 KSDPA와는 달리 DEPA 제8.4조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시 '협의 및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통보(notification)'를 통해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점, 디지털통상에서 경쟁 관련 상호 협력은 각국의 법령, 규칙 및 주요 이해관계, 적절한 자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전제하는 점에서 경미한 차이를 보인다.

#### 다) 결론

현재의 디지털통상협정상 경쟁 관련 조항은 협력 또는 정보교환 수준이다. 또한 디지털통상협정이 FTA 개정 의정서로 삽입될 경우 기존 경쟁 장상 '기술적 협력' 조항과 중복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등으로 인해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에서 경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각국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에 유리한 내용을 디지털통상협정에 추가하려고 할 수도 있다.

---

108) DEPA 제8.4조 및 KSDPA 제14.27조.

## 다. 신뢰와 전자상거래

### 1) 온라인소비자보호

#### 가) 개요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로 온라인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통상협정이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FTA에서도 온라인소비자보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전자상거래에서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 나) 분석

CPTPP 및 USMCA는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소비자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협정은 ‘사기 또는 기만적 상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이들 행위를 금지하는 소비자보호법을 채택 및 유지할 의무와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들의 국가간 협력을 규정한다.<sup>109)</sup> USJDTA는 CPTPP 및 USMCA에는 없던 ‘사기적이거나 기만적 상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추가하였고, KSDPA는 이러한 정의를 조항 본문에 명시하였다.<sup>110)</sup> 나아가서 KSDPA는 전자상거래 클레임 해결을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유용성을 추가하고 있다.

EJEPA 제8.78조는 소비자보호 관련 국내법 채택사항 등 모든 규정이 ‘의무’가 아닌 중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EUKTCA의 경우 소비자 보호조치 채택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모두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EUKTCA 제208조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관행 금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가 신의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한 상관행을

---

109) CPTPP 제14.7조 및 USMCA 제19.7조.

110) USJDTA 제14조 및 KSDPA 제14.21조.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 중개서비스 공급자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당해 공급자의 신원, 연락처, 관련 거래,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및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가격, 관련 소비자의 권리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비용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되지 않은 경우 구제권리 등을 포함한 소비자권리 위반 시정을 위한 접근권을 부여할 것을 모두 소비자 보호조치로 채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DEPA는 이들을 모두 망라하면서도 온라인소비자보호 규정이 가장 상세하다. DEPA는 소비자 보호조치 및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 및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온라인소비자보호 규정이 있다. 즉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소비자보호 법령은 민사 또는 형사를 불문하고 '일반계약규정' 또는 '과실처벌규정'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sup>111)</sup> DEPA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로 물품의 품질, 가격, 용도 적합성, 수량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원산지에 대한 허위사실 표시 및 거짓주장 행위, 공급할 의도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 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권한 없이 소비자의 금융, 전화 또는 기타 계좌에 청구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sup>112)</sup> 또한 각국은 배송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 공급자가 주장한 품질에 비추어 수용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품질일 것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품질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법규를 채택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sup>113)</sup> 한편 RCEP은 투명성 측면에서 소비자 구제 방안 및 기업의 법적 요건 준수 방안 등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 정보를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다.<sup>114)</sup>

---

111) DEPA 제6.3조.

112) DEPA 제6.3조.

113) DEPA 제6.3조.

114) RCEP 제12.7조.

## 다) 결론

소비자보호 관련 국내법 채택사항 등 모든 규정을 확인 차원에서 규정하는 EJEP가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정인 반면, EUKTCA 및 DEPA는 온라인소비자 보호 법령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의 예시를 보다 상세하게 명시한다. 한편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불만족 시 구제수단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한다. 온라인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현상을 고려할 때,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의 모델법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온라인소비자보호 규정의 도입이 요구될 것이다.

## 2) 개인정보보호

### 가) 개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과거 미국과 EU가 체결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가 2020년 7월에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무효판결을 받음에 따라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에 개인정보가 포함될지 여부는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는 양자 및 지역 디지털무역협정의 전개에 따라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나) 분석

각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여 왔다. 미국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을 강조하는데, 이는 CPTPP를 비롯하여 USMCA나 USJDTA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에 반영되어 왔다. 반면 중국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 수립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 타결된 RCEP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 유지의무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한 CPTPP,<sup>115)</sup> USMCA,<sup>116)</sup> USJDTA<sup>117)</sup>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이 포함된 RCEP,<sup>118)</sup> DEPA,<sup>119)</sup> KSDPA<sup>120)</sup>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법령 채택 및 유지를 의무로 규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는 각국의 국내법 체계하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내 법제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정보의 주체 범위에 대해서 협정별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CPTPP와 RCEP은 ‘전자상거래 사용자’를, USMCA 및 USJDTA는 ‘디지털무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각각 국내법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서 ‘전자상거래’나 ‘디지털무역’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전자상거래’ 장 또는 ‘디지털무역’ 장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사용자’와 ‘디지털무역 사용자’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만 DEPA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용자’ 및 ‘디지털무역 사용자’를 모두 국내 법령으로 보호되는 정보의 주체로 명시하여 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21)</sup>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는 각국의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만큼, 국가마다 보호 수준이 다르다. 디지털통상 규범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법 수립 시 국제기준을 참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DEPA, RCEP, KSDPA와 같이 국내 법제 수립 시 반드시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유형, CPTPP, USMCA와 같이 국제기준을 참고하되 ‘shall’ 대신 ‘should’를 사용하여 법적의무를 낮추려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검토 대상인 총 8개 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용자들의 구제 방안, 기업들의 법적요건 준수 방안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

115) CPTPP 제14.8조.

116) USMCA 제19.8조.

117) USJDTA 제15조.

118) RCEP 제12.8조.

119) DEPA 제4.2조.

120) KSDPA 제14.17조.

121) KSDPA의 경우에는 ‘conduct or engage in electronic transactions’라고 명시하여 ‘electronic commerce’ 대신 ‘electronic transac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USMCA, USJDTA, RCEP, KSDPA와 같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협정, CPTPP, DEPA와 같이 ‘shall’ 대신 ‘should’를 사용하여 법적의무를 낮추려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CPTPP는 다수의 개도국이 참여한 첫 디지털 국제규범의 시험대였던 만큼, 높은 수준의 투명성 대신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반면 DEPA 및 RCEP은 투명성 원칙 확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위와 같은 투명성 원칙은 주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규제절차 등을 대중에게 알리고 공표하는 ‘국가들의 의무’가 주된 내용인 반면, RCEP의 경우에는 기업과 관련된 투명성 원칙까지 규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기업에 직접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각국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정책이나 관련 절차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기업을 독려할 의무(shall encourage)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총 8개 협정 중 CPTPP, USMCA, DEPA, KSDPA는 자국 관할권 내에서 전자상거래 사용자 보호 시 비차별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규정한다. 한편 RCEP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체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 보안을 위한 법체계 호환성 메커니즘 개발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서 DEPA는 기업에 데이터 보호 인증 마크 채택을 장려할 의무를 규정한다. 한편 EUKTCA 제202조는 각국의 법령이 국경 간 이전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 적용 조건하에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국이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상대국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다) 결론

분석대상 8개 협정이 모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포함할 정도로 동 조항이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대부분 협정이 개인정보보호 국내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호

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으로 내용이 통일되고 있다. 참고로 CPTPP, USMCA, USJDTA, DEPA, KSDPA 모두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에 ‘개인정보’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RCEP 및 EUKTC는 당해 조항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서 EUKTC의 경우 제202조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도록 명시한다는 점에서 EU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

### 3) 소스코드

#### 가) 개요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외국 소프트웨어 심사 및 인증 절차에서 소스코드 제출 요구를 강화하면서 소스코드에 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up>122)</sup> 동 조항은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을 자국에 수출, 유통, 판매하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 또는 접근권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소스코드 조항은 디지털통상의 자유화 요소임과 동시에 당해 소프트웨어 보유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sup>123)</sup>

#### 나) 분석

CPTPP에 동 조항이 가장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CPTPP는 어떤 국가도 자국 내 대량 판매용인 소프트웨어 또는 동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 판매, 배포 또는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이나 접근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sup>124)</sup> 다만 필수적 기반시설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122) 김승민(2021), p. 18.

123) 권현호(2022), p. 573.

124) CPTPP 제14.17조.

웨어는 소스코드 규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상업적 협상으로 체결된 계약에 소스코드 관련 약관을 포함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준수를 위해 소스코드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법률에 따른 보호장치라는 조건으로 특허신청, 승인된 특허요건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USMCA, USJDTA, KSDPA 모두 소스코드 공개 여부를 동일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동 협정들은 CPTPP의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조항을 기반으로 하되, 알고리즘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알고리즘 관련 공개요구까지 금지함으로써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sup>125)</sup> 또한 대량 판매용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던 CPTPP와는 달리, 동 협정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모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보호하고 있다.

EJEP와 EUKTC도 소스코드 조항을 두고 있다. EJEP 제8.73조 역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 또는 접근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되, 상업적 협상, 자발적 이전, 정부조달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는 예외로 취급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구제를 위한 법원이나 행정심판, 경쟁당국의 요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법원이나 행정심판, 행정당국의 요청, 정부조달협정 제3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나아가서 경쟁법상 비차별대우, 일반적 예외 규정, 금융건전성조치를 위한 경우도 예외로 한다. EUKTC 제207조도 EJEP 제8.73조와 거의 유사하나, 미인가된 공개를 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사용자 공공안전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당국의 요청을 소스코드 공개 금지의 예외사항으로 추가하였다.

#### 다) 결론

동 조항이 가장 처음 도입된 CPTPP의 보호 대상은 대량 판매용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어 그 범위가 협소했으나, USMCA, USJDTA, KSDPA의 경우 일

---

125) USMCA 제19.16조, USJDTA 제17조 및 KSDPA 제14.19조.

반적인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까지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 다만 예컨대 EUKTCA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 당국의 요청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미인가된 공개에 대한 보호조치로 소스코드 공개요구가 가능한 것 등을 참고하여 보다 치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예외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 4)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 가) 개요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관련 조항에서는 ICT 제품의 제조, 배포, 수입, 판매, 사용 등을 조건으로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핵심기술과 정보의 이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분석

동 조항은 CPTPP 제8장(무역기술장벽)에 포함된 규정으로, 제1부(Section A)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제2부(Section B) 정보기술장비(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TE) 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제3부(Section C) 통신장비에 관한 지역적 협력 등 총 3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sup>126)</sup> 우선 제1부에서는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 사용 시 생산자가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배제하도록 한다.<sup>127)</sup> 제2부에서는 정보기술장비(ITE) 제품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부합하도록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을 채택하고, 이것에 필요한 시험, 등록,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sup>128)</sup> 제3부에서는 통신장비에 관한 지역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통신장비의 적합성 평가 및 기술요건 동등성에 대한 APEC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126) 이주형(2019), p. 163.

127) CPTPP 제8장(무역기술장벽) 부속서 8-나.

128) 이주형(2019).

Arrangement: MRA)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sup>129)</sup>

USMCA는 상기 규정의 위치를 무역기술규정 장에서 제12장(부문별 부속서) '부속서 12-다'로 변경하고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규정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USJDTA 제21조와 동일하다.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국의 법 집행기관, 금융상품 규제, 중앙은행 등 당사국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사용자기구를 포함한 네트워크 접근 관련 요건과, 금융기구 또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기구가 채택한 조치 등이 당사국 정부에 의한, 또는 당사국 정부를 위한 상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사용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는 CPTPP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동 조항은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을 제조, 배포, 수입, 판매,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특정기술, 제조 과정, 기타 정보 공개 등 암호화 기법과 관련된 재산적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품의 제조, 배포, 수입, 판매, 사용 시 당해 영역 내 사람과 동업 또는 협력하도록 하거나,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KSDPA와 DEPA는 위와 같이 당해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특정기술, 제조과정, 기타 정보 공개 등 암호화 기법과 관련된 재산적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제품의 제조, 배포, 수입, 판매, 사용 시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또한 당해 영역 내 사람과 동업이나 협력하는 것을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로 규정하고 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sup>130)</sup> 다만 USMCA 및 USJDTA와는 달리 KSDPA 및 DEPA는 중앙은행 등 당사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용자기구를 포함한 네트워크 접근 관련 요건, 금융기구 또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기구가 채택한 조치에 대해서만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129) 이주형(2019).

130) KSDPA 제14.18조 및 DEPA 제3.4조.

## 라. 공통이슈<sup>131)</sup>

### 1) 투명성

디지털통상협정은 신설되는 각종 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투명성 조항을 두고 있다.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CPTPP, USMCA, USJDTA 및 EU가 주도하는 EJEPa 와 EUKTCA는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한 별도의 투명성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당해 협정 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투명성 장을 이용하여 정보공개 등이 가능하다. 한편 RCEP은 전자상거래 관련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각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조치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한다.<sup>132)</sup>

나아가서 KSDPA는 투명성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좀 더 정교한 조항을 두고 있다. 첫째, 당해 협정 문안, 요약본, 협정 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무료로 웹사이트에 공개한다.<sup>133)</sup> 둘째, 각 당사국은 자국의 웹사이트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웹사이트나 협정의 이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단체의 웹사이트 등의 링크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sup>134)</sup> 또한 통관 규제, 절차나 문의처,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제, 혁신 및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제나 절차, 디지털무역 과 관련된 기술 규제,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이나 식물위생조치, 무역 증진 프로그램, 정부조달 기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동 웹사이트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sup>135)</sup>

131) 라. 공통이슈. 마. 부속서. 바. 기타 항목의 경우 ① 개요 ② 분석 ③ 결론으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다.

132) RCEP 제12.12조.

133) KSDPA 제14.4조.

134) *Ibid.*

135) *Ibid.*

## 2)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USJD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들은 모두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조항을 포함한다.

우선, CPTPP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지원, 개인정보 및 온라인소비자보호, 스팸메일, 전자적 통신의 보안, 인증 및 전자정부 관련 정보교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관련 정보교환 등을 협력 대상으로 규율한다.<sup>136)</sup> CPTPP보다 협력 대상이 확대된 USMCA는 개인정보 보호법 집행과 관련된 현행 국제적 협력 메커니즘 강화 목적으로 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정부 기능 향상을 위한 디지털기술이나 도구 사용, APEC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메커니즘 촉진 및 개발 협력, 디지털무역 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행동강령, 모범계약, 가이드라인 및 이행 메커니즘 등 자율규제 방안 개발 장려,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장애인 접근 향상 및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용자 민원제기 지원 메커니즘 개발 촉진을 협력 대상으로 명시한다.<sup>137)</sup> 이 중 디지털 격차에 따른 소수자 보호 및 국경 간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상당히 효과적인 국제협력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KSDPA 제14.33조는 디지털 정부 및 마이데이터(MyData) 등 다양한 분야를 협력 대상으로 포함한다.

EU가 주도하는 디지털통상협정 역시 협력 메커니즘을 포함하는데, EJEP 제8.80조는 협력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사이버안보, 스팸메일 대응, 전자서명의 인증 관련 인정 등 특히 '규제' 문제에 대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규정한다. 또한 EUKTC 제211조는 '규제이슈에 대한 협력'에 방점을 두고,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인증 및 전자신탁서비스의 인증 및 원활화, 직접적인 마케팅 교신에 대한 대응, 소비자보호, 특히 신기술을 포함한 디지털무역 발전과 관련된 문제

---

136) CPTPP 제14.15조.

137) USMCA 제19.14조.

에 대한 규제이슈의 정보교환을 협력 대상으로 명시한다. 다만 EU는 당해 협력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규칙 및 보호조치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한편 RCEP은 규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사용상 애로사항 지원, 전자상거래 발전 및 사용 관련 문제점 공유,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책임,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등 일반적 협력을 선호한다.<sup>138)</sup>

## 마. 기타 규정

### 1) 원칙 및 목표

USJDTA와 같이 원칙 및 목표규정이 없는 협정도 존재하나,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이 원칙 및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CPTPP 및 USMCA는 전자상거래가 경제적 성장 및 통상기회 증진에 기여하고, 소비자 신뢰를 촉진할 체계가 중요하며, 전자상거래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sup>139)</sup> KSDPA는 경제통합 증진, 디지털 협력을 비롯한 새로운 분야 성장 지원, 디지털경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새롭고 투명한 기준 구축, 경제관계를 심화하는 데 신생기술 활용, 디지털무역에 대한 국제협력 및 국가간 연구 원활화를 원칙과 목표로 내세운다.<sup>140)</sup>

한편 EJEP A 제8.70조는 전자상거래가 경제적 성장 및 통상기회 증진에 기여, 전자상거래 사용 및 발전의 중요성, 전자상거래 사용에 대한 신뢰를 위한 환경 조성, 전자상거래상 기술중립성 원칙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또한 EUKTCA 제196조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논의하고,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개방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무역을 원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다.

---

138) RCEP 제12.4조

139) CPTPP 제14.2조 및 USMCA 제19.2조.

140) KSDTA 제1조.



RCEP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경제적 성장 및 기회,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신뢰 증진체제의 중요성 및 전자상거래 발전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사용 증진, 전자상거래 사용의 신용 및 신뢰 환경 조성, 국가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sup>141)</sup>

## 2) 범위

‘디지털통상’, ‘디지털경제’ 또는 ‘전자상거래’의 정의규정이 없으면 디지털통상협정의 적용범위가 중요하다. CPTPP, USMCA, USJDTA, EJEP, EUKTC 모두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당해 디지털통상협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sup>142)</sup> 반면 RCEP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적용범위로 설정한다.<sup>143)</sup> 전자의 경우 ‘전자적 수단’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가 있으므로 적용범위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지만, 후자인 RCEP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한편 DEPA는 ‘전자적 수단’ 대신 ‘디지털경제’를 삽입하여, ‘디지털경제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라고 범위를 정한다,<sup>144)</sup> KSDPA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주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라고 규정함으로써<sup>145)</sup>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한편 CPTPP, USMCA, KSDPA, RCEP은 정부조달로 보유한 정보나, 당사국 또는 대리인이 보유하고 처리하는 정보 관련 조치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sup>146)</sup> 나아가서 USJDTA와 DEPA는 정부조달, 정부 권한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개방된 정부 데이터를 제외한 정보수집조치 등 당사국또는 대리인이 보유하거나 처리하는 정보 관련 조치를 제외한다.<sup>147)</sup> DEPA는 금융서비스도 적용

---

141) RCEP 제12.2조.

142) CPTPP 제14.2조, USMCA 제19.2조, USJDTA 제2조, EJEP 제8.70조 및 EU-UKTCA 제197조.

143) RCEP 제12.3조.

144) DEPA 제1.1조.

145) KSDPA 제14.2조.

146) CPTPP 제14.2조, USMCA 제19.2조, KSDPA 제14.2조 및 RCEP 제12.3조.

147) USJDTA 제2조 및 DEPA 제1.2조.

범위에서 제외하며, EUKTCA 제197조는 시청각서비스를, EJEPa 제8.70조는 도박서비스, 방송서비스, 시청각서비스, 공증인 및 관련 서비스, 법률대리 서비스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통상협정에서는 서비스무역, 투자 및 금융서비스 규정이 당해 협정에 적용되도록 규정하는데, CPTPP는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에 대하여 서비스무역, 투자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예외 및 비합치조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RCEP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에 대하여 서비스무역, 투자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예외 및 비합치조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sup>148)</sup> KSDPA는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에 대하여 서비스무역, 투자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예외 및 비합치조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sup>149)</sup>

결론적으로 KSDPA가 적용범위를 가장 넓게 해석할 수 있으면서도 해석상 무리가 없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반면 RCEP과 DEPA는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3) 다른 협정과의 관계

과거 FTA의 전자상거래 장에서 종종 규정된 바와 같이 EJEPa 제8.70조 제6항은 ‘당해 조항과 다른 장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다른 장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DEPA는 동 협정과 다른 기존 국제협정과의 병존을 인정하며, WTO 협정 및 기타 다자 및 양자 협정상 권리의무를 명시한다.<sup>150)</sup> 특히

---

148) RCEP 제12.3조.

149) KSDPA 제14.2조.

150) DEPA 제1.2조.

동조는 만약 동 협정과 다른 협정이 불일치할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해결을 위한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 4) 분쟁해결

DEPA는 분쟁해결과 관련된 별도의 모듈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 협정 해석 또는 적용, 협정상 의무위반 등의 경우 당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 분쟁해결절차는 중개, 중재 등의 절차가 가능하고, WTO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가 배제된다.<sup>151)</sup> 다만 당해 분쟁해결절차는 제3.3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제3.4조(암호를 사용하는 전기통신기술제품), 제4.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제4.4조(컴퓨터설비 위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152)</sup> 그 밖의 협정들은 모두 당해 디지털통상 규범이 속한 지역무역협정상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따른다. 다만 RCEP은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USJDTA은 분쟁해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바. 기타

이하에서는 검토 대상 협정 중 일부 협정에만 있는 독특한 조항 위주로 다룬다.

#### 1)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KSDPA는 핀테크 관련 협력을 규정한다. 동 조항은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 개발을 증진하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 기업가정신이나 창업 인재에 대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sup>153)</sup>

---

151) DEPA 제14.7조.

152) DEPA 부속서 14-A.

153) KSDPA 제14.29조.

## 2) 인공지능

디지털통상협정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조항은 윤리적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 간 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KSDPA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주목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들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sup>154)</sup> 이를 위해 국제적 원칙이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AI 거버넌스들 개발 및 채택에 관해 협력하고자 한다. DEPA 역시 AI에 관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설명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및 인간을 중심에 두는 가치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이나 지침을 고려할 것을 명시한다.<sup>155)</sup>

## 3) 정부조달

DEPA의 정부조달 규정은 정부조달 시장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향후 디지털화가 정부조달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협력할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sup>156)</sup>

## 4) 데이터 혁신

KSDPA는 디지털화 및 데이터 사용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므로, 전자적 수단에 의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지원하고 디지털경제상 데이터 중심의 혁신 증진을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사용 등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조성을 역설한다.<sup>157)</sup> 또한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이점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데이터 이동성을 위한 정책 및 표준 개발,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연구관행 및 산업계 관행 공유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한다.<sup>158)</sup>

---

154) KSDPA 제14.28조.

155) DEPA 제8.2조.

156) DEPA 제8.3조.

157) KSDPA 제14.25조.

158) *Ibid.*

DEPA는 국경 간 정보 이전 및 데이터 공유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국내법 보호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 규제 데이터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이 촉진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sup>159)</sup> 또한 개방형 라이선싱 약정과 같은 신뢰 기반 데이터 공유 체계를 통해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사용이 가능해지면 기술, 문화 교류 확산, 기술 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 당사국의 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sup>160)</sup> 각국은 데이터 주도 혁신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및 체계, 데이터 샌드박스 등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개념 입증에 협력한다.<sup>161)</sup>

## 5) 디지털 포용

최근 디지털통상협정에 ‘디지털 포용’ 조항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불평등 해결의 일환인 디지털포용은 디지털환경에서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포용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며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하여 이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디지털경제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이 동참하는 문화적 연결 및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경제적 하위집단의 디지털경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각국은 여성, 농어촌 주민, 사회적, 경제적 하위집단 및 원주민들의 디지털경제 참여 등 디지털 포용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은 디지털 포용에 대한 경험 및 모범관행 공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디지털 장벽 제거, 디지털경제 참여 촉진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경제 참여에 관한 분산된 데이터 수집, 지표 활용 및 통계 분석을 위한 방법론 및 절차 공유 등을 통해 가능하다.

---

159) DEPA 제9.4조.

160) *Ibid.*

161) *Ibid.*

## 6) 국가의 규제 권한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인 총 8개 협정 중 미국이나 EU, 중국 등이 주도하는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EU의 최근 디지털통상협정에 새롭게 포함되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EUKTC A 제198조는 각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 공중건강, 사회보장 서비스, 공공교육, 안전,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공중도덕, 사회 및 소비자보호,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문화다양성의 촉진 및 보호와 같은 합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권한을 보유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비록 선언적 조항이지만, 서문이 아닌 본문에 조항 형식으로 포함되고, 합법적 정책의 예시가 점차 늘어나면서 발전하고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형 표준모델을 수립하고자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CPTPP 타결 이전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은 제외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DEPA, USJDTA, KSDPA, CPTPP, USMCA, EUKTC A, EJEP A, RCEP 등 총 8개 협정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기초가 되는 ‘협상용 통합문서’에서 공통 주제별로 분류된 조항 중 주요 조항을 선정하였다. 분석 조항은 첫째,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 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둘째, 개방과 전자상거래 관련,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책임제한에 대한 양방향컴퓨터서비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정보,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의 위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경쟁, 셋째, 신뢰와 전자상거래 관련,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공통이슈 관련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넷째, 부속서 관련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의 관계, 분쟁해결 등이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않은 DEPA상 일부 조항 및 EU 등이 체결한 디지털통상협정상 조항으로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데이터 혁신, 디지털 포용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서비스, 물류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조항은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어느 정도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둘째,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해서는 개도국부터 디지털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온라인소비자보호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향후 규정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각국의 기본 입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국내 법제 채택의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법체제 상호 호환성 메커니즘 장려 등으로 구성이 비교적 통일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금융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들은 분석대상 협정별로 규범 수준의 격차가 심하다. RCEP은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금융 컴퓨터설비의 위치’, ‘소스코드’ 조항이 없다. EU 또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채택한 적이 없다. 나아가서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규정을 포함하는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최혜국대우까지 포함하는지, 디지털제품을 복수로 규정하는지 등 협정별로 미묘한 이해관계의 격차를 드러낸다. 한편 ‘금융 컴퓨터설비의 위치’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아직 소극적인 편이다.

넷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규정 역시 비록 무관세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더라도 자국의 이해에 따라 규정 방식이 다양하다.

다섯째, DEPA 이후로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쏟아지고 있다. 경쟁, 최근 기술 및 정책 관련 금융기술 협력, 인공지능, 정부조

달 조항, 데이터 혁신 조항, 디지털 포용 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DEPA 모듈 중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디지털경제에 참여하여 이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경제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주민, 여성, 농어촌 주민들 및 사회적, 경제적 하위집단의 접근성 향상 조치 모색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아직까지 대부분 협력 내지 정보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통상협정 규범의 발전과 전개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소위 '경쟁적 자유화' 입장에서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으로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소위 '데이터 주권'을 표방하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소극적인 편이다. EU 역시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관철하면서도 최근의 디지털통상협정에서는 동 내용을 규범화하는 등 국경 간 정보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통상협정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향후에도 다양한 쟁점에 따라 국가별로 대립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4장



#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평가와 방향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 1. 한국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문 평가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협정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다수의 FTA 전자상거래 협상을 바탕으로 하는 다자 및 양자(또는 복수국간) 무역협정 형식의 틀에서 추진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시장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협상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1. 한국이 체결한 FTA와 디지털무역협정 현황(2022년 12월)

구분	한국 기체결 FTA	디지털통상 규범
발효	한-칠레	-
	한-싱가포르	제14장 전자상거래
	한-EFTA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EU	제7장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한-페루	제14장 전자상거래
	한-미	제15장 전자상거래
	한-튀르키예	서비스무역협정 제2장 전자상거래
	한-호주	제15장 전자상거래
	한-캐나다	제13장 전자상거래
	한-중	제13장 전자상거래
	한-뉴질랜드	-
	한-베트남	제10장 전자상거래
	한-콜롬비아	제12장 전자상거래
	한-중미	제14장 전자상거래
	한-영	제7장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RCEP	제12장 전자상거래
서명·타결	한-인도네시아	-
	한-이스라엘	제13장 전자상거래
	한-캄보디아	-
	한-필리핀	-
	한-싱가포르 DPA	디지털동반자협정

자료: 광동철(2022), [표 10] 재인용.

2000년대 초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양자 무역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였고, 2022년 12월 현재 18개 협정을 발효하고 5개 협정을 타결 및 서명하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표 4-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협정이 전자상거래 장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전자상거래 장은 주로 단독 장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유럽연합(EU), 튀르키예, 영국 등 유럽 국가와의 FTA는 전자상거래 조항이 서비스무역 조항과 함께 하나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 보고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FTA는 모두 독자적인 전자상거래 장으로 구성된 데 반해 EU FTA는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와의 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에서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조항이 하나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분을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상품 및 서비스무역 규범과 구분하여 디지털통상 규범을 강화하는 협상 방식은 기본적으로 미국 전략의 배경이 된다. 반면 디지털무역을 가능하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비스무역으로 파악하고 서비스무역 개방과 규범을 바탕으로 규율하려는 방식은 EU 전략에 따른 것이다.<sup>1)</sup> 한편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중에는 전자상거래 장을 포함하지 않는 협정도 있으며,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인도, 뉴질랜드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추진한 순서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초창기 FTA이거나 상대국이 동남아, 인도 등 개도국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CP)TPP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기점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은 확연하게 확장되고 강화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DEPA나 호주-싱가포르 DEA 등 디지털경제협정이 발효되면서 지역

---

1) Kwak and Kim(2020), pp. 14-22.

무역 체제에서 디지털통상 규범을 위주로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영국, 중국, 대만이 DEPA 가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영국-싱가포르 DEA, KSDPA와 같이 양자 디지털통상협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미 앞서 체결된 FTA 내 디지털통상 규범을 개선 및 보완하고, FTA 상대국에 따라 최신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KSDPA를 체결하였고 DEPA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영 FTA 개정 협상을 통해 기존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을 표명하였다. 2022년 12월에 서명한 KSDPA는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AUSDEA)과 유사한 체계이고 디지털무역 관련 표준 조항을 보완한 협정이다. 이제 디지털통상 규범의 국제적 논의에 발맞추고 향후 협상에서 최신 규범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이슈와 규범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주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2]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선 규범 유형에 따라 전자상거래 조항을 구분하면 제한사항이 없는 의무 조항, 제한사항이나 조건이 포함된 의무 조항, 협력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의무 조항을 살펴보면 관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그리고 여러 협정의 개인 정보보호 조항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의 조항들은 협력 조항이며, 전자서명/인증, 종이 없는 무역과 같이 전자상거래 및 무역원활화 조항이 이에 해당하고, 일부 협정에는 온라인소비자보호 조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 및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전환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의제로, 최근 협정에서도 점차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무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FTA 당사국과 전자상거래 제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조항을 이슈별로 살펴보면, (1) WTO 무관세 원칙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조항 (2) 비즈니스와 무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원활히

하는 조항 (3) 디지털경제에 대한 신뢰와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4)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와 관련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전자상거래 장은 주로 당사국과 무관세를 유지하고 디지털무역과 비즈니스 전환을 지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온라인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이슈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싱가포르, 미국, 중미 5개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협정 그리고 가장 최근에 체결된 이스라엘과의 협정에만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또한 RCEP은 2022년 2월에 발효된 최신 무역협정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한 복수국간 협정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 협정은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시지 규제 관련 조항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사이버보안 협력 조항 등 데이터 규범을 포함한다. 기존에 체결된 FTA 규범과 비교할 때, 글로벌 논의의 핵심인 데이터 이전과 보호 이슈를 중국, ASEAN과 다루고 당해 규범을 채택한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논의의 핵심인 데이터 이전과 보호 문제를 중국, 일본, ASEAN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서 KSDPA는 이슈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고 당해 조항 대부분이 의무로 되어 있다. KSDPA는 기존에 체결된 한-싱 FTA의 전자상거래 장을 개정하고 대체하는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무역협정이라는 의의가 있다. KSDPA의 체결은 우리나라가 협상하고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외연을 확대하고 규범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표 4-2]에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조항과 KSDPA 일부 조항을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KSDPA는 기존 FTA 조항을 모두 의무 조항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규범을 보완했으며,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ICT 제품 조항을 처음으로 포함해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 관련 규범을 크게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더욱이 DEPA, AUSDEA 또는 UKSDEA 등 최근 디지털경제협정의 핵심이 데 이터 이슈라는 점을 고려하면, KSDPA가 이러한 최신 논의를 반영한다는 점에 서도 괄목할 만하다. 우리나라가 KSDPA 체결을 통해 디지털통상 규범을 깊이 있게 다루고 수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므로 이를 발판으로 다음 파트너와 충분히 디지털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은 전통적인 무역협정 형식이 기초가 되었다. 즉 WTO 체제에서의 다자무역 협정과 FTA/RTA와 같은 양자 또 는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이 디지털통상협정의 주된 형식이 되어 왔다. 이러한 협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WTO 무관세 원칙을 FTA 당사국들과 서로 적용하 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협력을 강화해 왔

표 4-2. 한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통상 규범 현황

WTO 전자상거래 통합문서상 구분	표제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국	영국	이스라엘	RCEP	KSDPA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국내 전자거래 체계	-	-	-	-	-	◎	-	-	△	-	-	-	-	◎	◎
	전자서명/전자인증	-	△	△	◎	◎	△	-	◎	△	△	-	△	◎	◎	◎
	종이 없는 무역	-	△	△	△	△	△	△	△	△	△	△	△	△	△	◎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	-	-	◎	-	-	-	-	-	-	◎	-	◎	-	◎
	전자적 전송 무관세	◎	◎	◎	◎	◎	◎	◎	◎	◎	◎	◎	◎	◎	○	◎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	-	-	△	-	-	△	-	-	-	-	-	-	○	○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	-	-	-	-	-	-	-	-	-	-	-	-	○	○
Section C 소비자 보호와 신뢰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자유화	-	-	-	△	-	-	-	-	-	-	-	-	-	-	△
	온라인소비자보호	-	△	△	△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	-	△	◎	-	△	◎	◎	◎	△	◎	△	△	◎	◎	◎
	스팸메시지 규제	-	△	-	-	△	△	-	-	-	△	△	△	△	◎	◎
Section D 공통 이슈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	-	-	-	-	-	-	-	-	-	-	-	-	-	○
	사이버보안 협력	-	-	-	-	-	-	-	-	-	-	-	-	-	△	△
	협력 및 투명성	-	-	△	-	△	-	△	△	△	△	△	△	△	△	△

주: 1) ◎는 예외 없는 의무 조항, ○는 예외·조건이 있는 의무 조항, △는 협력 조항을 표시함.

2) 이 표는 기체결 FTA 조항과 RCEP, KSDPA 일부 당해 조항을 비교하여 나타냄.

자료: 광동철(2022)의 표 11 및 표 12를 보완함.

다. 비록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조항 대부분이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관세, 소비자, 개인정보 등 기본 쟁점들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기제를 마련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글로벌 규범 동향을 고려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추진한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보완하거나 최신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KSDPA를 계기로 한국의 협상력이 일정 수준 강화되었다고 평가되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향후 디지털통상협정의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디지털통상협정의 모델을 형성할 때 형식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 2. 한국형 표준모델의 방향

### 가. 기존 무역협정을 최신화하는 형식

#### 1) 논의 동향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은 디지털통상과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무역협정 형식으로 채택되었고, 이러한 무역협정에서는 FTA, EPA 등 다양한 표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공통적으로 상품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서비스무역 개방과 시장접근, 투자 활성화와 보호 등 전통적인 무역의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FTA나 EPA 내에 ‘전자상거래 장’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WTO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WTO 규범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WTO plus’ 규범을 채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노동이나 환경, 전자상거래 등 WTO 규범이나 협정이 아직 없는 사안을 다루는 경향이 있고,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규범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협정 형식은 참여국 규모에 따라 양자협정과 복수국간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와 ‘복수국’을 구분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없으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고려하면, 2개국이 참여하는 양자협정과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복수국간 협정에서는 제3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인지가 중요한 형식적 요소가 된다. FTA나 EPA는 주로 양자협정이고 제3국 참여를 허용하지 않지만, CPTPP나 RCEP은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해당한다. 즉 절차적으로 가입이 허용되고 실제로도 한국, 영국, 중국,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CPTPP 가입을 고려한 바 있다.

## 2) 한국형 형식 관련 시사점

첫째,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주로 양자 FTA 형식으로 디지털통상 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므로 한-싱 DPA처럼 기존에 체결된 양자 FTA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체하고 개정하는 디지털통상협정을 향후 하나의 형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USMCA, USJDTA, DEPA, AUSDEA와 같은 최신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 FTA(일본은 RCEP) 파트너인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와 FTA 전자상거래 규범의 최신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싱가포르 DEA 당사국인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당시 한-영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영 FTA를 발효하였고, 현재 이 협정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영 FTA 개선 협상이 추진된다면 결과적으로 FTA 협정문 전반을 개정하는 형식이 될지, 특정 규범을 개선하고 ‘한미 FTA 개정의정서’처럼 첨부하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해 ‘한-싱 DPA’처럼 FTA 규범을 대체하고 개정하는 별도의 협정 형식이 될지는 향후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sup>2)</sup>

둘째, 우리나라는 EPA 형식의 협정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2. 2. 8),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 선언 및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검색일: 2023. 1. 30).



CEPA)을 발효하였고, 인도네시아와는 CEPA를 체결하였다. 또한 에콰도르와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SECA)을, 우즈베키스탄과는 지속가능무역및경제동반자협정(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STEP)을 협상하고 있다. EPA 협상이 개도국과의 상품무역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투자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형식으로 디지털통상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인도나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CEPA는 전자상거래 규범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하는 최근 현실을 반영하고, 포용적 디지털경제 발전과 디지털격차 해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관점에서 향후 EPA 내에서 디지털통상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 사항을 검토하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참여한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은 현재까지 RCEP이 유일하다. RCEP은 전통적 의제와 신통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해관계가 다양한 복수 국가가 참여한 협상이었으므로 체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RCEP 협상은 TPP 협상과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고 참여국도 대부분 겹치지만, CPTPP와 비교할 때 디지털통상 규범 수준은 낮은 편이다. 또한 RCEP 전자상거래 규범을 개정·보완하는 협상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RCEP이 개방형 협정이므로 제3국 가입이 가능하고 신규 개도국이 가입하는 점 때문에 제도적 플랫폼이 확대될 여지는 있다.

## 나.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

### 1) 논의 동향

WTO 체제에서는 신통상 의제와 규범을 논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역무역 체제에서 복수국간 협정이 추진된 사례가 주목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주도형 복수국간 협정인 TPP이다.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협정이고 전통적인 통상문제와 신통상 의제를 모두 다룬다. 그러나 TPP 체결 이후 미국이 탈퇴하였고, CPTPP 발효 이후 우리나라, 영국, 중국, 대만이 가입을 검토 내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만일 개방형으로 설계된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가 계속 증가한다면, CPTPP는 국제통상 체제의 핵심 블록을 형성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통상 관점에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확산시키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CPTPP의 신규 가입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기본적인 부문의 무역 개방과 시장접근 협상을 해야 하고, 디지털통상 규범만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CPTPP는 당사국 합의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범을 개선·보완하는 후속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CPTPP 규범이 이미 높은 수준이므로 최신회를 논의할 여지가 당분간은 없으리라고 본다. 게다가 IPEF 협상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반부패 등 새로운 통상 의제가 논의되고 있어 CPTPP를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는 데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둘째,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DEPA이다. DEPA는 최초의 디지털경제협정이고 단독협정이어서 기존 FTA와 연계되거나 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통상 규범을 논의하면서 전통적인 무역 의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없다. DEPA의 최초 당사국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3개국이지만, DEPA는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제3국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는 국가는 원하는 모듈을 선택해서 협상할 수 있다. DEPA는 조항이 모듈화되어 신축적이고 개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중국, 캐나다, 우리나라가 DEPA 가입을 추진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DEPA와 같은 형식은 디지털경제에 관한 포괄적인 협상이므로 디지털통상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통상 이외의 무역 이슈를 논의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무역협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DEPA와 같은 형식의 협정들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협정을 이행할 수 있고

당사국간 협력할 수 있는, 즉 준비된 국가만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의 역량과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

셋째, IPEF와 같은 형식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논의할 수 있다. 비록 이 형식이 무역협정이나 디지털경제협정은 아니지만, 디지털무역 이슈를 포괄하고 다양한 신통상 의제가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고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에 해당한다. 다만 IPEF는 표제에서 인도-태평양이라고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유럽 등 다른 지역의 국가들이 동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IPEF는 필러 1(pillar 1) 무역의제에 디지털통상 협상이 포함되며, USMCA, USJDTA 등 기존 협정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디지털통상 규범을 채택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가 참여하므로 폭넓은 의제가 새롭게 다뤄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CPTPP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ASEAN 국가들, 즉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피지가 참여하므로 어느 정도 수준의 규범이 채택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2) 한국형 형식 관련 시사점

먼저 우리나라는 기존 복수국 무역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협정 당사국들과 한꺼번에 디지털통상 규범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나의 형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설명한 CPTPP 가입이고, 이를 통해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CPTPP 당사국과의 디지털무역 환경을 한꺼번에 강화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CPTPP 가입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무역협정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무역개방과 시장접근 이슈를 다뤄야 하는 부담과 절차적 또는 내용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CPTPP 회원국과 새로운 양자적 무역효과를 검토하고 농업 등 민감한 사안에 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CPTPP 당사국 대부분이 한국의 양자 FTA 당사국인 동

시에 현재 추진되는 IPEF 협상 참여국이므로 IPEF 디지털통상 협상과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 CPTPP 가입이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DEPA 형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앞서 CPTPP 가입 효과를 논의한 것처럼 여러 당사국과의 디지털무역 환경을 한꺼번에 강화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CPTPP 틀에서처럼 포괄적인 무역 협상을 동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방식에 해당한다. 동 협정에 가입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동 협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기대이익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DEPA 규범을 수용할 정도로 국내 제도가 준비되고 동 협정을 활용할 전략이 마련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가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IPEF 형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형식의 경우 신통상 의제가 대거 포함되고 국제무역 체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의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나 가치와 연계된 디지털통상 규범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무역 규범에 포함되었던 조항이 상품과 서비스로 이분화되는 기존 틀을 벗어나 디지털통상 또는 IPEF라는 새로운 틀에서 다시 조명되고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과 협상 추진 전략이 IPEF의 새로운 의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 다. 전략적 디지털동반자협정 형식

### 1) 논의 동향

앞서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전통적인 무역협정 형식과 신개념의 디지털경제 협정의 형식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형식 이외에 미국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이나 EU의 연합협정 형식과 같은 무역·투자 이슈를 논의하고 기본적인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기본협정이 있다. 또한 EU의 디지털파트너십 전략과 같은 형식을 주목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TIFA는 무역, 투자, 개발협력 의제를 포괄한다. 그리고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TIFA를 주로 체결하였다. 동 협정은 양측이 당면한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할 수 있는 양자 TIFA 이사회를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 후속 협정, 의정서 등을 채택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식 기본협정에 대응되는 형식으로 EU의 연합협정이나 선진기본협정이 있다. EU는 상대국과 먼저 기본적인 정치적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무역 및 투자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칠레와의 기존 연합협정을 정치협력 필러와 무역투자 필러로 이루어지는 선진기본협정으로 강화하는 협상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미국이 IPEF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한다면, EU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국가별 전략적동반자협정(SPA)을 체결하거나 디지털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EU와 일본, EU와 한국, EU와 싱가포르 사이에 추진된 디지털 파트너십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 2) 한국형 형식 관련 시사점

우리나라의 디지털통상 협상은 주로 무역협정 내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IPEF에 참여하고 있고 EU와는 디지털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통상협정을 활용하고 있다. 즉 민감한 무역개방과 시장접근을 다루고 규범 쟁점이 많은 무역협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TIFA와 유사한 형식으로 기본적인 무역투자 관계를 설정하고 공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제와 현안을 논의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TIFA와 같은 형식은 필요에 따라 부속 협정이나 의정서를 채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속 협정이나 의정서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통상의 기본원칙이나 모범규약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EU 협정의 경우에도 후속적으로 부속 협정이나 의정서를 채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를 정하고, EU의 디지털파트너십과 같은 형식을 추진할 수도 있다. EU의 디지털파트너십은 국제적·양자적 협력을 강화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EU-일본 파트너십의 경우 무역협정인 EPA 공동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와 함께 G7, G20,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할 의제를 언급한다. 또한 EU-일본 파트너십에는 최신 디지털통상 의제, 반도체, 공급망, 산업, 기술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형식은 기존 무역규범의 틀에서 벗어나 폭넓은 의제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고 시의적절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U와 한국의 디지털파트너십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른 '전략적' 동반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3.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모델의 설정

#### 가. 전통적 기준과 모델 구분

##### 1) 전통적 기준 검토

1980년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동시에 국제투자의 급증 및 서비스 무역 증대 등이 일어나 국제무역 체제가 혼란스러워지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공통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5년에 WTO라는 다자무역 체제가 등장하였다. WTO는 법인격 및 분쟁해결절차가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는 과거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와는 달리 국제적 법인격이 있는 국제기구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WTO 협정은 농업, 섬유에서부터 금융, 전기통신, 정부조달, 산업 표준 및 안전기준, 식품위생기준, 지식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기본원칙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는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으로 대변되는 차별 없는 무역

환경 조성, 관세철폐, 수입쿼터 등 각종 수입제한조치 제거를 통한 무역자유화, 투명성을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공정경쟁 촉진 등이 포함된다.<sup>3)</sup>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WTO는 상품무역 부분에서 시장접근의 강화를 위한 수량제한 금지, 관세양허 및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규범을 제공한다. 또한 WTO는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감축하고, 국제무역 관계의 차별을 제거하며, 공정무역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sup>4)</sup> 이와 같은 WTO의 역할은 비단 상품무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비스무역에 대해서도 비차별주의 및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철폐를 근간으로 자유화를 추진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의 서문(preamble)을 살펴해보더라도 동 협정은 투명성 및 '점진적 자유화' 조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을 확대' 하기 위하여 제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이 명확하다.

한편 DDA 협상의 지연으로 인한 다자적 무역자유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0년대 이후 특정 국가간 배타적 무역 특혜를 상호간에 부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의 목적은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더욱 확대'하는 데 있다. 따라서 WTO 시스템에서 지역무역협정으로 인정되려면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sup>5)</sup>에 따라 역내의 관세 또는 다른 무역장벽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부분에서 완화 혹은 제거되어야 하며, 역외 국가에서는 당해 지역무역협정 전과 비교하여 교역이 더 제한되면 안 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지역무역협정이 WTO 다자 체제에서 '무역자유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WTO 및 지역무역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제통상 규범 체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기존의 규범보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무역규범을 채택하는 것은 '무

3) WTO,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3. 1. 17).

4) 한국국제경제법학회(2022), p. 29.

5) 디지털통상 규범과 더욱 밀접한 GATS 제5조를 살펴보면,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가 있고, 기존 차별조치를 폐지하고, 신규 또는 더욱 차별적인 조치는 금지하며, 당해 지역무역협정 타결로 인하여 그전과 비교할 때 제3국에 서비스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이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역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일이다. '무역자유화'가 양허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의 철폐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통상협정에서 보다 수준 높은 규범은 '무역자유화'라는 기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의 확대'라는 전통적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 모델을 고안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전통적 기준에 따른 모델 구성의 경우, 기존 디지털통상협정 대부분이 '조약'을 기초로 다양한 유형과 형식으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형식적 측면'의 모델 구분은 제외하고 '내용적 측면'의 모델 구분만을 검토한다.

## 2) 모델 구분

디지털통상 규범이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에서 필수 조항이 되기 시작한 이래로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캐나다 등과 같은 다수의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장을 두었다. 가장 초기 형태의 전자상거래 규정에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를 비롯하여 '전자적 전송에 관한 불필요한 장벽 제거'를 위한 조항을 넣었고, 향후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이 발전을 거듭하며 '디지털제품에 관한 비차별 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온라인소비자 보호', '종이 없는 무역', '투명성', '협력' 규정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CPTPP의 등장 전까지 지속된다.<sup>6)</sup>

디지털통상 규범의 경우 CPTPP의 체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만큼 CPTPP를 계기로 극명하게 달라졌고, CPTPP로 성취된 높은 수준의 규범들은 CPTPP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관련 규범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체결한 FTA에 한두 개의 조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높은 수준의 조항이 CPTPP에 대거 추가되었다. 이에 CPTPP가 타결된 2015년<sup>7)</sup> 이전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은 향후 한국형 표준모델을 설정하는 데 큰 의미

6) CPTPP의 전 단계의 규정어기는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 특이하게 국경 간 정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7) CPTPP의 전신인 TPP는 2015년 10월 5일에 타결되었고,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다.



가 없는바,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표준모델의 시발점을 CPTPP로 삼고자 한다.

결국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기준에서 CPTPP 수준의 모델을 가장 기본적인 표준 모델로 정한 후, CPTPP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 중 가장 수준이 높은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과 한-싱 DPA plus 수준으로 무역자유화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 가) CPTPP 수준의 모델

CPTPP 이전에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화 규정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규정은 의무규정이었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디지털 강국들이 체결한 대부분의 디지털통상협정에 있는 대표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조항이었다. 그런데 CPTPP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디지털무역의 자유화’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조항이 대거 도입되었다. 특히 데이터가 상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데이터를 국경 간에 자유롭게 이전하며 가공, 저장, 활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 현지화 금지를 통한 마케팅 등 시장 확대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계에서도 ‘시장접근 및 무역자유화 확대’에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규정을 CPTPP에서 도입한 것은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역시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한 조항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을 자국에 수출, 유통, 판매,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 또는 접근권을 요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디지털통상의 자유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한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ICT 제품’ 규정의 경우 비록 CPTPP의 전자상거래 장이 아닌 기술무역장벽 장에 들어가 있지만, 무역자유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CPTPP는 기존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통상 규범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CPTPP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개도국 가입국들에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나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상당 부분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개도국 대상으로 협상을 할 때 참고할 만하다.<sup>8)</sup>

더욱이 CPTPP에는 칠레, 브루나이, 페루, 멕시코 등 개도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디지털통상 규범에서 CPTPP 수준의 규범을 채택할 때 개도국들의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몽골이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에서 소스코드,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등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채택하였고,<sup>9)</sup>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에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sup>10)</sup>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가하는 것조차 소극적인 인도가 인도-UAE FTA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sup>11)</sup> 따라서 국내 정책을 정비할 유예기간을 허용하거나, 기타 재량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CPTPP 수준의 모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나) CPTPP부터 한-싱 DPA 사이 수준의 모델

CPTPP 이후로 등장한 USMCA 및 미-일 디지털무역협정도 CPTPP에서 포함된 각종 무역자유화 규정을 동일하게 포함하거나, 더욱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조항의 경우 CPTPP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각국의 규제권한 보유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고, 보안 등을 위하여 컴퓨터설비 설치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반면 이후 USMCA, 미-일 DTA 등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삭제되어 각국의 정책 등 조치 권한을 축소시키고 데이터에 대한 ‘보다 확대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뿐만 아니라 CPTPP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컴퓨

8) CPTPP 제14.18조.

9) 일본-몽골 EPA 제9.10조(컴퓨터설비 설치 금지), 제9.11조(소스코드).

10)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제7조(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다만 동 조항은 의무 규정은 아니다.

11) 인도-UAE FTA 제9.11조(국경 간 정보 이전).

터설비 설치 강제금지 규정은 없었으나, USMCA 제17.18조 및 미-일 DTA 제 13조(금융서비스 컴퓨터설비)에서는 금융서비스까지도 데이터 현지화를 방지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협정 중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을 기준으로 삼고 앞으로 상대국의 디지털기술과 관련 정책, 디지털산업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협정의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 CPTPP 이후 KSDPA까지의 주요 조항 비교

		CPTPP	USMCA	미일	DEPA	한싱
디지털 무역 자유화	전자적전송물 무관세화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의무	의무	의무	-	의무
	암호화기술 사용 ICT제품	(의무) <sup>12)</sup>	(의무) <sup>13)</sup>	의무	의무	의무
디지털 상거래 신뢰	온라인소비자보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개인정보보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스팸메시지 규제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사이버 안보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의무	의무	의무	-	의무
	종이 없는 무역	협력	협력	-	의무/협력	의무/협력
	물류	-	-	-	협력	의무
	전자송장	-	-	-	협력	협력
	특송화물	-	-	-	의무	의무
	전자결제	-	-	-	협력	의무/협력
최근추세	금융기술 협력	-	-	-	협력	협력
	인공지능	-	-	-	협력	협력
	정부조달	-	-	-	협력	협력
	경쟁	-	-	-	협력	협력

자료: 저자 작성.

12) CPTPP에서 동 조항은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장이 아닌 기술무역장벽에 관한 장에 포함되어 있다.

13) USMCA에서 동 조항은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장이 아닌 부분별 부속서에 관한 장에 포함되어 있다.

#### 다) 한-싱 DPA plus 수준의 모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에는 경우에 따라 한-싱 DPA plus 수준의 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싱 DPA의 경우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조항은 의무규정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지만, ‘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설비의 위치’ 조항은 미-일 DTA와는 달리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의 형태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금융 분야 관련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및 블록체인 발전으로 금융서비스의 획기적인 디지털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금융건전성을 위한 규제 및 감독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의무 조항’ 형태로 두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둘째,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시장접근’뿐 아니라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규정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를 위해 물류, 전자송장, 특송화물, 전자결제 등 다양한 신규 조항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주로 협력사항을 규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의무 규정으로 두어 ‘디지털 무역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전자결제’ 같은 경우,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국내 규정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다양한 신규 규정 도입이 촉구된다.

그 밖에 예를 들어 사이버안보 규정과 같은 경우에도 향후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추후에는 디지털무역의 자유화를 저해하는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사이버안보 규정은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역량 구축이나 협력 메커니즘 사용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이버안보 관련 협력 메커니즘의 구체적 설치, 국내외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이버안보 사고가 있을 경우 상호 신속하게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사이버안보 관련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마련 등 한-싱 DPA plus 수준의 규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나. ‘신(新)기준’과 모델 구분

### 1) ‘신기준’에 대한 고찰

과거 RTA 형식으로 체결된 디지털통상 규범들은 주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나, 비차별대우 원칙을 포함한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자유무역(free trade)’에 관한 규정들, 각종 협력 조항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디지털통상 규범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한 CPTPP가 등장하면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의 이전’, ‘컴퓨터설비의 위치 강제 금지’ 및 ‘소스 코드’ 조항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동 규정에는 서비스무역, 투자 및 금융 서비스에서 불합치 조치 및 예외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CPTPP의 서비스무역, 투자 및 금융서비스의 유보사항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현지주재’ 등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뜻한다. 이것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위치 강제 금지’ 및 ‘소스 코드’라는 신규 조항이 기업들을 해외 시장에 진출시켜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CPTPP에 획기적으로 포함된 3개 신규 조항 모두 ‘해외시장접근 및 해외진출기업 보호’의 맥락으로 이해된다. 나아가서 일본-스위스 EPA 제75조는 ‘시장접근’이라는 제목의 조항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서비스무역 및 투자상 유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상거래를 과도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14)</sup> 디지털통상 측면에서의 ‘시장접근’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의 디지털통상 규범의 주축이 전통적 기준에 따른 ‘무역자유화’ 및 ‘시장접근’이라는 명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뜻이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시장접근’이

---

14) Article 75 Market Acces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its List of Reserva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57 and 90, whic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ach Party shall not adopt or maintain measures that unduly prohibit or restrict electronic commerce.”

중요한 이슈로 제안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원칙,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현지 컴퓨터 설치를 포함한 데이터 현지화 금지, 개방 네트워크 및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합법적 공공정책 목표, 양허의 자유화 및 시장접근 약속의 개선 등이 바로 ‘시장접근’과 관련된 요소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sup>15)</sup> 이처럼 디지털통상 규범은 ‘디지털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무역장벽 제거와 협력에 집중해 왔다. CPTPP나 USMCA에서부터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디지털통상 규범이 일관되게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와 ‘전자상거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회피의 중요성’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은 이와 같은 의도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통상협정의 목적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즉 ‘무역장벽 제거’에만 집중되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목표와 취지가 다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DEPA 서문에서 ‘무역장벽 제거’라는 목표는 삭제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이나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 혁신과

표 4-4. 목적의 변화 추이

협정	목적(서문 및 목적, 일반조항)
대부분의 FTA상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장	전자상거래가 가져올 경제성장에 주목, 소비자 신뢰를 촉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조성, 무역장벽 제거
아세안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상거래상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자상거래 발전 협력
DEPA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무역장벽 제거, 인프라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디지털협력
호주-싱가포르	디지털협력, 새로운 분야 성장지원, 효과적 규제지원기준 구축
한국-싱가포르	디지털협력, 새로운 분야 성장지원, 효과적 규제지원기준 구축
영국-싱가포르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디지털무역을 관리하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협력, 개방되고 연결된 디지털시장에 의한 경제적 혜택, 디지털 무역장벽 제거, 규제 프레임워크의 상호 운용성 강화

자료: 저자 작성.

15) WTO(2019).

경제,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의 확보를 강조하는 문구가 등장하였다. 이는 디지털통상 규범이 단순히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측면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DEPA 서문에서 디지털기술의 혜택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나 개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한 사실을 통해 디지털통상 규범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변화 양상은 최근 여러 협정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영국-일본 EPA의 경우 목적 조항에서 ‘무역장벽 제거’를 아예 삭제하고 전자상거래의 중요성,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 등만을 다룬다.<sup>16)</sup> 영국-싱가포르 DEA 제8.58조(목적과 범위)의 경우에는 ‘개방적이고도 포용적인 디지털무역을 규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까지도 추가함으로써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한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노르웨이 FTA 디지털무역 장 제4.1조(목적)에 ‘소비자 신뢰 촉진 프레임워크 채택의 중요성’을 추가함으로써, 교역적 요소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기준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신뢰보호 확보’까지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이미 각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도입되었던 규정을 분석하여 ‘비차별대우 원칙’, ‘시장접근’ 등의 전통적 무역 이슈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비교역적(non-trade)’ 이슈들 역시 디지털통상 규범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sup>17)</sup> 이러한 비교역적 요소들은 대부분 기업뿐만 아

---

16) ARTICLE 8.70 Objective and general provision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lectronic commerce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nd increases trade opportunities in many sectors. The Parties als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facilitating the use an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2. The objective of this Section is to contribute to creating an environment of trust and confidence in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and to promote electronic commerce between the Parties.

17) Burri(2017), p. 132. 통 논문은 TPP의 경우 특징적으로 비교역적 이슈들이 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TPP에만 두드러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나라 디지털경제에서의 소비자나 개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다. 즉 최근의 디지털통상 규범은 그 주체를 전통적인 주체인 기업이나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으로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영국-싱가포르 DEA 서문에는 모든 '개인' 및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를 추구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sup>18)</sup> 그간 전통적 국제규범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던 '개인'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와 변화를 종합해 보면, 앞서 살펴본 전통적인 기준인 '무역자유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sup>19)</sup>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를 위해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 표준 모델의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 모델 설정의 '신기준'으로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형식적 측면을 고려한 모델 구분

형식적 측면에서의 모델에 대한 구분은 전통적인 국제공법에 따른 '조약'인지 여부로 이루어진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조약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법적인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창출하지 아니하고 상호 신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정책 수행상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신사협정의 경우에는 조약과는

---

18) Further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all people and businesses of all sizes can participate in,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the digital economy including the fundamental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maintaining dynamism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Resolving to facilitate a trusted and secure digital environment that promotes consumer and business interests: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신사협정의 경우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의 형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 부여를 의미하는지 등 각 당사국의 의도, 권리·의무 관계의 구체성, 내용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조약과 신사협정을 구분하고 있다.<sup>19)</sup>

다음과 같은 각 단계의 형식모델도 신사협정인지, 조약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한 뒤, 전자에 해당하는 1단계 및 2단계 모델, 후자에 해당하는 3단계, 4단계 및 5단계 모델로 각각 구분한다. 나아가서 신사협정에 속하더라도 별도의 형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사협정인지, 아니면 적어도 조항이나 서명, 개정 조항 등을 포함하는 조약의 형태인 신사협정인지에 따라 다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다. 조약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그 의무 및 이행의 강도에 따라 3단계, 4단계 및 5단계로 구분하였다.

#### 가) 1단계 형식모델: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 및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의 사례

1단계 형식모델은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이행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1단계 모델은 그중에서도 특정한 형식이 없는 전형적인 신사협정 형태이고, 대표적인 예로는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이나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이 있다.

먼저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은 총 5개의 부분(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section 1)은 배경, 둘째 부분(section 2)은 인간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사회 개발 파트너십, 셋째 부분(section 3)은 EU 및 일본 간 디지털 파트너십 수립, 넷째 부분(section 4)은 강화된 디지털협력의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공동결과물 성취, 다섯째 부분(section 5)은 성공적인 디지털 파트너십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및 점진적 모니터링이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공급망 안정화, 5G 및 그 이상의 분야, 고성능 컴퓨팅 및 양자기술, 사이버안보, 인공지능, 디지털 연결성, 플랫폼 협력에 대한 공동행동을 위한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다.

---

19) 외교부(2006), p. 14.

2022년 11월에 체결된 EU-한국 디지털 파트너십<sup>20)</sup>은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과 거의 유사한 구조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각각 배경, 디지털사회를 위한 공동된 전망 촉구 파트너십, 강화된 디지털협력의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공동결과물 성취, 디지털 파트너십의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 등으로 구성된다. 협동연구,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 및 양자기술, 사이버안보 및 신뢰, 5G/6G, 디지털 포용 및 이동성, 인공지능,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률 및 시스템, 디지털 신원 및 트러스트 서비스, 디지털통상에 대한 공동행동을 위한 부속서가 추가되어 있다.

형식적인 측면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본다면 ‘EU-일본 디지털파트너십’ 및 ‘EU-한국 디지털파트너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문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국가가 체결 주체이지만 해당 국가를 지칭할 때 조약용어인 ‘Both Parties’ 대신 ‘Both sid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적 구속력을 나타내는 ‘shall’과 같은 용어를 배제한다. 당해 파트너십이 ‘국제법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고 각국의 국내법을 대체하지 아니하며 국제적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라는 점, ‘당해 파트너십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sup>21)</sup> 당해 문서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율을 받는 조약이 아님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보도자료(2022. 11. 28),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 EU와 함께한다」(검색일: 2023. 1. 24).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을 적용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기반으로 양국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1대 협력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의하였다.

21) European Union-Republic of Korea Digital Partnership 38. The Digital Partnership is not legally binding and is not intended to supersede 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obligations by which the sides are bound. It does not have any financial implications on either side. It will be carried ou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side and it will be implemented on the basis of autonomous cooperation. The Digital Partnership is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이와 같은 1단계 형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관계로 무역통상규범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더 확대하기 용이하므로 과학 기술, 교육, 농업 등 광범위한 개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논의나 협력사항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엄격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계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범 합의 자체가 어려운 조약에 비하여 반도체, 양자기술, 5G 등 세부 기술이나 제품에 더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새롭게 진화하는 기술의 속도를 고려할 때,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약보다는 단시일 내에 합의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국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통상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국과 사전에 정식 프레임워크협정을 체결하려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동 형식으로 대신 체결함으로써 장래에 체결될 정식 디지털 통상조약의 초석이 되는 문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보다는 비교적 디지털기술이 발전한 디지털기술 선진국과 세부적 디지털기술 협력을 맺는 방안으로 활용하기가 더욱 용이할 것이다.

#### 나) 2단계 형식모델: 싱가포르-호주 녹색경제협정의 사례

2단계 형식모델 역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조약'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나 정부 간 약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2단계 형식모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는 점은 1단계 형식과 동일하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문건인 1단계 형식과 비교할 때, '도입문(introduction)', 발효조항, 개정 및 종료 조항, 서명 등 훨씬 더 조약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측면에서는 기관간 약정과 유사한 형식으로도 보인다. 비록 디지털에 관한 협정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체결된 싱가포르-호주 녹색경제협정이 2단계 형식모델과 유사하다.

2021년 6월에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였고, 싱가포르-호주 녹색경제협정이 2022년 10월에 체결되었다. 동 협

정은 녹색전환 가속화와 녹색경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양국은 동 협정을 다른 파트너국과의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sup>22)</sup>

동 협정의 형식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동 협정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제목으로 ‘협정(agre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둘째, 체결 주체는 양국 정부이고, 양국을 대표하여 각국의 통상산업부 장관이 서명하였다. 셋째, 전통적인 조약용어로 평가되는 단어인 ‘서문(preamble)’ 대신 ‘introduction’을 사용하고, 조약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 ‘종료’ 조항은 있지만 ‘분쟁해결’ 조항은 없다. 넷째, 동 협정상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용어인 ‘shall’ 대신 ‘will’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동 협정은 각국의 법령으로 이행되고, 동 협정으로 인하여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아니하며, 동 협정으로 인하여 기존 조약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sup>23)</sup>

이와 같은 2단계 형식모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없으

---

22) 동 협정은 1) 무역 및 투자 2) 표준과 적합성 3) 녹색 및 전환금융 4) 탄소시장 5)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기술 6) 녹색성장의 능력 및 역량 7) 참여 및 파트너십(환경상품 및 서비스)을 협력의 우선순위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의 협력으로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해 17개의 이니셔티브를 부속서 A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은 부속서 B에 372개의 환경상품 및 155개의 환경서비스를 열거하는 등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조절하여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접근성을 높이고, 녹색경제 관련 무역원활화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상품 시스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WTO 환경상품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 수준에서 환경상품이 논의된 바 있으나, WTO 환경상품협정은 2016년 이후 협상이 중단되었고, USMCA 등 지역무역협정에서도 환경상품의 중요성 등만 지적할 뿐, 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안하고 있지 않다. 동 협정은 수출업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제로 및 저배출 기술,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 목적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기후목표 추구를 가속화할 무역 및 환경에 대한 수준 높은 접근을 확인할 수 있다.

23) Singapore-Australia Green Economy Agreement

21. The GEA is a framework agreement that serves as a record of Australia's and Singapore's understanding, and will be implemented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laws, policies and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Australia and Singapore. The GEA does not create binding obligations between Australia and Singapore or between Australia or Singapore and any third party.

22. Nothing in the GEA will alter or affect any existing agreements or arrangements between Australia and Singapore. Australia and Singapore may amend their existing agreements or negotiate new agreements to implement initiatives conduc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GEA, where required.

므로 비교적 단시일 내에 합의가 용이하고 내용 측면에서도 더 실험적인 주제를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비록 조약은 아니지만 조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1단계 형식보다는 훨씬 더 공식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개정, 발효, 종료 등 당해 문건을 규율하는 행정적 사항이 비교적 명확하다. 셋째, 기관간 약정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지만 체결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향후 조약 등 더 공고한 파트너십을 위한 전 단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동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싱가포르-호주 녹색경제협정은 이제까지 협의 조차 어려웠던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협력사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부속서를 통해 당해 환경상품 372개 및 환경서비스 155개를 직접 열거하는 등 파격적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모델은 '조약' 형식에는 담기 부담스러운 미래지향적 내용을 끌고 오고, 더 실험적이고도 선진적인 내용을 선구적으로 반영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고취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이다.

#### 다) 3단계 형식모델: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의 사례

3단계 형식모델부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의미하는 조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조약 중에서도 '분쟁해결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조약을 본 연구에서는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한다. 3단계 형식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또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이다.

먼저, 2018년 10월에 미국 행정부는 미국 의회에 일본과의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총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농산물, 공산품,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와 관련된 무역협정 및 디지털 분야에 대한 미-일 DTA를 체결하였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매번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복잡함과 어려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권한 내에서

체결할 수 있는 조약을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이라고 하는데, 미-일 DTA는 이러한 행정협정으로 체결되었다. 그런데 당해 행정협정은 조약 체결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법상 조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일 DTA는 비록 행정협정의 형식이지만 가장 진화한 디지털규범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별도의 서문이나 부속서 없이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미-일 DTA는 미-일 무역협정과 함께 체결되었지만, 형식 측면에서는 디지털무역에 대한 완전한 별개의 조약이고 이러한 형식으로는 세계 최초이다. 미-일 DTA는 내용 면에서는 2018년 11월 30일에 서명된 USMCA 제19장(디지털 무역)과 대동소이하지만, 이 제19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암호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물품’,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현지 컴퓨터설비 설치금지’ 규정, 각종 ‘예외’ 조항 등이 추가되었다.

한편 시청각 실연 보호의 국제기준을 다루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sup>24)</sup>도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2020년 7월에 조약 제2458호로 발효된 동 조약은<sup>25)</sup> 보호 범위가 제한되었던 WPPT 협정을 보충하고, 시청각 실연자 보호를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논의를 거쳐 타결되었다. 동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인격권 및 재산권을 부여하는 한편,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을 실연 고정 이후 최소 50년간 보장되는 것을 주요 규정으로 두고 있다.<sup>26)</sup> 다만 동 조약도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4단계 형식모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므로 강제성이 있으나 ‘분쟁해결’ 조항이 없어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

24) 동 조약은 제2조(정의규정)를 통해 실연자, 시청각 고정물, 방송, 공중전달 등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제5조(인격적 권리), 제6조(생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제7조(복제권), 제8조(배포권), 제9조(대여권), 제10조(이용제공권), 제11조(방송권 및 공중전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 총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동 조약에 대한 가입서는 2020년 4월에 기탁되었고, 우리나라 발효일은 2020년 7월이다. 당해 조약은 입법사항, 중대한 재정 부담 등 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조약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2020년 3월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되었다.

26) 김세창(2020).

디지털통상 규범은 WTO 차원에서 다루기가 어렵고, 디지털통상협정 자체에 분쟁해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관련 선례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디지털통상협정은 일부 개도국에 한하여 분쟁해결절차 이용에 재량을 부여하기도 한다. 나아가서 최근에는 디지털통상 분야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므로 비록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해결절차를 위해 협상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일 DTA와 같이 분쟁해결절차를 갖추지 못한 협정이라도 우선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이 디지털통상협정의 수립에서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3단계 형식모델은 미-일 DTA 등 독자적 형태의 협정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투자규범 간의 연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4단계 및 5단계 형식모델에 있는 법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라) 4단계 형식모델: DEPA와 같은 모듈 방식의 사례

4단계 형식모델 역시 3단계 형식모델과 마찬가지로 조약법 협약상 조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4단계 형식모델은 3단계 및 5단계 형식모델과는 달리 조약의 규정들이 모듈별로 구조화되어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직접 모듈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또 당해 모듈의 구속력을 받도록 재량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DEPA는 모듈 접근법(modular approach)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디지털통상협정에서는 서문, 목적 조항에서부터 비차별대우 원칙, 데이터 이전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발효 조항 등 모든 조항이 하나의 조약에 들어가므로 동 조약에 대한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자국에 대해 조약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유보나 해석선언을 제외하고는 당해 조약을 전체로서 조건 없이 수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DEPA는 당해 협정을 총 16개의 모듈로 구분한 후<sup>27)</sup> 향후 가입국들에

모듈별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각 모듈에는 무역원활화, 디지털제품, 데이터 이슈, 소비자 신뢰, 디지털 신원, 신기술, 중소기업 협력, 디지털 포용 등 매우 폭넓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개별적인 부속품인 조항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듈 방식은 각국이 자국의 정책상 특징과 발전 속도에 따라 그에 맞는 부속조항들이 속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동 협정이 가입국들의 재량에 따라 활용되도록 한다. 따라서 신규 가입국은 선택한 모듈에 대해서만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당해 모듈에 속한 조항만을 준수하면 되므로 멤버십이 더 개방될 여지가 있다.

4단계 형식모델은 사실 매우 파격적이다. 한-아세안 FTA 협상 시 상품 시장 개방의 협상지침(modality)에 대해 합의한 후, 당해 협상지침에 부합하도록 각국의 재량에 따라 품목을 넣었던 협상 방식이다. 그러나 한-중 FTA와 같이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협상지침을 합의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역시 국가들의 협상 재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지침 방식은 최소한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DEPA로 대변되는 4단계 형식모델은 이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재량을 가입국에 부여하는 것이다.

4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첫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정책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국제협정에 가입할 수 있어 국내적인 반발을

---

27) 모듈 1(초기 단계 조항 및 일반적 정의)은 범위,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기밀유지, 일반적 정의 및 정의 조항을, 모듈 2(기업과 무역 원활화)는 정의, 종이 없는 무역, 국내전자상거래 체계, 물류, 전자송장, 특송화물, 전자결제 조항을, 모듈 3(디지털제품의 대우 문제)은 정의, 관세, 디지털제품의 비차별대우, 암호화 기업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조항을, 모듈 4(데이터 이슈)는 정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적 수단 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 위치 조항을, 모듈 5(신뢰제고 환경)는 사이버보안 협력, 온라인 안전 및 보안 조항을, 모듈 6(기업과 소비자 간 신뢰)은 정의, 스팸메일, 온라인소비자보호, 인터넷 접속 및 이용원칙 조항을, 모듈 7은 디지털 신원조항을, 모듈 8(최근 추세 및 기술)은 금융기술협력, 인공지능, 정부조달, 경쟁정책 협력 조항을, 모듈 9(혁신과 디지털경제)는 목적, 공공영역, 데이터 혁신, 개방형 정부 데이터조항을, 모듈 10(중소기업 간 협력)은 일반원칙, 디지털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 및 투자기 회 향상을 위한 협력, 정보 공유,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 조항을, 모듈 11은 디지털 포용조항을, 모듈 12(합 동위원회와 연락 담당자)는 연락담당자, 합동위원회 설립, 위원회 기능, 의사결정, 협력 및 협정 이행 조항 을, 모듈 13(예외)은 일반적 예외, 안보를 위한 예외, 와이탕기(Waitangi) 조약, 건전성 예외와 금융정책· 환율정책상 예외, 과세 예외, 국제수지 세이프가드 조치 조항을, 모듈 14(투명성)는 정의, 공포, 행정절차, 제심 및 불복, 통지 및 정보제공조항을, 모듈 15(분쟁해결)는 목적, 범위, 중재 및 중재 조항을, 모듈 16(중 결조항)은 개정, 가입, 효력발생, 탈퇴, 수탁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속서와 부록을 포함한다.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각국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 수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항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개도국들이 가입하기에 용이하다. 셋째, 매우 많은 국가들이 부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어 디지털규범의 저변 확대를 통한 다자적 규범 형성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동 형식모델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같은 DEPA 가입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지게 되어 '상호주의' 측면에서 충돌이 있을 여지가 있다는 점, 규범의 일관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규범의 파편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마) 5단계 형식모델: 완전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통적 개념의 조약 형식

이제까지 체결된 대부분의 디지털통상협정은 5단계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주도한 CPTPP 및 USMCA, EU가 주도한 EUKTCAs 및 EJEPAs, 중국이 가입한 RCEP,<sup>28)</sup> KSDPA, AUSDEA, UKSDEA 등은 모두 5단계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5단계 형식의 장점으로는 국제법상 조약으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디지털경제를 확실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식 절차를 내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5단계 형식모델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첫째, 조약체결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급격히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을 조약이 따라잡을 수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상, 디지털기술에서 뒤쳐진 개도국은 가입할 동기가 생기지 않고 주로 선진국 사이에서만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디지털통상 규범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셋째, 현재까지의 디지털통상협정상 분쟁해결 조항은 과거 WTO 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상 분쟁해결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들 전통적인 분쟁해결체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8) 다만 RCEP의 경우 분쟁해결절차는 있지만 제12.17조 제3항에 따라 동 절차가 전자상거래에 적용되지 않되, 추후 협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 3) 내용적 측면에 따른 모델 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접근 확대 등 무역자유화를 도모하였던 전통적 기준과는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다양한 '비교역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한국형 표준 디지털통상협정 모델 수립의 '신기준'으로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포용적 경제성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확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디지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의 요소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반영되는지 여부도 디지털통상협정모델 수립의 '신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단계별 내용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5단계 형식모델과 각각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재조합될 수 있다.

#### 가) 1단계 내용모델: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

최근 디지털통상협정의 특징은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 '핀테크'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각국의 국내 규제가 아직 전무하거나 도입을 위해 모색하는 단계이므로 디지털경제 분야는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같은 전통적인 무역 분야와는 달리, 정보의 교환이나 국제협력이 더 중요하다.

더욱이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제8.58조(목적과 범위)에 따르면 '끊김 없는 디지털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상호 운용성'을 목적 중 하나로 추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의 이용 및 무역장벽제거의 중요성'에만 그쳤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목적이 '규제의 상호 운용성' 등 더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와 같은 핵심 조항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항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 내용 모델은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표 4-5. 호주-싱가포르 간 협력 관련 구조도

구조	내용
협정 본문	제33조 일반적 협력 조항
MOU	데이터 혁신
	인공지능
	무역원활화
	전자송장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신원
	핀테크
	스팸메일
공동보고서	표준개발 협력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와 싱가포르 간 협력이다. 양국은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MOU를 함께 체결하였다. 양국은 데이터 혁신, 인공지능, 무역 원활화, 전자송장,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신원, 핀테크, 스팸메일이라는 총 9개의 주제로 각각의 MOU를 체결하고 국경청, 관세청, 국세청, 개인정보위원회 등 각국의 관계 기관이 직접 상대측과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더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디지털기술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각국의 국가적 디지털화 노력을 연계하고, 신기술이 새로운 개발 기회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삼으며, ‘표준 개발에 대한 공동보고서(Australia-Singapore Digital Trade Standards Research Report)’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동 보고서는 인공지능,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스마트 시티, 디지털 신원, 전자 지급, 전자송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개인정보보호, 국경 간 데이터 및 데이터 이동성이라는 분야를 표준 협력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합의된 표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들어 디지털규범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미국 등 강대국의 의도에 따른 수준 높은 디지털규범도 등장하였고, 그럼에도 중국이나 개도국 등이 국가의 규제권한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구속력이 약화된 디지털규범 역시 병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자 하는 1단계 내용모델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력사업을 개시할 수 있고, 실질적 결과물 도출이 더 용이하여 신기술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디지털통상협정으로 기능할 것이다.

표 4-6. 호주-싱가포르 간 표준 협력 우선순위 분야

우선순위	기대효과 및 우선순위 설정 사유	제안 기준 중점
인공지능(AI)	AI는 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확한 수요 예측, 센서 기술을 활용한 예측, 유지보수, 서비스 개인화 등이 가능	(A/IS) P7000 SER ITU-T Y.3172
분산원장 기술(DLT)	공급망 및 무역금융의 변화(초기에는 식품 및 제조 부문에서의 변화, 그 이후에는 전반적 변화)	ISO/TR 23455: 2019 IEEE P2418.1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을 통한 생활용품과 소비, 기후변화 등 모든 면에서 데이터 강화 및 시스템 통합과 노동자의 이동성 개선	ISO/IEC 20005:2013
디지털 신원	거의 모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거래를 중단 시 가능, 일종의 '소프트 인프라'	ISO/IEC 24760-1:2019
전자지급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부문의 무역 개선 등 모든 무역 측면에서의 개선 가능성 QR코드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결제를 지원 가능	ISO 20022
전자 송장	전자송장은 공급자의 회계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어 자동 처리를 위해 수령인에게 전자적으로 전송되므로 시간 및 자본 절감	EN16931 (Pppol BIS Billing 3.0) 포함
IoT	스마트 시티 및 AI에 대한 차별화되면서도 보완적인 기술, 국내 공급망 및 물류 개발의 많은 발전 건인. 국가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역 및 글로벌 무역에 변혁적인 영향 예상	IEC 61850:2019 SER IEEE P2418.1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는 모든 유형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높여 채택과 이용을 촉진, 기업이 운영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ISO/IEC 27018: 2019
국경 간 데이터	무역 성장 및 증진을 통한 디지털경제 구축에 기여하고 중소기업과 거래자에게 이익 제공	ISO/IEC 22624:20
데이터 이동성	데이터 자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접근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기술 접근금지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요구됨	ISO/IEC 38505-1:2017

자료: 저자 작성.

## 나) 2단계 내용모델: 한-싱 DPA 중 핵심 조항의 정교화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도 다자 차원에서의 규범 형성은 지연되었고, 기존 WTO 협정으로는 현재의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CPTPP, USMCA에서부터 한-싱 DPA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통상 규범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규범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이고도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의 조항에 다양한 형태의 예외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동 조항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에 있는 특별 예외규정이다.<sup>29)</sup> 그런데 이러한 특별 예외규정은 소위 ‘일반적 예외’ 조항과 거의 유사한 문구로 되어 있어 동 규정이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인지, 국가의 정책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 규정인지, 동 규정을 ‘일반적 예외’ 조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RCEP은 더 나아가서 소위 ‘필요성 테스트(necessity test)’를 시행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로 당해 규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규제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전적으로 필요성 판단을 맡기게 되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측면에서는 후퇴한 규정이라고 평가된다.<sup>30)</sup> 이렇듯 가장 핵심적이고도 강력한 의무 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더 정치한 해석과 정교한 예외 설정의 시도가 없으므로 당해 조항들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29) 예컨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경우 제14.14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30) 이주형, 서정민, 노재연(2021), p. 109.

그러므로 한국형 표준모델인 2단계 내용모델은 ‘전자적 전송에 의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설비 강제 금지’,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소위 핵심 조항들에 대해 구체화하는 것이다. 구체화를 위해서는 조항 자체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법도 있고, 당해 조항에 대한 이행위원회의 공동해석을 통해 이행의 편의를 돕는 방법도 있다.

다) 3단계 내용모델: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의 추가  
DEPA 및 영국-싱가포르 DEA의 경우 한-싱 DPA와는 달리 ‘디지털 포용’ 조항을 두고 있다. ‘디지털 포용’ 조항은 모든 개인이나 기업의 디지털경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여성, 농어촌주민,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원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31)</sup> 영국-싱가포르 DEA의 ‘디지털 포용’ 조항은 개인, 기업, 다양한 집단의 디지털경제 참여를 위한 장벽 제거를 강조하면서, 디지털경제를 뒷받침하면서도 직접 관계된 ‘노동자’들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위해 국가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듯 ‘디지털 포용’과 같이 ‘가치’ 기반의 개념이 최근 매우 강조되고 있다. IPEF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연결되고 안전할’ 뿐 아니라 ‘포용적인’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구한다는 점이 가장 서두에 나타난다.<sup>32)</sup> 또한 IPEF 필러 1(무역)상 장관급 성명에 따르면 ‘포용적 디지털 통상’을 앞당기고, 또 디지털경제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신기술의 책임성 있는 발전과 사용을 강조한다는 점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제’와 ‘사회적 개념’의 긴밀한 연결성을 드러낸다. 이는 경제통상과 가치, 성장을 엄격하게 구분 하였던 전통적 무역 프레임워크에서 탈피하여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요소들을 사회적인 요소와 함께 연결하여 복지를 추구한다는 최근의 추세를 잘 반영한다.

31) DEPA 제11조(디지털포용),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 제8.61-P(디지털포용).

32) White House(2022b), “Statement 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3. 1. 16).

한-싱 DPA의 경우에도 제14.23조(온라인 안전 및 보안), 제14.24조(전자 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제14.26조(공개된 정부 데이터), 제14.32조(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제14.34조(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이 바로 디지털 포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조항이다. 제14.28조(인공지능)상 윤리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 인정 부분 역시 디지털통상 규범이 '가치' 개념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더 잘 보여 준다.

따라서 3단계 내용모델에서는 더 강화된 '가치' 규범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치'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노동이나 인권, 환경 분야 보다는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나 투명성, 중소기업 참여 등과 같은 '가치'를 전략적으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디지털경제가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소비자보호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협력 조항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격차'로 인해 고통받는 디지털 약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조항 역시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이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확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를 보유한 국가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치 기반 규정은 우리나라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다.

## 제5장



# 한국형 디지털통상협정의 이행과 정책과제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 1. 디지털통상 국제규범과 국내법령

## 가. 디지털통상 규범과 국내법의 연결

조약의 형태로 체결되는 디지털통상 규범을 이행하고자 세계 각국은 자국의 법체계에 맞추어 국내법을 다양하게 제정·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조약에 대해서 연방헌법에 “이 헌법,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합중국 법률 및 합중국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또는 장래에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법 (supreme law of the Land)”이라고 명시하고 있다.<sup>1)</sup> 우리나라도 헌법 제6조 제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sup>2)</sup> 최근 체결되는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이 조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당해 협정의 당사국들은 동 협정의 내용을 자국에서 이행하려면 필요한 국내법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동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디지털통상협정의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조약이 갖는 기본적인 법적 성격을 바탕으로 국내법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일부 협정은 당해 협정 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직접 국내법을 언급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DEPA는 각국의 국내법 체계에 따라 규제승인, 면허요건, 절차 및 기술표준 등 전자지급 규칙 수립 후 적절한 시기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지급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sup>3)</sup> 한편 KSDPA는 금융기관 및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데이터 교환을 위한 전자지급 메시지 관련 ‘국제표준 채택의무’까지 규정한다. 또한 온라인소비자보호에 관해서는 DEPA 내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소비자보호 법령은 민사 또는 형사를 불문하고

1) 미국 헌법 제6조 제2항. 다만 디지털협정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많은 조약들이 행정협정의 형식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국내법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인다.

2) 조약의 국내 이행에서 나타나는 주요 국가의 실행에 대해서는 정인섭(2022), pp. 104~141 참고.

3) DEPA 제2.7조.

‘일반계약규정’ 또는 ‘과실처벌규정’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소비자가 품질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국내법령을 채택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sup>4)</sup> 특히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직접 국내법령을 채택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미국이 주도한 CPTPP,<sup>5)</sup> USMCA,<sup>6)</sup> USJDTA<sup>7)</sup>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이 포함된 RCEP,<sup>8)</sup> DEPA,<sup>9)</sup> KSDPA<sup>10)</sup>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령을 채택하고 유지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가 각국의 국내법 체계하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법제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정보의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협정별로 차이를 보이며,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는 각국의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만큼 국가마다 보호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디지털통상협정에서 직접 국내법령의 채택과 유지를 명시하기도 하고 협정의 대상과 목적상 국내법령을 고려하거나 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구체적 내용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EJEPa 제8.77조는 거래당사자가 적절한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관련 법적 요건 준수 여부를 사법 및 행정당국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수단으로 ‘전자인증’뿐 아니라 ‘전자서명’까지 추가하는데,<sup>11)</sup> 우리나라가 이 조약을 체결한다면 국내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KTCa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거나 미인가된 공개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온라인 사용자 공공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당국이 요청할 때는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의 예외로 간주한다. 이처럼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안전 관련 법

4) DEPA 제6.3조.

5) CPTPP 제14.8조.

6) USMCA 제19.8조.

7) USJDTA 제15조.

8) RCEP 제12.8조.

9) DEPA 제4.2조.

10) KSDPA 제14.17조.

11) EJEPa 8.77조.

률'이 무엇인지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내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 혁신, 양방향컴퓨터, 핀테크 등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은 국내법령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다.

##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과 국내법의 대응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국제조약 체결에 맞추어 다양한 국내법령이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전자상거래 장을 비롯해 최근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된 전례는 드물다. 이는 우리나라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 관련 논의의 발전 상황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디지털통상 규범의 추세를 고려하여 끊임없이 국내법령을 정비해 온 결과이다.

물론 현재의 국내법령만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발전된 디지털경제를 규율하는 데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플랫폼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에 입법 예고되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논란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재개되는 등 디지털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 수립 역시 진통을 겪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중복규제 등을 시정하기 위한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향후 디지털통상 협상을 추진할 국가가 체결한 규범을 분석하여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협상전략뿐만 아니라 협상 후 국내비준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고, 가능하면 이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

과적일 것이다. KSDPA의 경우 현행법 개정사유가 없어 국회의 비준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효되었으나,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협상에서 이미 가입을 신청한 DEPA는 이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협정은 가장 광범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다루고 있고, 가입의사를 표명한 CPTPP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통상 규범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1. 디지털통상 주요 이슈와 규정 및 관련 국내법령

구분	협정 규정	협정 규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향후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법령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전송 관련 법적 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과기정통부고시) 등
	전자송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결제서비스	전자금융거래법 등
	물류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무역원활화 강화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Section B 개발과 전자상거래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
	인터렉티브 컴퓨터 서비스	저작권법, 약관규제법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금지) 및 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
	컴퓨터설비 위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34조(원격진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선관위규칙),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터설비 위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관세법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고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등
	인터넷 개방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원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경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표 5-1. 계속

구분	협정 규정	협정 규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향후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법령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온라인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등
	소스코드	저작권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등
Section D 공통이슈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국제협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협력),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주: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대분류 및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중심으로 국내법령을 기재.  
자료: 저자 작성.

[표 5-1]은 주요 협정 규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향후 연계 지어 더욱 개선해야 할 국내법령 중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 향후 디지털통상 규범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기존 법령 등의 정비뿐 아니라, 새로운 기본법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통상문제

### 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ICT 기술의 진보와 정보화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산업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겪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해석하고 투영하는 주체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유사한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화(digit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거쳐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이와 펜으로 상징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를 2진법이 사용되는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표 5-2. 디지털 전환의 진화 단계

구분	디지털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대상	데이터의 변환	정보 처리과정의 변환	지식 활용의 전환
목표	아날로그 형식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경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새로운 가치 창출

자료: 송영근, 박안선, 심진보(2022).

‘디지털화’라면, ‘디지털화’는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방식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지금까지 없던 영역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sup>12)</sup> 이는 디지털화와 디지털화를 포괄하여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식과 의미를 부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80%가 이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Dell사가 4,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고 답했다.<sup>13)</sup>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8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83%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전환을 촉진했다고 답했다.<sup>14)</sup>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물류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59.5%), 이해도(18.1%)와 대응수준(12.0%)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60.8%), 향후 활용의지도 높은 편이나(54.1%), 현재 이를 적극 이용 중인 기업은 10개사 중 1개사도 채 되지 않아(8.7%)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sup>15)</sup>

12) 송영근, 박안선, 심진보(2022).

13) Dell Technologies(2021).

14) Boston Consulting Group(2020).

15) 조성대, 이준봉(2021).

표 5-3.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사례

영역	주요 사례
생산	제품 생산과정에서 설계, 디자인, R&D에 ICT 기술을 활용 - [스포츠험모] 3D 프린팅 설계기술을 이용해 소비자 맞춤형 신발을 제작 - [가구] 자사 디자인을 타 업체에 제공하고 로열티 획득
판매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판매 - [OA기기] 프린터를 사용량 기준으로 판매하는 방식 도입 - [자동차] 차량 공유 플랫폼 출시
유지보수	수명주기가 긴 상품에 유지보수 서비스 추가 - [엘리베이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해 실시간 점검서비스 제공 - [IT] 콘텐츠, 앱 플랫폼을 통해 생태계 확장 및 수익성 제고
유통	제품 체험공간을 운영하거나 제품 유통서비스로 사업 확장 - [식품] 자사 운영 온라인몰을 통해 새벽 배송서비스 시작 - [가전] 체험공간 운영

자료: 한국무역협회(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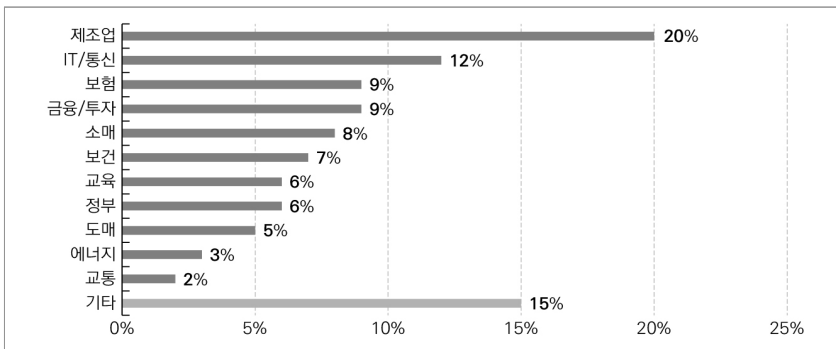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꼽을 수 있다. 전통 제조업은 위와 같은 핵심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의 품질을 개량하거나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과 영역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비용을 낮춰 채산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융합해 상품성을 높이고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다. IoT를 활용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수급예측 및 관리에 적용하는 스마트공장이 확대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제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sup>16)</sup>

우리나라는 다른 제조 강국에 비해 서비스화율이 낮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한층 촉진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글로벌 5대 제조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비율은 27.9%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고, 국내 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와 서비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제조기

16) 강내영 외(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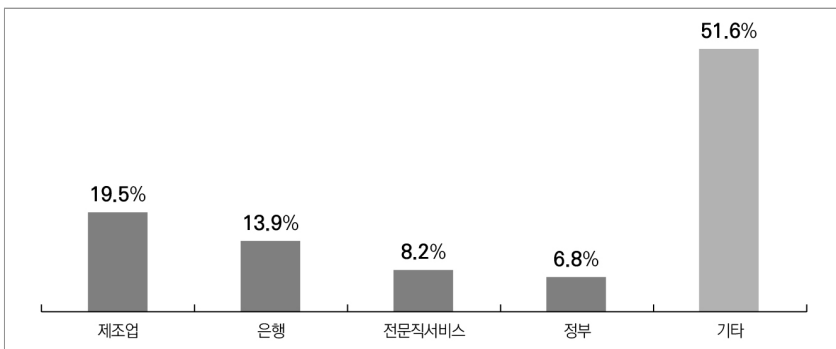
업 중 서비스화가 진행된 기업은 비서비스화 기업에 대비하여 이윤율이 4~5% 높고, 생산성도 높다.<sup>17)</sup> 따라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라기보다 필수전략이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은 디지털 커머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이나 비즈니스 분석서비스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점도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그림 5-1. 디지털커머스 이용 기업의 분야별 비율(2021년)



자료: Statista(2022).

그림 5-2. 빅데이터/비즈니스 분석 매출 비율(2018년)



자료: IDC(2019).

17) 김현수 외(2021).



## 나.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산업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형태와 거래방식이 변화해 왔다. 제조업은 물리적 형태의 자원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형태이기에 디지털 전환의 영향은 크게 받으면서도 최종 생산품의 외형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그 대상이 무형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하면 그 영향이 커서 다른 서비스로 변모하기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도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급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서비스간의 융복합이 일어나면서 고도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은 서비스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sup>18)</sup>

한편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그 효과가 ICT 관련 업종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여 서비스업과는 무관하리라는 견해가 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사람이 제공하므로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산업에 가져올 혁신도 일부 분야에 한정될 수 있는바 디지털 전환 시 이해 충돌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조업과 같이 서비스 산업도 전통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즉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로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와 공급자 매칭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노동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동종 분야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기술을 받아들인 모델과의 갈등, 일자리 소멸에 대한 두려움, 세대 간 격차 등이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고 있다.<sup>19)</sup>

---

18) 박정수(2021), p. 39.

19) 박유리 외(2020).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자층이 확대되고,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전문직 서비스도 플랫폼을 통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서비스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행하는 분야이기에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직들도 홍보와 소비자 확보를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환자가 모바일 앱에서 받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바탕으로 약을 배송 받고, 주변의 의료시설을 찾고 대기현황을 파악해 진료를 예약하며, 의료서비스의 평가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플랫폼이 있다. 또는 지역별 또는 분야별 전문 변호사 정보를 게시하고,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계약서, 고소장 등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며, 판례를 찾아 제공하는 법률플랫폼, 세무 비교견적, 회계 및 세무관리 서비스, 세무 DIY가 가능한 세무플랫폼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sup>20)</sup>

컴퓨터, 통신, 소매, 여행,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서비스도 이미 국경을 초월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된다. 이처럼 고부가가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로 전환하여 다른 분야나 제조업과 융복합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AR/VR 등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언어와 제도의 장벽을 넘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기존의 서비스무역은 비록 디지털적 성격을 띠고 디지털방식으로 제공되더라도 대규모로 자본화되거나 기업형으로만 제공되는 한계가 있었다면, 미래의 서비스는 현재 소비자가 직접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 하듯이 이용자가 서비스 플랫폼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0) 박유리, 김하연(2021).

표 5-4. 서비스 분야별 디지털무역 가능성 및 사례

대분류	소분류	디지털무역 가능성	사례
사업서비스	전문직, 컴퓨터	◎	
	연구개발	○	
	부동산, 임대/리스	△	
	기타(광고, 시장조사, 컨설팅)	○	
	기타(어업, 광업, 청소 등)	▲	
통신서비스	시청각	◎	
	우정, 쿼이어, 통신	○	
건설엔지니어링	건축, 엔지니어링, 설치조립, 건축마감	▲	
유통	소매, 프랜차이즈	◎	
	도매	○	
교육	초중고등, 성인	◎	
환경	정화, 폐기물, 위생	▲	
금융		○	
보건	기타, 건강, 사회	◎	
	병원	○	
여행관광	여행에이전시	◎	
	호텔, 식당, 가이드	△	
여가문화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뉴스	◎	
	도서관, 스포츠	○	
운송	해상, 내륙, 항공, 철도	△	

주: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자료: WTO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W/120)를 토대로 저자 작성.

### 3. 디지털통상협정의 미래와 과제

WTO와 지역무역협정에서 다루었던 디지털통상 규범의 초기 단계에서는 디지털제품의 무관세와 디지털방식에 의한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후 최근에 발효되거나 협상 중인 디지털통상협정은 데이터에 기반한 본격 디지털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컴퓨터설비 위치, 사이버보안과 소비자보호 등을 반영한다. 디지털 전환은 생산과 소비의 형태를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며, 지금과 다른 산업지형과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세계화로 지구상 지역 사이에 시간과 거리의 차이를 줄였다면 디지털 전환은 소비자와 생산자·공급자의 거리를 더 좁히고 이동을 빠르게 해 사실상 국경이 사라지는 착시마저 들게 한다. 최근 개최된 세계최대 디지털박람회인 2023년 소비자가전전시회(CES)의 화두 중 하나가 초연결(hyper-connected)인 것도 가속화된 디지털화를 상징한다.<sup>21)</sup>

규범은 기술의 진보와 경제발전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국제규범은 더욱 그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제통상규범이 지속적으로 외연을 확대해 왔다. 예를 들어 1947년에 시작한 GATT는 상품무역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1995년 출범한 WTO는 서비스(GATS)와 지식재산권(TRIPs)을 포함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은 시장개방을 넘어 다차체제에서 합의되지 못한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에 대한 규범을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통상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었던 항목이 통상협정에 반영되는 추세는 디지털시대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미 DEPA를 비롯한 일부 협정은 다른 디지털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규범과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향후 이러한 분야에서의 규범도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를 디지털통상협정의 외연확장으로 볼 수도 있고, 디지털경제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21) 김민우(2023).

이하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과 디지털경제협정을 구분하고 그 정의와 범위를 정하기보다, 국경 간 상거래 또는 국가간 비즈니스 활동 중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발생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본다. 이로써 디지털통상협정 또는 디지털경제협정의 미래를 내다보고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 디지털세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과되나, 디지털기업의 경우 과세부과 근거인 고정사업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만 과세대상이 됨으로써 조세회피가 발생한다. 이른바 마가(Meta, Apple, Google, Amazon: MAGA)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반 글로벌 디지털기업은 세계적인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전 세계 소비자의 소득이 글로벌 디지털기업을 보유한 국가나 심지어는 조세피난처로 이전되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sup>22)</sup> 이에 디지털세(digital tax)는 디지털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안되었다.

디지털세 부과 문제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기업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충돌이 있다. 미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한 프랑스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디지털세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1974년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결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은 2023년에 OECD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어 인도와도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다.<sup>23)</sup> 한편 OECD가 주축이 되어 2018년 12월에 시작한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 과세체계에 대한 논의가 2021년 10월에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

22) 전은경(2020).

23) USTR(2021a, 2021b).

합의안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 발생 국가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에 과세권을 가지며(필라 1), 기업들이 국별 세율차이를 이용해 법인을 이전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였다(필라 2).<sup>24)</sup>

디지털세는 필라 1의 경우 다자협정 초안을 기초해 2022년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고, 국내법을 개정해 뒤 시행되는 필라 2의 경우 2022년에 국가별로 법제화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디지털세에 부정적인 입장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됨에 따라 2023년 중에는 발효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sup>25)</sup>

## 나. 디지털 표준

주요국들은 국가 디지털전략을 수립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다. 주요국들의 디지털표준 전략 목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은 디지털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술표준, 안보를 위한 암호화 표준 등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과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쟁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 기술, 산업 표준화 전략으로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런데 표준은 자국 내에서 제정된 뒤 많은 국가에서 인정 또는 채택하고 확산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자국이 제정한 디지털표준을 확산하고자 국제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sup>26)</sup>

호주와 싱가포르는 호주-싱가포르 DEA에서 디지털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협정 당사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 조약에 디지털통상 규범 최초로 표준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조항이 있다. 자국 내 정책에 적합한 표

24) 기획재정부 온라인 보도자료(2021. 10. 9),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검색일: 2023. 1. 14).

25) 「세계 디지털세 법제화 진동...도입시킨 내년 상반기로 연기」(2022. 7.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1. 14).

26) 김민정, 양인창(2021).

표 5-5. 호주-싱가포르 디지털무역 확대를 위한 표준협력 분야 권고안

분야	중점 협력표준	경제효과
인공지능	- 자율지능 시스템(A/IS) P7000 SER - ITU-T Y. 3172	호: 20억AUD 상: 119억AUD
분산원장기술	- ISO/TR 23455:2019 - IEEE P2418.1	상: 39억AUD
스마트시티	- ISO/IEC2005:2019 - ISO/IEC 29182-7/2015	호: 100억AUD
디지털 신원	- ISO/IEC24760-1:2019 - ISO/IEC 19784:2018 - FIDO UAF	호: 758억AUD 상: 179억AUD
전자지불	- ISO 20222 - ENV/Co Technical Specifications	호: 364억AUD 상: 121억AUD
전자송장	- EN16931	호: 280억AUD
사물인터넷	- IEC 61850:2019 SER - IEEE P2418.1	호: 337억AUD 상: 105억AUD
데이터보호/개인정보	- ISO/IEC 27018:2019 - ISO/IEC 27701:2019	호: 33만AUD 상: 168만AUD (침해 시 피해액)
국경 간 데이터 이전	- ISO/IEC 22624:2020 - APEC CBPR	GDP 3% 상승
데이터이동성	- ISO/IEC 38505-1:2017 - ISO-TS 23029:2020	호: 연간 64억AUD

자료: TRPC(2020).

준과 규제가 필요하므로 상호 디지털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호혜적 혜택이 되는 디지털무역 표준을 찾고, 국제표준 설정과 채택에 참여하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편 한-싱 DPA도 표준과 적합성 평가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 는 앞서 호주와 DEA를 체결했기 때문에 표준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두 협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앞서 호주-싱가포르 DEA가 당사국에 표준 및 적합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한-싱 DPA는 “참여하도록 노력 한다”는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양자간 정보공유 등을 다루 는 호주-싱가포르 DEA에 비해 한-싱 DPA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와 시한을 설정 하고 있어 협정 체결의 취지에서 평가할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 망중립성

망중립성(net neutrality)은 2003년에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팀 우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통신망의 양 끝에 있는 첫 판매자와 최종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 시해야 하고, 망사업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sup>27)</sup> 이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 보급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갈등은 2000년대 초 미국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특정 기기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인터넷전화와 같은 특정 앱의 접속을 차단하면서 시작되었다.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 CP)는 인터넷이 사용자에게 개방되고 망사업자가 아닌 이용자가 우선시되어야 전체 인터넷 환경이 개선된다고 본다. 또한 이미 ISP가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했는데, CP에게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ISP가 소득을 이중으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2010년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의 오픈인터넷명령(Open Internet Order)을 통해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규정했고,<sup>28)</sup> 2015년에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우선 처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sup>29)</sup>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망중립 원칙은 폐기되었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였으며, CP에게 인터넷 인프라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기여법(Funding Affordable Internet with Reliable (FAIR) Contributions Act)」이 발의<sup>30)</sup>되는 등 망중립 관련 사안은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EU는 CP에게 비용분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서비스 사업자도 분담 범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

27) Wu(2003), p. 141.

28)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2010).

29)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2015).

30) 동 법은 상원(S.2427, 2021. 7. 21)과 하원(H.R.8575, 2022. 7. 28)에서 각각 발의되었으나, 제117대 의회 회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집행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공정한 비용분담(fair share)을 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개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sup>31)</sup>

망중립성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 우선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공자는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업체는 이를 지불하지 않거나 회피하여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었고,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넷플릭스와 동종기업인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는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미국은 망중립성에 대한 한국의 법개정안이 통상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sup>33)</sup>

## 라. 디지털 가치동맹화

최근 통상환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위 신블록화 또는 가치동맹화의 측면에서 본 디지털통상협정의 과제를 살펴본다. 다자무역 체제를 이어 가면서 최적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형성으로 효율을 극대화했던 통상환경은 변화를 맞았다. 강대국간 패권경쟁 심화, WTO의 기능 약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GVC의 형해화로 소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또는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 사이의 가치 동맹화가 심화되고 있다. WTO 출범 후의 무역협정은 당사국간 시장개방이 가장 중요했으나, 최근에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다루지 않는 형태의 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예로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

---

31) Newman(2022), "Big Tech Usage Fees in 'Fair Share' Debate To Be Assessed under EU Questionnaires,"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2. 12. 31).

32) 라성현(2022).

33) 미국은 2021년 7월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규범하의 의무에 대한 우려를 낳을 것이며, 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USTR(2022), p. 311.

프레임워크(IPEF)를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은 IPEF의 중남미 버전인 미주경제번영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APEP)도 추진하고 있다.<sup>34)</sup>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공식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은 결국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자국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보로 보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통상 규범 측면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술과 데이터를 지배하려는 중국에 대응하려면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소수 선진기술국이 공조해야 하며, 그 대상으로 선진기술을 보유한 10~12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후보국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혁신기술에서 앞서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5개국, 경제규모는 다소 작으나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주, 캐나다, 한국 등 3개국, 통신과 엔지니어링 강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올라 있다. 이 밖에 기술과 스타트업 강국인 인도와 이스라엘도 차순위로 지목되었다.<sup>35)</sup>

한편 미국은 EU와 비록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나, 디지털 분야 이슈에서는 상호 대립과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미국은 EU가 지나치게 예방적이고 보호적인(precaution and protection) 입장을 취하고 있어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같은 EU의 디지털 규범이 득세할 경우 미국이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중국이 개도국(UNCTAD nations)과 연대하여 득세하거나, 소위 'Digital WTO'와 같은 다자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은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가 주축이 된 '앵글로 아메리칸' 동맹에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를 섭외하거나, 앞서 언급한 12개국(T-12)과 함께 '민주진영무역기구(Democratically Allied

---

34) White House(2022a), "President Biden Announces the 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온라인 자료(최종 검색일: 2023. 1. 15).

35) 순서대로 10개국을 "T(techno-democracies)-10," 인도와 이스라엘을 합쳐 "T-12"라고 지칭한다. Cohen and Fontaine(2020); Feldstein(2020); American Leadership Initiative(2021).

Trade Organization: DATO)’를 결성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sup>36)</sup>

이는 미국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주장이어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룬 보고서가 공개되고,<sup>37)</sup>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회기 시작과 함께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sup>38)</sup>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현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절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디지털통상협정뿐만 아니라 향후 통상정책이 경제적 실익 못지않게 안보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추진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협상 상대의 목표와 그 배경을 이해하고 협상을 준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

36) Atkinson(2021).

37) Cancian *et al.*(2023).

38) Politico(2023), “House Establishes Tough-on-China Select Committe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31).

## 참고문헌

### [국문자료]

〈단행본 및 보고서〉

- 곽동철. 2022.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연구: 관세협력 및 관세제도 개선 방향』. 기획재정부.
- 김현수 외. 2021.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연구보고서 21-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유리 외. 2020.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플랫폼 연구』. 정책자료 20-03-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유리, 김하연. 2021.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전문직 서비스의 플랫폼화』. 정책자료 21-02-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신원규, 김민정, 이은석, 서정민. 2018. 『무역협정 내 개발협력 기제 연구: 한국과 대개도국 개발, 통상 연계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CID 연구보고서 2018-06. 한국개발연구원.
- 송영근, 박안선, 심진보. 2022.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디지털 전환 R&D의 범위』. 기술정책 트렌드 2022-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한영. 2007. 『디지털@통상협상』. 삼성경제연구소.
- 외교부. 2006. 『알기 쉬운 조약업무』.
- 정인섭. 2022. 『신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 박영사.
- 최원목. 2003.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2. 『신국제경제법』. 제4판. 박영사.
- 한국무역협회. 2021.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과 해외진출 사례』.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20.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논문 및 간행물〉

- 강내영 외. 2022. 「한국경제 쿼텀점프를 위한 차세대 무역성장 로드맵」. Trade Focus 2022-30. 한국무역협회.
- 권현호. 2011. 「디지털콘텐츠무역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의 성과와 한계」. 『국제법 평론』, 2011-II(통권 제34호).
- \_\_\_\_\_. 2022. 「디지털무역과 통상규범」.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 김민우. 2023. 「CES2023으로 살펴본 혁신 기술 트렌드: 'HUMAN for Human」. Trade Brief, No. 1.
- 김민정. 2021.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통상법무정책』, 제1호.
- 김민정, 양인창. 2021.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6.
- 김세창. 2020.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발효」. Copyright Breaking News 2020-02.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승민. 2021. 「디지털무역규범: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21-11.
- 라성현. 2022.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 KISDI Perspectives No.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노형, 정명현. 2018. 「디지털통상과 국제법의 발전」.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제4호.
- 박정수. 2021. 「비즈니스모델 혁신 관점에서 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KIET 산업경제』, 2월호.
- 박영훈. 2020.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Global Market Report 20-003. KOTRA.
- 신원규. 2021. 「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SW중심사회』, No. 87.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이규엽, 강민지. 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주형. 2019.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과 예외규정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3호.
- 이주형, 서정민, 노재연. 2021. 「디지털 통상의 국제규범화 현황과 쟁점: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6권 제3호.
- 전은경. 2020.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65호. 국회입법조사처.
- 정경영. 2017. 「UNCITRAL 전자양도성 기록 모델법에 관한 연구: 국내법에서의

- 수용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
- 조성대, 이준봉. 2021. 「수출입물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현황 및 시사점」. Trade Brief 2021-6.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11.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 수용을 위한 국내의 입법동향 및 시사점」. 업무참고자료. (4월)

## [영문자료]

### <Books & Research Papers>

- American Leadership Initiative. 2021. *A Global Digital Strategy for America*.
- Atkinson, R. 2021. *A U.S. Grand Strategy for the Global Digital Economy*,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ITIF).
- Boston Consulting Group. 2020. *The Evolving State of Digital Transformation*.
- Cancian, M. et al. 2023.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Dell Technologies. 2021. *Digital Transformation Index 2020*.
- Feldstein, S. 2020. “How Should Democracies Confront China’s Digital Rise? Weighing the Merits of a T-10 Allian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Friedman, T. 1999.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s.
- IDC. 2019. “IDC’s Worldwide Semiannual Big Data and Analytics Spending Guide.”
- Statista. 2022. “Manufacturing e-commerce.” Research Report.
- TRPC. 2020.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Cooperation on Standards*. Research Report.
- U.S. Chamber of Commerce. 2022a. “Comments on the Proposed Fair and Resilient Trade Pillar of a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_\_\_\_\_. 2022b. *The Digital Trade Revolution: How U.S. Workers and Companies Can Benefit from a Digital Trade Agreement*.

<Articles>

- Burri, M. 2017. “New Legal Design for Digital Commerce in Free Trade Agreements.” *Digiworld Economic Journal*, Vol. 107, Issue 3.
- \_\_\_\_\_. 2020. “Data Flows and Global Trade Law: Tracing Development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Big Data and Global Trad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J. and R. Fontaine. 2020. “Uniting the Techno-Democracies.” *Foreign Affairs*, Vol. 99.
- Kwak, Dongchul and Minjung Kim. 2020. “Trade Negotiations in the Digital Era: The Case of OTT Video Streaming Services.” *Global Policy*, Vol. 11, Supplement 2.
- Wu, T. 2003.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Journal on Telecom and High Tech Law*, Vol. 2.

[국가/국제기구 문서]

-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2010. “Report and Order In the Matter of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Broadband Industry Practices.” FCC 10-201. (December 23)
- \_\_\_\_\_. 2015. “Report and Order On Remand, Declaratory Ruling, and Order In the Matter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FCC 15-24. (March 12)
- USITC. 2013. *Digital Trade in the U.S. and Global Economies*. Investigation No.332-531, USITC Publication 4415. (July)
- \_\_\_\_\_. 2017. *Global Digital Trade 1: Market Opportunities and Key Foreign Trade Restrictions*. Investigation No. 332-561, USITC Publication 4716. (August)
- USTR. 2019. *2019 Trade Policy Agenda and 2018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March)
- \_\_\_\_\_. 2021a. “USTR Welcomes Agreement with Austria, France, Italy,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on Digital Services Taxes.” Official Statement. (October 21)
- \_\_\_\_\_. 2021b. “USTR Welcomes Agreement with India on Digital Services

- Taxes.” Official Statement. (November 24)
- \_\_\_\_\_. 2022. *202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March)
- WTO. 1998a.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DEC/2. (May 25)
- \_\_\_\_\_. 1998b.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WT/L/274. (September 30)
- \_\_\_\_\_. 2018.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JOB/GC/178. (April 12)
- \_\_\_\_\_. 2019.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 List of the Key Elements and Ideas on Electronic Commerce Communication from Japan.” INF/ECOM/7. (March 25)

#### [온라인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 EU와 함께한다」. 보도자료. (11월 28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2650&topic=\(검색일: 2023. 1. 24\)](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2650&topic=(검색일: 2023. 1. 24)).
- 기획재정부. 2021.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보도자료. (10월 9일).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692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검색일: 2023. 1. 14\)](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692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검색일: 2023. 1. 14)).
- 산업통상자원부. 2022.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 선언 및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보도자료. (2월 8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08\(최종 검색일: 2023. 1. 30\)](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08(최종 검색일: 2023. 1. 30)).
- 「세계 디지털세 법제화 진동...도입시한 내년 상반기로 연기」. 2022. 『연합뉴스』. (7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2062300009\(검색일: 2023. 1. 14\)](https://www.yna.co.kr/view/AKR20220712062300009(검색일: 2023. 1. 14)).
- APEC. 2008. “APEC e-Invoicing Guideline for Future Development.” [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Publications/2008/12/APEC-e-Invoicing-Guideline-for-Future-Development/09\\_cti\\_e\\_csg\\_invoice.pdf\(최종 검색일: 2023. 1. 16\)](https://www.apec.org/docs/default-source/Publications/2008/12/APEC-e-Invoicing-Guideline-for-Future-Development/09_cti_e_csg_invoice.pdf(최종 검색일: 2023. 1. 16)).
- ASEAN. “ASEAN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 <https://agreement>.



- asean.org/media/download/20190306035048.pdf(최종 검색일: 2023. 1. 16).
- ASEAN. 2021. ASEAN Digital Masterplan 2025. <https://asean.org/book/asean-digital-masterplan-2025/>(최종 검색일: 2022. 12. 31).
- European Commission.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Japan, of the Other Part.” <https://www.mofa.go.jp/files/000381942.pdf> (최종 검색일: 2022. 12. 31).
- \_\_\_\_\_. 2018. “EU and Japan Discuss Economic Cooperation at the 1<sup>st</sup> High-Level Industrial, Trade and Economic Dialogue.” (October 22). 보도자료. [https://www.eeas.europa.eu/node/52506\\_en](https://www.eeas.europa.eu/node/52506_en)(최종 검색일: 2022. 12. 31).
- \_\_\_\_\_. 2020. “EU-India Strategic Partnership: A Roadmap to 2025.” [https://www.eeas.europa.eu/eeas/eu-india-strategic-partnership-roadmap-2025\\_en](https://www.eeas.europa.eu/eeas/eu-india-strategic-partnership-roadmap-2025_en)(최종 검색일: 2022. 12. 31).
- \_\_\_\_\_. 2021a. “2030 Digital Compass: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s-digital-decade-digital-targets-2030\\_en](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s-digital-decade-digital-targets-2030_en)(최종 검색일: 2022. 12. 31).
- \_\_\_\_\_. 2021b. “EU and India to Work Together for a Stronger Digital Cooperation and to Tackle the Pandemic.”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eu-and-india-work-together-stronger-digital-cooperation-and-tackle-pandemic>(최종 검색일: 2022. 12. 31).
- \_\_\_\_\_. 2021c.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Th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JOIN(2021) 24 final. (June 16). [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jointcommunication\\_2021\\_24\\_1\\_en.pdf](https://www.eeas.europa.eu/sites/default/files/jointcommunication_2021_24_1_en.pdf)(최종 검색일: 2022. 12. 31).
- \_\_\_\_\_. 2022a. “EU and Japan Start Negotiations to Include Rules on Cross-Border Data Flows in Thei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보도자료. (October 17).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and-japan-start-negotiations-include-rules-cross-border-data-flows-their-economic-partnership-2022-10-07\\_en](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and-japan-start-negotiations-include-rules-cross-border-data-flows-their-economic-partnership-2022-10-07_en)(최종 검색일: 2022. 12. 31).

- \_\_\_\_\_. 2022b. “EU and Japan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High Level Dialogue.” 보도자료. (October 25).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and-japan-strengthen-economic-cooperation-through-high-level-dialogue-2022-10-25\\_en](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and-japan-strengthen-economic-cooperation-through-high-level-dialogue-2022-10-25_en)(최종 검색일: 2022. 12. 3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EU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SPA).” [https://www.mofa.go.jp/erp/ep/page22e\\_000707.html](https://www.mofa.go.jp/erp/ep/page22e_000707.html)(최종 검색일: 2022. 12. 31).
-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2020. “The 2nd Taiwan-EU Dialogue on Digital Economy (DDE) Successfully Concluded; Taiwan-EU Cooperation Moving Forward toward a New Frontier.” 보도자료. (December 9). [https://www.ndc.gov.tw/en/nc\\_8455\\_34617](https://www.ndc.gov.tw/en/nc_8455_34617)(최종 검색일: 2022. 12. 31).
- Newman, M. 2022. “Big Tech Usage Fees in ‘Fair Share’ Debate To Be Assessed under EU Questionnaires.” (November 24). [https://mlexmarketinsight.com/news/insight/big-tech-usage-fees-in-fair-share-debate-to-be-assessed-under-eu-questionnaires\(chlwhd](https://mlexmarketinsight.com/news/insight/big-tech-usage-fees-in-fair-share-debate-to-be-assessed-under-eu-questionnaires(chlwhd)(최종 검색일: 2022. 12. 31).
- Politico. 2023. “House Establishes Tough-on-China Select Committee.” (January 10). <https://www.politico.com/news/2023/01/10/house-china-select-committee-00077312>(최종 검색일: 2022. 12. 31).
- Singapore Statutes Online. 2021.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0.” <https://sso.agc.gov.sg/Act-Rev/ETA2010/Published/20211231?DocDate=20211231>(최종 검색일: 2023. 1. 16).
- Statista. “The 100 Largest Companies in the World by Market Capitalization in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3264/top-companies-in-the-world-by-market-capitalization>(최종 검색일: 2023. 1. 4).
- Taiwan. 2019. “EU-Taiwan ‘Dialogue on Digital Economy’ (DDE) Ushers in New Era of Cooperation.” (June 11). [https://www.roc-taiwan.org/be\\_en/post/6604.html](https://www.roc-taiwan.org/be_en/post/6604.html)(최종 검색일: 2022. 12. 31).
-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2012. *The Economist*. (April 21).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2/04/21/the-third-industrial-revolution>(검색일: 2023. 1. 4).
- White House. 2022a. “President Biden Announces the 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June 8). <https://www.whitehouse.gov/>

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08/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the-americas-partnership-for-economic-prosperity/ (최종 검색일: 2023. 1. 15).

\_\_\_\_\_. 2022b. “Statement 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May 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3/statement-on-indo-pacific-economic-framework-for-prosperity>(최종 검색일: 2023. 1. 16).

WTO.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2\\_e.ht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2_e.htm)(최종 검색일: 2023. 1. 17).

## A Study on the Korean Model Law of Digital Trade Agreement

Hyunho Kwon, Joo Hyoung Lee, Minjung Kim, and Dongchul Kwa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to prepare a basic model law for the digital trade agreement that Korea will conclude. And more, this study analyzes the “forms and contents” of several digital trade agreements concluded so far, and presents practical considerations that need to be reviewed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when Korea has a chance to conclude digital trade agreements in the future.

To this end, Chapter 2 presents specific grounds to establish the Korean digital trade agreement model at the formal or structural level. This is a formal and structural approach to consider for setting the model of digital trade agreement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conducts a detailed review in two main aspects. First of all, the implications of the multilateral discussions on the digital trade agreement will be analyzed.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various forms or structure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that appear in multilateral discussions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what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process of forming a more realistic model is the formal aspect of digital trade agreements through bilateral, regional and plurilateral agreements or multilateral

agreements. This approach will be the most realistic solution for Korea or most countries. In particular, there are various types for regulating digital trade through bilateral, regional and plurilateral agreements or multilateral agreements, such as those attached as part of FTAs or RTAs, and those concluded as independent trade agreements regardless of FTAs such as DEPA or KSDPA. Therefore, Chapter 2 presents various trad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concluded in different forms, and problems according to the legal perspectives of the agreement itself, which helps Korea set a model agreement.

In addition, the core of Chapter 3 is the analysis of the content aspect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Here, the content aspect refers to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consequently raised in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agreement provisions that Korea should consider when signing a digital trade agreement. In other words, this aspect is connected to the degree of liberalization of the object in the conclusion of digital trade agreement. Therefore, Chapter 3 analyzes the contents of existing digital trade agreements, examines the specific and acceptable contents and scope that should be included in digital trade agreements from Korea's point of view, and presents the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it can be discussed at the level of liberalization. The research topics in Chapter 3 are basicall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digital trade and examining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that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ticular, Chapter 3 provid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digital trade agreement model to be conclud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made at the previous bilateral and regional levels.

As results of these studies, Chapter 4 of this research first evaluates existing digital trade agreements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the model of digital trade agreements that Korea should maintain.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digital trade agreement model are reviewed at the formal and content level, and the direction of the Korean digital trade agreement model is presented. Through this analysis, Chapter 4 classified the direction of the Korean model of digital trade agreements into the form of updating existing trade agreements, participating in open plurilateral agreements, and signing strategic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s, and analyzed their form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Korea. An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model of the Korean digital trade agreement was presented by dividing it into a model based on traditional standards and a model based on the so-called 'new standard.'

Finally, Chapter 5 completes the entire research by reviewing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for digital trade. To this end, Chapter 5 propose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maintenance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previously proposed Korean digital trade agreement model. In addition, in connection with the definition or scope of digital trade, Chapter 5 examines the problems or characteristics rais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expansion of digital trade agreements into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s and further into digital economic agreements. And finally, Chapter 5 briefly examines legal policy problems that may be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at is, the future transition to an industry that can be digitized in the future.

---

## <책임>

### 권현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現, E-mail: luckyhyun@sungshin.ac.kr)

#### 저서 및 논문

『국경 간 인터넷 서비스 접속차단의 GATS 합치성 검토』(2021)  
『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2022) 외

---

## <공동>

### 이주형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사법연수원 36기  
김앤장 변호사  
(現, E-mail: amylee2525@gmail.com)

#### 저서 및 논문

『EU 디지털 무역규범의 발전과 시사점 - ‘국가의 규제권한’을 중심으로』(2021)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선도전략 - 디지털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2022) 외

---

### 김민정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통상전략센터 책임연구원  
(現, E-mail: mjk@snu.ac.kr)

#### 저서 및 논문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2021)  
『국제통상 체제의 표준 규정 분석과 디지털무역 협정 시사점』(2021) 외

---

### 곽동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現, E-mail: kwakdc@knu.ac.kr)

#### 저서 및 논문

『디지털 시대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2022)  
『TAPED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2022) 외

#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 2022년

- 22-01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  
허재철 · 연원호 · 김상배 · 김연규 · 김홍규 · 박성빈 · 이승주 ·  
이준구 · 이왕휘
- 22-02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  
이규엽 · 이천기 · 최원석 · 엄준현 · 황운중
- 22-03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백예인 · 한민수 · 김원기 · 김현석
- 22-04 인도의 신 · 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  
한형민 · 김정곤 · 김도연 · 백종훈 · 김소은
- 22-05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 · 윤상하 · 박지원 · 나승권 · 이성희
- 22-06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  
최원석 · 정지현 · 박진희 · 이한나 · 김주혜 · 최지원
- 22-07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김규판 · 강구상 · 최원석 · 오테현 · 이현진 · 오종혁 · 이정은
- 22-08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  
강구상 · 김종혁 · 권혁주 · 박은빈 · 고종완
- 22-09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 중동의 식량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 /  
강문수 · 한선이 · 손성현 · 김예진 · 정민지 · 박규태
- 22-10 ODA 사업의 유형별 평가방법 연구: 기술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  
이은석 · 오지영 · 윤혜민 · 박차미 · 홍문숙
- 22-11 글로벌 환경상품 · 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  
이주관 · 조문희 · 강준구 · 김지현
- 22-12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  
최장호 · 김다울 · 이정균 · 최유정
- 22-13 코로나19 위기와 기업경쟁구도 변화: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상하 · 백예인 · 한원태 · 이윤수 · 김대순



- 22-14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 박정호·강부균·현승수·제성훈
- 22-15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 구경현·배찬권·박혜리·류기락
- 22-16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장영욱·이승호·송지혜·김제국·정민지
- 22-17 금융위기 전개 과정 및 요인 분석: 복잡계와 머신러닝 방법론을 중심으로 / 정영식·오갑진·한원태·백예인·강은정·김유리
- 22-18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 노윤재·박지원·조승진·김민희
- 22-19 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 윤정환·이은석·송지혜·윤혜민·박소정
- 22-20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종덕·조문희·김현수·강준구·김혁황·권현호·김천곤
- 22-21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 홍성우·이승호·김진오·박미숙·Alenka Guzmán
- 22-22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 광성일·정재완·신민규·김제국
- 22-23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 연원호·김효상·문지영·나수엽·김영선
- 22-24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김혁황·금혜윤·이승래
- 22-25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정지현·성한경·김홍원·이한나·김주혜·박혜지
- 22-26 팬데믹과 전쟁 이후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대응 / 김경수·김홍기·송치영
- 22-27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현상백·문지영·박민숙·오종혁·오윤미
- 22-28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 최원석·광성일·문진영·최장호·한형민·박영석·이정균·김은미·홍진희·김범환·김종인·윤정현
- 22-29 디지털통상협정의 한국형 표준모델 설정 연구 / 권현호·이주형·김민정·곽동철
- 22-30 우리나라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 연구 / 김효상·안성배·정영식·양다영·김유리·강은정·강태수·김경훈

■ 2021년

- 21-0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이규엽 · 최원석 · 박지현 · 엄준현 · 강민지 · 황운중
- 21-02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이다운
- 21-03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  
박영호 · 강문수 · 김예진 · 박규태 · 최영출
- 2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  
라미령 · 최인아 · 정재완 · 신민금 · 김형중
- 21-05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  
김정곤 · 한형민 · 금혜윤 · 백중훈 · 이선형
- 21-06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  
강구상 · 김종혁 · 임지운 · 윤여준
- 21-07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  
한형민 · 예상준 · 이선형 · 정재완 · 윤지현 · 김미림
- 21-08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 · 박영석 · 나승권 · 이성희 · 김은미
- 21-09 미 · 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  
김규판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김승현
- 21-10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이주관 · 김종덕 · 문진영 · 엄준현 · 김지현 · 서정민
- 21-11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최장호 · 이정균 · 최유정 · 이대은
- 21-1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  
최원석 · 정지현 · 김정곤 · 이효진 · 최지원 · 김주혜 · 백서인
- 21-13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흥력 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 박정호 · 강부균 · 김석환 · 권원순 ·  
안드레이 코브시(Andrey Kovsh)
- 21-14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연원호 · 현상백 · 구경현 · 노운재 · 윤정환 · 이효진
- 21-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 · 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  
안성배 · 김효상 · 김승현 · 양다영 · 이진희 · 조고운 · 김원기 ·  
김진일
- 21-16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 · 강구상 · 문진영 · 박혜리 · 나승권 · 김제국

- 21-17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정영식 · 강은정 · 이진희 · 김경훈 · 김지혜
- 21-18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 권 울 · 윤정환 · 이은석 · 이주영 · 유애라 · 김성혜
- 21-19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한민수 · 장영신 · 윤상하 · 오탈현 · 김수빈
- 21-20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 조문희 · 이천기 · 강민지 · 정민철
- 21-21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 홍성우 · 이승호 · 김진오 · 박미숙 · 윤여준
- 21-22 미 · 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 · 중 인식 및 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 이승근 · 윤성원 · 김유정 · 김현정 · 강유덕 · 정세원
- 21-23 한국-베트남 경제 · 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협력 방안 연구 / 박성일 · 백용훈 · 이한우 · Quoc Phuong Le · Manh Loi Vu · Thi Thanh Huyen Nguyen
- 21-24 디지털세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 · 김혁황 · 박단비 · 최혜린
- 21-25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 정민현 · 민지영 · 정동연
- 21-26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박영석 · 강문수 · 연원호 · 김범환 · 한하린
- 21-27 미 · 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 현상백 · 연원호 · 나수엽 · 김영선 · 오윤미
- 21-28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정형근 · 윤여준 · 연원호 · 김서희 · 주대영
- 21-29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 조동희 · 홍성우 · 장영욱 · 이정은
- 21-30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 김현수 · 강준구 · 금혜윤 · 정재욱
- 21-31 한 · 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조동희 · 김종덕 · 장영욱 · 오탈현 · 이현진 · 정민철 · 윤형준 · 강유덕
- 21-32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 김효상 · 강은정 · 김유리 · 문성만 · 장희수
- 21-33 한-중양자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 김영진 · 현승수 · 이종화 · 정수미 · 성진석 · 이상재 · 정선미

- 21-34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 박성훈 · 박명호 · 김승년
- 21-35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 류덕현 · 박민수 · 강창희 · 주병기 · 이명현
- 21-36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 · 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 이명현 · 김정호 · 이상영 · 허석균 · 홍석철
- 21-37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 안지연 · 박복영 · 배유진 · 안혜지 · 하기욱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 구 자 회 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A Study on the Korean Model Law of Digital Trade Agreement

Hyunho Kwon, Joo Hyoung Lee, Minjung Kim, and Dongchul Kwak

WTO에서 전자상거래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디지털무역에 대한 정립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다자관계에 적용될 통일된 규범이나 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은 양자 또는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협정들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새로운 도전이 될 디지털무역 분야를 규율하는 규범체제는 어떤 형식으로 체결될 것이며, 어떤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인가? 이 연구는 지금까지 체결된 주요 디지털통상협정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지털통상협정의 표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